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2016서울조정 1, 2	(각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한겨레 ⁽¹⁾ , 인터넷 한겨레 ⁽²⁾
조 정 대 상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 ... 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월 4일자 26면, 인터넷 한겨레 1월 4일자 문화일반면)
신청인 주장	문화재청이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가 신라 연못터임을 확인하고도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월 27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월 26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	(정정청구) ○○○코리아 (유)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 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 적출을 해?』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자궁근종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제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월 25일자 홈페이지)

2016서울조정 4·5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한인협
조 정 대 상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 7	(각 손해청구) 임○○ 對 KBS-1TV ⁽⁶⁾ , KBS미디어 ⁽⁷⁾
조 정 대 상	뉴스12 프로그램 『중부 일부 첫 한파주의보 ... 낮에도 영하권』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2월 27일자, KBS미디어 12월 27일자 날씨면)
신청인 주장	날씨를 보도하면서 출근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8, 9	(각 손해청구) 임○○ 對 채널A ⁽⁸⁾ , 인터넷 채널A ⁽⁹⁾
조 정 대 상	굿모닝A 프로그램 『술 마시다 흥기 난동 ... 2명 부상』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10월 26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식당 내부와 신청인의 모습을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	(정정청구) ○○○○ (주) 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 떠나는 ‘최○○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생활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영진 교체 이후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 12	(각 정정청구) 김기식 對 문화일보 ⁽¹¹⁾ , 인터넷 문화일보 ⁽¹²⁾
조 정 대 상	『‘사상 초유’ 입법 비상 사태 ... 민생 법안은 김기식에 발목 잡혀』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1월 1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5년 12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법안 연계 전략을 피해 이견이 없거나 일몰이 적용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3·14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 효잔치 내세운 학교내 포교 활동 시도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개최한 행사가 포교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한 기사여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5, 16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MBC-TV ⁽¹⁵⁾ , iMBC ⁽¹⁶⁾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잠수함 잡는 와일드캣, 작전 시간 24분』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2월 23일자, iMBC 12월 23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1차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 헬기의 작전능력을 실제보다 축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	(정정청구) 은평구 對 인터넷 국토일보
조 정 대 상	『은평구청과 ○○건설 건축심의 화해 물꼬 트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와 모 건설사 사이의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은평구청 행정소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뉴스/업계면)

2016서울조정 18	(정정청구) ○○○○○○협의회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카카오의 O2O 전략, ‘종사자’에 집중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IT면)
신청인 주장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와 카카오와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방송 날짜도 안 잡은 채 이것 빼라 저것 빼라 내부 검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데스크킹하고 방송을 연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 21, 22~25	(각 정정청구) 양천구 對 매일일보⁽²⁰⁾, 인터넷 매일일보⁽²¹⁾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매일일보^(22·23), 인터넷 매일일보^(24·25)
조 정 대 상	(1) 『양천구 준예산 사태 ... 예산 삭감시켜 타결』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1월 5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4일자 서울면) (2) 『양천구, 홍보라인 전원 교체 등 대규모 인사 단행』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1월 7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6일자 서울면) (3) 『양천구 준예산 사태 극적 해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매일일보 1월 4일자 서울면)
신청인 주장	양천구청장이 준예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상반기 인사가 총선과 친청 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양천구 준예산 사태 유감표명 및 정기인사’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2월 16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2월 15일자 서울면)

2016서울조정 26, 27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축산경제 ⁽²⁶⁾ , 인터넷 축산경제 ⁽²⁷⁾
조 정 대 상	『일선 농협서 축협 성과 도용』 제하의 기사 (축산경제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축산경제 12월 11일자 관련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이 축협의 성과를 신청인의 성과라고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축산경제 2016년 2월 8일자 1면, 인터넷 축산경제 2월 5일자 관련산업면)

2016서울조정 28	(추후청구) 이○○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팝콘 국산화 하겠습니다” … 국가보조금 횡령한 40대 男』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팝콘 국산화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9·30, 127·128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1) 『“○○○ 임시이사 선임, 장애계 추천 인사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뉴스면) (2) 『광주시, 매년 복지시설 행정·회계감사 진행』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뉴스면) (3) 『○○○비대위, 광주시 로비 점거농성 들어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뉴스면) (4) 『○○○비대위, 광주시 점거농성 ‘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섹션면)

2016서울조정 31~33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安 신당 “인사 파동” 계속 … “스폰서 검사” 가 끝 아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부패전력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安 신당 “인사 파동” 계속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34, 35	(각 정정청구) 김현 對 MBC-TV ⁽³⁴⁾ , iMBC ⁽³⁵⁾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탄국회’ 부르는 국회의원 불체포』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월 3일자, iMBC 1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36	(정정청구) 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위기 맞은 40년 전통 이대 앞 웨딩드레스 거리, 해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이화여대 앞 웨딩거리의 경기가 불황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37·38	(정정·반론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 신고 ... 무효? 유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전 부인의 이혼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 신고 ... 무효? 유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9~41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수상한 땡처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통업자들에게 자사 신발 제품을 반값으로 제공해 땡처리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2~9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문○○ 외 1인 對 YTN ^(42~44) , 인터넷 YTN ^(45~47) , 연합뉴스TV ^(48~50) , 연합뉴스TV 인터넷 ^(51~53) , 인터넷 국민일보 ^(54~56) , 쿠키뉴스 ^(57~59) , 매경닷컴 ^(60~62) , 세계닷컴 ^(63~65) , 온라인 중앙일보 ^(66~68) , 인터넷 헤럴드경제 ^(69~71) , 노컷뉴스 ^(72~74) , 미디어펜 ^(75~77) , 인사이트 ^(78~80) , 디오데오 ^(81~83) , 뉴스1코리아 ^(84~86) , 연합뉴스 ^(87~89) , SBS 콘텐츠허브 ^(90~92) , 인터넷 BBS불교방송 ^(95~97) (정정·반론청구) iMBC ^(93~9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24 프로그램 『고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 교사 부인 운영 교습소에 서』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인터넷 YTN 10월 2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부산 사립고서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0월 29일자 전국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부산 사립고서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진상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부산 모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교육청 진상 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 : 『부산 사립고사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교사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들 성적 대폭 향상 ... 문제 유출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교사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들 성적 대폭 향상 ... 문제 유출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시험 문제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8, 99	(각 손해청구) 김○○ 對 SBS-TV⁽⁹⁸⁾, SBS 콘텐츠허브⁽⁹⁹⁾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 드라마 프로그램 『아치아라의 비밀 3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0월 14일자, SBS 콘텐츠허브 10월 14일자 다시보기면) (2)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5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2월 23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23일자 다시보기면) (3)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6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2월 24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24일자 다시보기면) (4)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7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드라마의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0~101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국민의당 창단 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리와 막말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민의당 창단 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월 2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03·104	(정정·손배청구) 최○○ 對 미디어펜
조 정 대 상	『신영복 띄우기 ... 대한민국은 ‘좌파 동물농장’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교수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2016서울조정 105~108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신문 ^(105·106) , 인터넷 법보신문 ^(107·10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어느 남자의 환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기획연재면) • 인터넷 법보신문 : 『○○스님의 씩씩한 환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승려 시절 대처승, 은처승을 비난했으며, 승려 시절 자식을 낳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서울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법보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정정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어느 남자의 환속』 제하의 기사 중 “납의는 아무나 입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일부 내용을 삭제 (인터넷 서울신문 2016년 2월 12일자 기획연재면)
2016서울조정 109~111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카드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카드 티머니, ○○ ○○○의 코인 BANK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수 조원 대이며 모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2	(정정청구) (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프로그램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국내 이슬람 관련 관광 산업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한 것은 종교 편향이며 이로 인해 기독교 단체가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113, 114	(각 정정청구) 김○○ 對 시사저널 ⁽¹¹³⁾ , 인터넷 시사저널 ⁽¹¹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1) 『김진태 총장, 스폰서 소송 사건들에 개입한 의혹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20면~26면) (2)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6면~18면) • 인터넷 시사저널 : (1) 『경찰, 김진태 검찰총장 뒷조사 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면) (2) 『경찰청 범죄정보과, 김진태 검찰총장 뒷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이며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 스폰서 소송 사건 개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3월 15일자 21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5	(정정청구) 장○○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스님, 불교방송 관련 횡령·배임 누명 벗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 이사장의 횡령혐의 고소건이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6, 117	(각 정정청구) (재)○○○○교향악단 對 동아일보 ⁽¹¹⁶⁾ , 동아닷컴 ⁽¹¹⁷⁾
조 정 대 상	『정○○ 부인 “시나리오 잘짜라”… 박○○ 음해 직접 지시 정황』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2월 28일자 A12면, 동아닷컴 12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술감독 재계약에 관한 기밀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2월 19일자 A25면, 동아닷컴 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8·119	(정정·손배청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對 인터넷 뉴스포스트
조 정 대 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취임식 비용 “평평”… 직원 복리비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신청인 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7일자 정부공사면)

2016서울조정 120	(반론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의사는 왜 분만을 늦췄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산부인과 의사인 신청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고, 간호기록 일지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2월 18일자 홈페이지)

2016서울조정 121~124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MBC-TV ^(121·122) , iMBC ^(123·124)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OST의 비밀』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25일자, iMBC 10월 25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와 방송사와의 접촉을 중간에서 차단해 이익을 취하고, 작곡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5·126	(반론·손배청구) (주)○○○○○코리아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코리아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연기획사 대표인 신청인이 취소된 공연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만원,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9	(추후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가니〉 ...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자 사회면) (2) 『“하루 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 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3) 『“광주 ○○○, 제2의 ○○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일자 사회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 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사회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사회면) (6) 『○○○ 사태에 교사들도 ... “우린 자존감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0	(추후청구) 박○○ 對 로이슈
조 정 대 상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으나, 1심 재판결과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추후보도 청구 요건 미비)

2016서울조정 131	(반론청구) ○○○○○○○○조합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남아도는 중고기계 10조원 ... 혼탁한 유통구조 문제』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판매를 위해 전시중인 기계를 길거리에 방치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남아도는 중고기계, 협업으로 수출길 개척』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9일자)

2016서울조정 132	(정정청구) 정동영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정동영, ‘더민주 복당 조건’ ... 전주 덕진 공천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조건으로 지역구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동영 전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33	(반론청구) 김○ 對 씨앤비뉴스
조 정 대 상	『증권사 전직 임원 주가 조작 피소 사건 그 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회사 임원 재직 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증권사 전 임원 주가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34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비공식 유통경로 반입되는 수입 맥주, 믿고 마셔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에 소독제인 가성소다가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비공식 유통경로 반입되는 수입맥주, 믿고 마셔도 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2월 5일자 유통면)

2016서울조정 135·136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산삼 대표 中부동산 사기전력 ... 법원 배상 강제집행 허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동산 관련 카페를 개설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삼 대표 中부동산 사기전력 ... 법원 배상 강제집행 허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6년 2월 18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37·138	(정정·손배청구) ○○상선 (주) 對 EBN
조 정 대 상	『○○상선, ○○중공업 그룹에 자동차 운반선 대거 발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기업의 자동차 운반선을 발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상선 자동차 운반선 대거 발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39~144, 219	(각 정정청구) 남○○ 對 불교닷컴 ⁽¹³⁹⁾ , 네이버 ⁽¹⁴⁰⁾ , 다음 ⁽¹⁴¹⁾ , 네이트 ⁽¹⁴²⁾ , 구글 ⁽¹⁴³⁾ , Bing ⁽¹⁴⁴⁾ , 인터넷 BBS불교방송 ⁽²¹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닷컴 : 『남○○ ○○사 신도회장 구속 ...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종합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Bing 11월 19일자 종합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남○○ ○○사 신도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사찰 신도회장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닷컴 : 『○○사 신도회장 구속 ... 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삭제 및 혐의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6년 2월 18일자 종합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Bing 2월 18일자 종합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남○○ ○○사 신도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혐의 부분 기사 수정 (2016년 3월 2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45~150, 160, 161	(각 손배청구) 안○○ 對 뉴스1코리아 ⁽¹⁴⁵⁾ , e머니투데이 ⁽¹⁴⁶⁾ , 인터넷 한국일보 ⁽¹⁴⁷⁾ , 세계닷컴 ⁽¹⁴⁸⁾ , 조선닷컴 ⁽¹⁴⁹⁾ , 조선비즈닷컴 ⁽¹⁵⁰⁾ , 네이버 ⁽¹⁶⁰⁾ , 다음 ⁽¹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유품 내다팔아”...‘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유포한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11월 4일자 뉴스면) • e머니투데이 : 『“유품 내다팔아”...‘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유포한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퍼뜨린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뉴스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사법연수원 불륜 커플이 고인의 유품 내다 팔았다’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고인 유품 중고나라에”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줄소송 ... ‘불륜남’ 연수원 파면되고, ‘불륜녀’ 간통은 무죄, 변호사 거부당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사실보도로 피신청인 주의의무 이행)

2016서울조정 151·152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동대문포스트
조 정 대 상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 ‘폐관’ 누구의 책임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구청 공무원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3, 154	(각 정정청구) 심윤조 對 중앙Sunday ⁽¹⁵³⁾ , 인터넷 중앙Sunday ⁽¹⁵⁴⁾
조 정 대 상	『“1번 찍었는데 이름 몰라” 묻지마 투표가 부른 ‘강남 3구의 역설’』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6년 1월 31일자 3면, 인터넷 중앙Sunday 1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국회 의정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55	(반론청구) 우윤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우윤근? 지역에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출세에만 신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지역구 활동은 소홀한 채 중앙정치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더민주당 우윤근 의원, 중앙과 지역 평가 엇갈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 추가 (2016년 2월 4일자 지역면)

2016서울조정 156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방사청 차장 내달 교체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A8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 차장의 교체 이유가 내부갈등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57	(정정청구) 하태경 對 월드투데이
조 정 대 상	『하태경, 조경태 새누리당 입당 이어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모락모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 행 결 과	『더불어민주당 일방적인 구매 하태경 “난 죽어도 새누리당 사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58·159	(정정·손배청구) ○○○○○○○○ ○○○○회장단회 對 기독교보
조 정 대 상	『○○총회장단 치리권 행사, ‘가소롭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원로 모임인 신청인 단체를 불법단체인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2~164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로펌까지 동원해 내부 비판 재갈 물리는 경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청 고위 공무원인 신청인이 경찰 내부를 비판한 직원의 징계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5	(정정청구) 장○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서울 도봉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대결 성사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도봉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청인의 직책을 잘못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진실 보도에 해당)

2016서울조정 166~169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에너지신문 ^(166·167) , 일간에너지 ^(168·169)
조 정 대 상	『○○○○ 소형 탱크 비파괴검사 원자력법 ‘위반’』 제하의 기사 (에너지신문 2016년 1월 18일자 1면, 7면, 일간에너지 1월 17일자 가스면)
신청인 주장	LPG 소형저장탱크를 생산하는 신청인 업체가 비파괴검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0	(정정청구) 유대운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국회의원 ‘갑질’ 백태』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에서 갑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회의원 ‘갑질’ 백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2월 12일자 정치종합면)

2016서울조정 171~174	(각 정정·손배청구) 가OO 對 인사이트 ^(171·172) , postshare ^(173·17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이트 : 『제자들에게 “XX, 꼴값하네” 욕설 퍼부은 OO대 교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헤드라인면) postshare : 『‘욕설 파문’ OO대 女교수, 7시간 27분간 문자폭탄 날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뉴스앤 이슈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5·176	(정정·손배청구) 김OO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아내 토막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살인』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인 신청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토막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시화호 토막살인범 중국서도 토막살인”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6일자)

2016서울조정 177	(손배청구) 김○○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공부 안 한다고 ... 엄마의 ‘잔혹한 훈육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엄마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원보도 동영상 삭제 및 해당 보도문 중 45살 “김모 씨”는 “40대 A씨”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초등학교 학생 아들”로 “인천 남동서 관계자”는 “○○경찰서 관계자”로 각 수정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8~188	(각 정정청구) 김상민 對 KBS-1TV ⁽¹⁷⁸⁾ , TV조선 ⁽¹⁷⁹⁾ , 연합뉴스 ⁽¹⁸⁰⁾ , 세계닷컴 ⁽¹⁸¹⁾ , 아시아경제닷컴 ⁽¹⁸²⁾ , 이투데이 ⁽¹⁸³⁾ , 인터넷 국민일보 ⁽¹⁸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⁵⁾ , 조선닷컴 ⁽¹⁸⁶⁾ , 쿠키뉴스 ⁽¹⁸⁷⁾ , 국민일보 ⁽¹⁸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월급 상납·열정 페이”... 국회의원 또 갑질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5일자) 외 2개 프로그램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비서관 월급은 봉? ...‘뺏고 덜 주고’』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5일자) • 연합뉴스 : 『김상민 의원 보좌진 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포토면) 외 1건 • 세계닷컴 : 『野 이목희·與 김상민 의원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끊이지 않는 국회』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이투데이 : 『새누리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與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시사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KBS-1TV, TV조선,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세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이투데이,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조선닷컴, 국민일보/사유 : 보도약속, 쿠키뉴스/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 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쿠키뉴스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89~192, 220~223	(각 정정·손배청구) (주) ○○여행사 對 YTN ^(189·190) , 네이트 ^(191·192) , 네이버 ^(220·221) , 다음 ^(222·223)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서울 ○○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2월 16일자, 네이트, 네이버, 다음 1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부도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YTN/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트, 네이버, 다음/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여행사 부도』 관련 안내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6년 3월 23일자 사회면, 네이트, 네이버, 다음 3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3~19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경향신문 ^(193·194) , 인터넷 경향신문 ^(195·196) , 인터넷 미디어오늘 ^(197·19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김종인 “총선 승리, 109석 이상이 목표”』 제하의 기사 중 ‘방석호 전 아리랑TV사장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도’ 제목의 카드뉴스 (2016년 2월 5일자 뉴스면) (2) 『조선일보마저 ‘진박’ 마케팅, 당에는 ‘짐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아리랑TV 외주사 선정 입찰 관련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삽입 경향신문 기사 중 특정 프로그램명 익명처리 및 기사 일부 삭제 (2016년 3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9·200	(반론·손배청구) ○○○○○○○○○협회 對 인터넷 국토경제신문
조 정 대 상	『○○○○○○○○협회, 국토부 등에 업고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국토교통부를 등에 업고 비행을 일삼고 있다는 비방성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2면)

2016서울조정 201·202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1인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 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위원장이 사측과 밀실 협상을 벌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련 잘못된 사진 게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03~218	(각 정정청구) 장○○ 對 뉴시스⁽²⁰³⁾, 연합뉴스⁽²⁰⁴⁾, 동아일보⁽²⁰⁵⁾, 동아닷컴⁽²⁰⁶⁾, 중앙일보⁽²⁰⁷⁾, 온라인 중앙일보⁽²⁰⁸⁾, SBS-TV⁽²⁰⁹⁾, SBS 콘텐츠허브⁽²¹⁰⁾, KBS-1TV^(211,212), KBS미디어⁽²¹³⁾, YTN^(214,215), 인터넷 YTN⁽²¹⁶⁾, 채널A⁽²¹⁷⁾, 인터넷 채널A⁽²¹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이○○ 화백 작품의 위조된 감정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문화면) • 연합뉴스 : 『경매서 5억여 원에 거래된 이○○ 작품 위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뉴스면) • 동아일보 : 『허술한 경매 시스템, 시장 신뢰 흔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1일자 A22면, 동아닷컴 1월 11일자 미술면) • 중앙일보 : 『감정 의뢰 3점 중 1점은 가짜 ... 100만원 대 생계형 위조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1일자 종합 21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11일자 문화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5억원에 낙찰됐는데 ...』 이○○ 작품 위작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8일자 생활문화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5억대 이○○ 화백 작품 감정서 위조 ‘들통’』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KBS미디어 1월 8일자 문화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유명 화백 작품 관련 위조 감정서 자료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뉴시스, 연합뉴스,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SBS-TV, SBS 콘텐츠허브, KBS-1TV, KBS 미디어, YTN ⁽²¹⁴⁾ , 인터넷 YTN, 채널 A, 인터넷 채널A/사유 : 기사수정, YTN ⁽²¹⁵⁾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내용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뉴시스, 동아일보, 동아닷컴, SBS,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기사 중 위조 감정서 사진 삭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다시 보기 삭제 (SBS, SBS 콘텐츠허브, KBS-1TV, KBS 미디어, 인터넷 YTN, 채널A, 인터넷 채널A)
2016서울조정 224, 225	(각 추후청구) 문○○ 對 에이블뉴스⁽²²⁴⁾, 비마이너⁽²²⁵⁾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이블뉴스 : 『광주시, 폭행 정황 시설 장애인 분리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전국넷면) 비마이너 : (1) 『비리로 얼룩진 ○○○, 그러나 이사회는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뉴스면) (2) 『“저는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시설 재활 교사인 신청인이 장애인들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26~229	(각 정정청구) 설○○ 對 JTBC⁽²²⁶⁾, 인터넷 JTBC⁽²²⁷⁾, 인터넷 국민일보⁽²²⁸⁾, 인터넷 헤럴드경제⁽²²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어린이집서 ‘바늘학대’ 의혹 … 11명 피해 호소』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1일자,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사회면) 외 1개 프로그램 인터넷 국민일보 : 『“선생님이 바늘로 콧코 찔렸어요”… 어린이집, 아동 11명 바늘 학대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 『부산 어린이집서 아이 11명 바늘로 ‘콧코’… 학대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교사인 신청인이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JTBC, 인터넷 JT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뉴스룸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JTBC 3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30, 232~234	(각 반론청구) 박○○ 對 뉴시스 ⁽²³⁰⁾ , 세계닷컴 ⁽²³²⁾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³³⁾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³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가시오가피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가시오가피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판매한 ‘떴다방’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건강기능식품 가격 ‘40배’ 뽕튀기해 노인 울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노인 상대로 ‘원가 40배’ 건강식품 판매한 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뉴시스, 세계닷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6서울조정 231	(반론청구) 성남시 對 한경플러스
조 정 대 상	『이재명 상품권 문제점 해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뉴스 인사이드면)

2016서울조정 235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비마이너
조 정 대 상	『“저는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복지법인인 신청인이 급식비를 횡령하고 소속 재활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36~241	(각 정정·손배청구) 박○○ 외 2인 對 TV조선 ^(236·237) , 인터넷 TV조선 ^(238·239) , 조선닷컴 ^(240·241)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내 아들 어딜 만져 ...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원씩 요구』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12월 1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내 아들 어딜 만져 ...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원씩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교육시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측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닷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결과	『[“왜 내 아들 성기를”...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씩 요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닷컴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42~245	(각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 외 1인 對 일요시사 ^(242·243) , 인터넷 일요시사 ^(244·245)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1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31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2일자 사회면) (2) 『○○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2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31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246~249	(각 정정·손배청구) 권윤지 ^(246·247) , 기독교복음침례회 ^(248·249) 對 미디어스
조정대상	『시그널 9화 - 조진웅이 남긴 4개의 사건과 풀리지 않은 오대양 사건 그리고 세월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블로그와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블로그와면)

2016서울조정 250·251	(정정·손배청구) 백○○ 외 3인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1) 『문재인 천문학적 비자금 20조, 비밀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정치면) (2) 『문재인 비자금 20조 비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부산 금괴사건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들을 비방하는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52~257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프레시안 ^(252~255) , 인터넷 경향신문 ^(256·25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시안 : (1) 『세월호 특위, 해경 시찰 핑계 여수-순천 ‘관광’ 워크숍』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2) 『세월호 특위 “내부자들” 워크숍, 징계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해경 시찰에 ‘관광성 워크숍’간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관광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워크숍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시안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워크숍”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워크숍”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일반면)

2016서울조정 258, 259	(각 정정청구) ○○○○ (주) 對 일요시사 ⁽²⁵⁸⁾ , 인터넷 일요시사 ⁽²⁵⁹⁾
조 정 대 상	(1)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①수상한 금융거래』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0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사건/사고면) (2)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②열쇠 쥔 키맨들』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사건/사고면) (3)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③폐석회 부지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부당대출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①수상한 금융거래』,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②열쇠 쥔 사람들』 및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③폐석회 부지 미스터 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5월 30일자 20면, 인터넷 일요시사 5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60·261	(반론·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방석호 재임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 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사의 외주제작사 선정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62·263, 298·299	(각 반론·손배청구) ○○○○○○○○총회 對 크리스천포커스 ^(262·263) , 시포커스 ^(298·29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포커스 : (1) 『박○○ 총회장, 비리세력 다시 옹호하고 나서서 물의 일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2면) (2) 『비리를 행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해 총회인가? 비리와 헌법 위반을 지적한 언론이 해 총회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3면) (3) 『허○○ 목사 조사처리 긴급동의안 제99회 총회 때도 접수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6면) (4) 『전·현직 총회장, 법치정신 훼손 심각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0면) 외 7건 • 시포커스 : (1) 『○○대 개방이사 추천위원 허 목사 추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3일자 교단뉴스면) (2)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 前 비리세력 척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교단뉴스면) (3) 『논평/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9일자 교단뉴스면) (4) 『“시포커스가 총회 대변하는 기관지처럼 행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교단뉴스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총회장 때문에 총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포커스 : 『합동 총회장 권옥 남용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포커스 2016년 3월 26일자 교단뉴스면)

2016서울조정 264~271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한국일보^(264·265), 인터넷 한국일보^(266·267), 네이버^(268·269), 다음^(270·271)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 불신 안 견뎠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1일자 A01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종합면) (2) 『기부단체 효율성 겉으로 번 듯 ... 뒤죽박죽 공시 탓 착시 효과』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1일자 A04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기획면) (3) 『기부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깜깜 ... 뭘 믿고 기부하나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2일자 A08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공익법인 결산 실적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 보도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며,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보도 일부가 이미 반영되어 목적이 달성됨)

2016서울조정 272~274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920만원짜리 해외출장 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1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고위 간부의 해외출장 보고서 대필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75, 278, 279, 355	(각 반론청구) 이○○ 對 뉴데일리⁽²⁷⁵⁾, YTN⁽²⁷⁸⁾, 인터넷 YTN⁽²⁷⁹⁾ (정정청구) 온라인 중앙일보⁽³⁵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선거철 철새 논란 ... 대선 때는 안철수 돕다가 총선은 새누리당으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일자 정치면) • YTN : TV저널 프로그램 『경선 벌써 '흔탁'... 막말에 정체성 논란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일자, 인터넷 YTN 3월 2일자 정치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수상한 친박 있다" 새누리 곳곳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신청인의 정체성이 소속 정당과 다르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데일리, YTN, 인터넷 YTN)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76·277	(정정·손배청구) 옥○○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요도파열’ 배우 윤○○, 동명이인 축구선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운동선수인 신청인의 아들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故 ○○선수 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80~283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종로신문 ^(280·281) , 인터넷 종로신문 ^(282·283)
조 정 대 상	(1) 『2013년 종로구청의 언론탄압과 난도질의 시작』 제하의 기사 (종로신문 2016년 2월 19일자 1면, 인터넷 종로신문 2월 24일자 발언대면) (2) 『구청은 종로신문과 상생하라』 제하의 기사 (종로신문 2016년 3월 3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통반장들에게 특정 지역신문을 구독하도록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폭언 등은 사실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284~287	(각 반론·손배청구) (재)○○○○연구소 對 일요시사 ^(284·285) , 인터넷 일요시사 ^(286·287)
조 정 대 상	『○○○ 직원 폭행 파문 “이사장이 마구 때렸다”』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2월 29일자 6~7면, 인터넷 일요시사 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이사장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p>2016서울조정 288~295</p>	<p>(각 추후·손배청구) 박○○ 외 3인 對 채널A^(288·289), 인터넷 채널A^(290·291), YTN^(292·293), 인터넷 YTN^(294·295)</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1) 뉴스특보 프로그램 『이번엔 깜깜한 ‘도깨비방’에서 공포감 체벌』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사회면) (2) 채널A종합뉴스 프로그램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 주장 나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사회면) 외 3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또 어린이집 폭행 논란 ...“도깨비방”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6일자, 인터넷 YTN 1월 16일자 사회면)
<p>신청인 주장</p>	<p>유치원 교사인 신청인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85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채널A : 『경기 ○○ ○○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도깨비방’ ○○ 유치원 폭행 의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5일자, 인터넷 YTN 3월 25일자 사회면)
<p>2016서울조정 296·297, 305·306</p>	<p>(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YTN^(296·297), 인터넷 SBS sports^(305·306)</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YTN : 『‘배임·횡령 물의’ 박○○ 대한○○협회장 사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SBS sports : 『대한○○협회 박○○ 회장, 사퇴 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스포츠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모 스포츠 협회 기금을 횡령, 배임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p>
<p>2016서울조정 300~304</p>	<p>(각 손배청구) (사) ○○○○○○운동본부 對 인터넷 매일일보⁽³⁰⁰⁾, HBC한복방송⁽³⁰¹⁾, 굿모닝뉴스⁽³⁰²⁾, 뉴시스⁽³⁰³⁾, 국제뉴스⁽³⁰⁴⁾</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매일일보 : 『○○시 ○○면 이장단 협의회 NGO인허가 취득 조사 청원서 의회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전국면) • HBC한복방송 : 『○○시 ○○면 이장단 협의회, 산업 폐기물 처리장 허가 조사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종합면) • 굿모닝뉴스 : 『NGO인허가 취득 조사 청원서 의회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뉴스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NGO 대표가 …” 포천 폐기물처리장 허가 조사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전국면) • 국제뉴스 : 『○○시민, ○○○○에너지 인, 허가 과정 조사 특위 시의회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잔극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허위 보도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매일일보/내용 : 손해배상 1만원) • 조정성립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HBC 한복방송, 굿모닝뉴스, 국제뉴스)
이행 결과	『사단법인 ○○○○○○운동본부 최○○ 대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6년 4월 6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307~35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307·308) , 인터넷 BBS불교방송 ^(309·310) , KBS미디어 ^(311·312) , SBS 콘텐츠허브 ^(313·314) , 인터넷 TBS ^(315·316) , 인터넷 YTN ^(317·318) , 인터넷 경향신문 ^(319·320) , 뉴시스 ^(321·322) , 데일리인 ^(323·324) , 동아닷컴 ^(325·326) , 로이슈 ^(327·328) , 법률신문 ^(329·330) , 세계닷컴 ^(331·332) , 아시아경제닷컴 ^(333·334) , 아시아투데이닷컴 ^(335·336) , 아주뉴스 ^(337·338) , 조선닷컴 ^(339·340) , 쿠키뉴스 ^(341·342)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43·344) , 인터넷 한겨레 ^(345·346) , wow한국경제TV ^(347·348) , 인터넷 헤럴드경제 ^(349·350) , 비주얼다이브 ^(351·352)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외 16개 매체
신청인 주장	법원에서 원아 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을 ‘원아의 팔꿈치를 탈구시킨 보육교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인터넷 YTN, 법률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 뉴시스, 로이슈/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BBS불교방송, KBS미디어, 인터넷 TBS, 인터넷 경향신문, 데일리안, 동아닷컴, 세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아주뉴스, 조선닷컴, 쿠키뉴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한겨레, wow한국경제TV, 인터넷 헤럴드경제, 비주얼다이브/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혐의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17일자 뉴스면) • 인터넷 YTN : 『아이 진정시키려다 탈골 혐의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24일자 사회면) • 법률신문 : 『고성 지르는 아이 진정시키려 교사가 양팔 잡았다가』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16일자 법원면)

2016서울조정 353, 354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일보 ⁽³⁵³⁾ , 인터넷 한국일보 ⁽³⁵⁴⁾
조정 대상	『마지못해 ‘훈장’ 내보낸 ‘KBS’』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2월 3일자 A2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KBS가 특정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제작 실무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KBS 다큐 ‘훈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3월 23일자 A2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3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56, 357	(각 정정청구) 심○○ 對 중앙일보 ⁽³⁵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⁵⁷⁾
조정 대상	『여당 텃밭 강남 3곳, 모두 현역 vs 예비군 대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3월 9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358~361	(각 정정·손배청구) (주) ○○○○컴퍼니 對 한겨레21 ^(358·359) , 인터넷 한겨레21 ^(360·361)
조 정 대 상	『사라져버릴지 모를 성수동의 장인들』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6년 2월 22일자 64면~67면, 인터넷 한겨레21 2월 15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라져버릴지 모를 성수동의 장인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관련 반론 삽입 (인터넷 한겨레21 4월 1일자 사회일반면)
2016서울조정 362	(정정청구) ○○○○○○○○○○회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파이 짜우 짝 니엠』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1면) (2) 『올해 중부 곳곳 50주년 위령제, 한국인 사죄의 첫 걸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3면, 4면)
신청인 주장	파월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63	(정정청구) (주) ○○○○○○○○○○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상표권 없이 영업 ‘○○○’... 가맹점 모집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상표 미등록’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4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364~366	(정정·손배청구) 이○ 對 CBS-R ^(364·365) (정정청구) 노컷뉴스 ⁽³⁶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세월호 특조위,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9일자) • 노컷뉴스 : 『세월호 특조위,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재직 당시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세월호 특조위 내부 고위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6년 3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67·368	(반론·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언론탄압 대책위, 불자들이 공감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언론사 편집장인 신청인이 언론을 탄압하고 사주의 편에 서는 등 정의롭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369~372	(각 정정·손배청구) 선○○ 對 뉴스앤조이 ^(369·370) , 인터넷 일요신문 ^(371·37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앤조이 : 『‘성매매 리스트’에 목사님이?』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7일자 교계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상습 성매매’ 목사 엄중한 교회법으로 징벌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목회자인 신청인이 성매매를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73·374	(반론·손배청구) (사) ○○○○회 對 수산신문
조 정 대 상	(1) 『○○회장 선출, 참을 수 없는 불쾌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 『○○회장 뽑는 건지 기업체 사장 뽑는 건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 선출에 임박해 부당한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출 규정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375·3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힘난한 '치매 정복', ○○제약 치료제 개발 손 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투자하고 있는 치매 치료 신약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377·378	(추후·손배청구) 백○○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검찰, 안티○○카페 백○○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79, 380, 400	(각 정정청구) 환경부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1) 『면세점법 등 4개法 연8조 손실 ... 경제성장률 0.7%p 까먹어』 (2016년 3월 5일자 8면) (2) 『온실가스 덜 배출한 발전소 제재하는 환경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14면) (3) 『환경부 허술한 검사, 폭스바겐 ‘숨방망이 처벌’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2면)
신청인 주장	환경부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회수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81·382	(정정·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프로그램 『도로 위의 승강이』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통 단속과 관련해 경찰과 실랑이 중 쓰러진 것이 ‘쇼’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피신청인이 모자이크 처리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으며,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은 보도임)

2016서울조정 383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공허한 현대인의 정곡을 찌르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차○○ 초대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1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예술 비평가인 신청인의 전시평을 표절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차○○ 초대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9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84, 385, 404, 412	(각 정정청구) 조원진 對 한국일보 ⁽³⁸⁴⁾ , 인터넷 한국일보 ⁽³⁸⁵⁾ , 인터넷 경향신문 ⁽⁴⁰⁴⁾ , 브레이크뉴스 ⁽⁴¹²⁾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막말·갑질 땡땡거리더니 ... 공천 앞두고 덜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세월호 막말’ 새누리 조원진·이완영 의원 ‘공천 관문’ 통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0일자 사회일반면) • 브레이크 뉴스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중 유가족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간주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막말·갑질 땡땡거리더니 ... 공천 앞두고 덜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4월 18일자 정치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보도] 새누리 조원진 의원 세월호 막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사회일반면) • 브레이크 뉴스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386, 387	(각 반론청구) 김○○ 對 중앙일보 ⁽³⁸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⁸⁷⁾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2) 『“한 달 알바 뛰면 100만원, 실·팀장은 200~300만원”... 대학로 뼈끼의 증언』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공연장에서 표를 강매하는 호객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4월 14일자 2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15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88~391	(각 반론·손배청구) 윤○○ 對 중앙일보 ^(388·389) , 온라인 중앙일보 ^(390·391)
조 정 대 상	(1)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2) 『“한 달 알바 뛰면 100만원, 실·팀장은 200~300만원”... 대학로 뼈끼의 증언』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공연 호객행위를 보도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4월 14일자 2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15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92·393	(반론·손배청구) 포천시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김○○ 후보 불법 자금 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포천시가 모 기업에게 거액의 불법보증을 서주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석탄 발전소 불법 자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94, 410	(각 반론청구) 안○○ 외 1인 對 채널A ⁽³⁹⁴⁾ , 인터넷 채널A ⁽⁴¹⁰⁾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급식비 빼돌리고 ‘못 나가’ 버티기』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3월 15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급식업체인 신청인이 질 낮은 식자재를 쓰고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95·396	(정정·손배청구) 변○○ 對 SBS-TV
조 정 대 상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조기교육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조기 외국어 교육의 폐해를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을 부정적으로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7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서울조정 397~399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지역 카페도 ‘노골적 홍보’… 두 달 만에 수 천만원 수익』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지역 카페 ‘홍보 빌미’ 상업화 … 포털 “규제 근거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상업화하여 고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지역카페 노골적 홍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일자)
2016서울조정 401·402	(정정·손배청구) ○○○○총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다리는 왜 만져” 교통사고 女환자, 성추행 의혹 의사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의사들이 여성 환자 진료 시 성추행을 일삼는 것 같은 삽화를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403	(정정청구) 홍일표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차명계좌” 내역서 입수』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전 직원 “홍 의원 지시로 개설”... 홍일표 입금 기록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홍일표 의원 차명계좌 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일자)
2016서울조정 405, 406	(각 정정청구) 류○○ 對 SBS-TV ⁽⁴⁰⁵⁾ , JTBC ⁽⁴⁰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이 모범수? ... 석연찮은 이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이번엔 ‘최신식 교도소 수감’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의 아내가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407	(손배청구) 함진규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현역 의원 논문 표절 의혹 “자료 부족” 해명』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석사 논문이 관련 도서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함진규 의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5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408	(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가족인 척 했다가 ... 사진 한 장에 딱 걸렸다』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축의금 절도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혼식 장면이 담긴 CCTV 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409	(정정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특허기계로 ‘포인트 환전’, 사행성 오락실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발한 성인 오락실 환불기를 불법 사행성 기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 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 내용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411	(정정청구) ○○○○노동조합 ○○○○지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영업通’ ○○○ 김 한국○○ 사장의 뚝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경 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집행부가 사장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영업通’ ○○○ 김 한국○○ 사장의 뚝심』 제하의 기사 중 “소주 폭탄주를 함께 한다” 등의 표현 삭제 (2016년 3월 11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413~416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KBS-1TV^(413·414), KBS미디어^(415·416)
조 정 대 상	<p>(1) 뉴스라인 프로그램 『교육 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사회면)</p> <p>(2) 뉴스9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사회면)</p> <p>(3) 뉴스광장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7일자, KBS미디어 3월 17일자 사회면)</p> <p>(4) 뉴스12 프로그램 『편의점 교육기간은 무급? ... ‘서러운 알바생’』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7일자, KBS미디어 3월 17일자 사회면)</p>
신청인 주장	편의점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서 편의점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교육 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동영상 삭제 (KBS미디어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417·418	(정정·손배청구) (재) ○○병원 유지재단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p>(1) 『[○○○○병원 사유화 논쟁]〈상〉 120년만의 일탈 ... 병원장 ‘3선’』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p> <p>(2) 『[○○○○병원 사유화 논란]〈중〉 제2기 전대학 사태 닳아가는 ○○○○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p> <p>(3) 『[○○○○병원 사유화 논란]〈하〉 부조리한 병원 운영 ... ‘수사 요청’ 탄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p>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반대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19~42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419·420) , 온라인 중앙일보 ^(421·422) , 인터넷 불교저널 ^(423·42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생활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문화/생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문화면) • 불교저널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메인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해외 문화원장인 신청인이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425	(정정청구) 염동열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땅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종합면)

2016서울조정 426	(손배청구) 구○○ 對 월드투데이
조 정 대 상	『구○○ “입냄새 난다 …”, 석○○ 해설의 돌직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여성 아나운서인 신청인이 입냄새가 난다는 타매체 진행자의 모욕적인 농담을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427·428	(정정·반론청구) 염동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염동열 의원 보좌관 급여 일부 처조카에게 지급 강요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입법 보조원이던 처조카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429·430	(정정·손배청구) 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지적장애 여성도 ‘학대’... 경찰 수사 ‘허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지적장애 여성 피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431~435	(각 정정청구) 이부형 對 연합뉴스⁽⁴³¹⁾, SBS 콘텐츠허브⁽⁴³²⁾, 인터넷 헤럴드경제⁽⁴³³⁾, 뉴스1코리아⁽⁴³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⁴³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비례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선거면) • 뉴스1 코리아 : 『비례 후보 재산 평균 21억 4000만원 ... 26%가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 『여야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4천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정치면) (2) 『4월 총선 비례 대표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신청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비례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선거면) • 뉴스1코리아 : 『비례후보 재산평균 21억4000만원 ... 26%가 전과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4월 총선 비례 대표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

2016서울조정 436·437	(정정·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MBC-TV
조정 대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잠 못 드는 밤, 소리로 복수하는 여자』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도하게 중간소음 피해를 주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2016서울조정 438~44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 (주)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438~440) , KBS미디어 ^(441~443)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 '7번 액셀 오작동' 항의 '1인 시위' 고객 형사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1) 『환불 요구에 '고소' ... 폭스바겐 '배짱 영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사회면) (2) 『항의 고객을 고소? ... "고객이 블랙컨슈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차량의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불성립결정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KBS미디어/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444, 445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세계일보 ⁽⁴⁴⁴⁾ , 세계닷컴 ⁽⁴⁴⁵⁾
조 정 대 상	『KF-X 사업 관여 전직 고위인사 “AESA 레이더 개발 인력 태부족”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2월 22일자 종합2면, 세계닷컴 2월 22일자 정치국방면)
신청인 주장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핵심장비 연구개발 인력이 총원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KF-X의 눈’ AESA 레이더 개발은 지상 과제』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4월 26일자 29면, 세계닷컴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446~448	(각 손해청구) 김○○ 對 KBS미디어 ⁽⁴⁴⁶⁾ , 연합뉴스 ⁽⁴⁴⁷⁾ , 이투데이 ⁽⁴⁴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1) 『초등생 아들 때린 엄마,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2) 『“공부 안해서” 초등생 아들 무차별 폭행』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왜 공부 안해” 초등생 아들 무차별 폭행한 엄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 이투데이 : 『“왜 공부 안해” 머리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 초등생 아들 폭행한 엄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뉴스광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449~460	(각 정정청구) ○○○○○ (주) 對 KBS-1TV ⁽⁴⁴⁹⁾ , KBS미디어 ⁽⁴⁵⁰⁾ , MBC-TV ⁽⁴⁵¹⁾ , iMBC ⁽⁴⁵²⁾ , SBS-TV ⁽⁴⁵³⁾ , SBS 콘텐츠허브 ⁽⁴⁵⁴⁾ , 연합뉴스TV ⁽⁴⁵⁵⁾ , 연합뉴스TV 인터넷 ⁽⁴⁵⁶⁾ , TV조선 ⁽⁴⁵⁷⁾ , 인터넷 TV조선 ⁽⁴⁵⁸⁾ , JTBC ⁽⁴⁵⁹⁾ , 인터넷 JTBC ⁽⁴⁶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실버타운 보증금, 사망·중병에도 “반환 안 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경제면) 외 4건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뽀뽀한 실버타운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iMBC 3월 16일자 경제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니 ... 실버타운 황당 황포』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3월 16일자 경제면) 외 1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사망 후에도 관리비 내라고?”… 실버타운 부당 계약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연합뉴스TV 인터넷 3월 17일자 경제면)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사망해도 환불이 안 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16일자 경제면) 외 1건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일부 실버타운, 과도한 위약금 등 ‘배짱’… 관련법 미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인터넷 JTBC 3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계약기간 중 사망한 입주자와 관련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위약금을 물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인터넷,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C-TV, iM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BS-TV, SBS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KBS-1TV, KBS미디어, JTBC, 인터넷 JTBC/사유 : 자진취하)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8일자, iMBC 4월 29일자 경제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3일자 경제면)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일자, 연합뉴스TV 인터넷 5월 4일자 사회면) • TV조선 : 프로그램 『실버타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9일자, 인터넷 TV조선 4월 29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461	(정정청구) 정○○ 對 뉴스1코리아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서 일본원숭이 외에도 줄줄이 폐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문화면) (2) 『○○○학교 원숭이들의 잇따른 죽음 … 고양이에게 끓는 물 부은 남성』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동물 공연을 기획하는 신청인 회사가 원숭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반론보도] ○○○학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문화면)

<p>2016서울조정 462, 463, 486</p>	<p>(각 손해청구) ○○○○대학교 병원 對 세계닷컴⁽⁴⁶²⁾, 포커스뉴스^(463,486)</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1) 『○○○○대 병원 ‘슈퍼 갑’의 횡포 넘어 특허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의료면) (2) 『○○○○대 병원, 도 넘는 갑질 의혹(?) ... 공익성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사회면) • 포커스뉴스 : (1) 『이단 특허 침해 의혹 ... 중기·벤처 다 죽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면) (2) 『이○○ ○○○○대 병원장 ‘영리 자회사’ 설립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산업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병원이 벤처기업의 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대 병원, 도 넘는 갑질 의혹(?) ... 공익성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측 반론 삽입 (2016년 4월 8일자 의료면) • 포커스뉴스 : 『S대학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제목 및 신청인 관련 내용 대폭 수정 (2016년 4월 18일자 산업면)
<p>2016서울조정 464~469</p>	<p>(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현대종교^(464~466), 현대종교 뉴스 서비스^(467~469)</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이단』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1월 1일자 미혹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1월 1일자 이단면) (2)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주장과 성경적 반증』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3월 1일자 예방과 대처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3월 1일자 구원파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교단이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등 성경 교리를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2016서울조정 470~478, 487~495	(각 정정청구) (재) ○○○○○○재단 ^(470~478) , 김○○ ^(487~495) 對 경향신문 ^(470,472,474,476,487,489,491,493) , 인터넷 경향신문 ^(471,473,475,477,478,488,490,492,494)
조정 대상	(1)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2월 5일자 A2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5일자 사회 일반면) (2)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1일자 A8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미디어면) (3) 『아리랑TV 12억대인 프로, 하루 참여 10명꼴 뿐』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4일자 A12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3일자 오피니언면) (4)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2월 5일자 미디어면) (5)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3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리랑TV의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들은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479, 480	(각 정정청구) 대한적십자사 對 교통신문 ⁽⁴⁷⁹⁾ , 인터넷 교통신문 ⁽⁴⁸⁰⁾
조정 대상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上,)(下)』 제하의 기사 (교통신문 2016년 3월 7일자 및 3월 14일자 11면, 인터넷 교통신문 3월 4일자 및 3월 11일자 육운면)
신청인 주장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등 무연고 사망자 무료 장의차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교통신문 2016년 4월 28일자 11면, 인터넷 교통신문 4월 28일자 육운면)

2016서울조정 481·482	(정정·손배청구) 흥○○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병원 사유화 논란]〈하〉 부조리한 병원 운영 ... ‘수사 요청’ 탄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 낸 것이 해당 병원장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83·484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조 정 대 상	(1) 『‘○○○’ 불법 유령단체 음모로 2년째 고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인권면) (2) 『○○○ 학부모회, 불법유령단체 비대위 규탄 집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인권면) (3) 『○○○ 학부모회, 인권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인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대표로 있는 모 장애인 시설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유령단체이며, 해당 시설 찬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485, 587	(반론, 손배청구) 최○○ 對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조 정 대 상	『국선 변호사 최○○ “기분 나빠서 사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커뮤니티면)
신청인 주장	국선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동석한 피신청인 소속 기자를 위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p>2016서울조정 496~585</p>	<p>(각 추후·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496·497), 뉴스1코리아^(498·499), TV조선^(500·501), 동아일보^(502·503), 서울신문^(504·505), 세계일보^(506·507), 중앙일보^(508·509), 인터넷 YTN^(510·511), SBS 콘텐츠허브^(512·513), KBS미디어^(514·515), 인터넷 MBN^(516·517), 인터넷 TBS^(518·519), 인터넷 JTBC^(520·521), 매경닷컴^(522·523), 아시아경제닷컴^(524·525), 인터넷 서울경제^(526·527), 인터넷 일요신문^(528·529), 한경닷컴^(530·531), 세계닷컴^(532·533), 동아닷컴^(534·535), 인터넷 서울신문^(536·537), 이투데이^(538·539), 아주뉴스^(540·54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542·543), 티브이데일리^(544·545), 인터넷 메트로^(546·547), 인터넷 내일신문^(548·549), 인터넷 경향신문^(550·551), 인터넷 헤럴드경제^(552·553), 전자신문 인터넷^(554·555), 아이티투데이^(556·557), 프레시인^(558·559), 아시아투데이닷컴^(560·561),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562·563),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564·565), 인터넷 신아일보^(566·567), 국회뉴스^(568·569), 아이뉴스24^(570·571), e중앙뉴스^(572·573), 폴리뉴스^(574·575), 더리뷰^(576·577), NBS국민방송^(578·579), 인터넷 주간현대^(580·581), 인터넷 스포츠조선^(582·583), 위키트리^(584·585)</p>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檢, ‘학점은행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사회면) 외 8건 • 뉴스1코리아 : 『‘교비 횡령’ 혐의 김○○ ○○○○직업학교 이사장 3차 소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 동아일보 : 『학점은행 기관 지정 ‘교피아’ 뒷돈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A12면, 동아닷컴 6월 20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檢,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11면) • TV조선 : 뉴스9 프로그램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일자) 외 40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각 취하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⁵⁰⁶⁾, 인터넷 YTN⁽⁵¹⁰⁾, SBS 콘텐츠허브⁽⁵¹²⁾, 인터넷 MBN⁽⁵¹⁶⁾, 매경닷컴⁽⁵²²⁾, 한경닷컴⁽⁵³⁰⁾, 세계닷컴⁽⁵³²⁾,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⁵⁶⁴⁾, 인터넷 신아일보⁽⁵⁶⁴⁾, 폴리뉴스⁽⁵⁷⁴⁾/사유 : 추후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인터넷 JTBC⁽⁵²⁰⁾, 아시아경제닷컴⁽⁵²⁴⁾, 티브이데일리⁽⁵⁴⁴⁾, 인터넷 메트로⁽⁵⁴⁶⁾, 인터넷 경향신문⁽⁵⁵⁰⁾, 인터넷 헤럴드경제⁽⁵⁵²⁾, 프레시인⁽⁵⁵⁸⁾, 아시아투데이닷컴⁽⁵⁶⁰⁾, 아이뉴스24⁽⁵⁷⁰⁾/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KBS미디어⁽⁵¹⁴⁾, 인터넷 TBS⁽⁵¹⁸⁾, 인터넷 서울경제⁽⁵²⁶⁾, 인터넷 일요신문⁽⁵²⁸⁾, 이투데이⁽⁵³⁸⁾, 아주뉴스⁽⁵⁴⁰⁾, 인터넷 파이낸셜뉴스⁽⁵⁴²⁾, 인터넷 내일신문⁽⁵⁴⁸⁾, 전자신문 인터넷⁽⁵⁵⁴⁾, 아이티투데이⁽⁵⁵⁶⁾,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⁵⁶²⁾, 국회뉴스⁽⁵⁶⁸⁾, e중앙뉴스⁽⁵⁷²⁾, 더리뷰⁽⁵⁷⁶⁾, NBS국민방송⁽⁵⁷⁸⁾, 인터넷 주간현대⁽⁵⁸⁰⁾, 인터넷 스포츠조선⁽⁵⁸²⁾, 위키트리⁽⁵⁸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TV조선, 세계일보⁽⁵⁰⁷⁾, 중앙일보, 인터넷 YTN⁽⁵¹¹⁾, SBS 콘텐츠허브⁽⁵¹³⁾, KBS미디어⁽⁵¹⁵⁾, 인터넷 MBN⁽⁵¹⁷⁾, 인터넷 TBS⁽⁵¹⁹⁾, 인터넷 JTBC⁽⁵²¹⁾, 매경닷컴⁽⁵²³⁾, 아시아경제닷컴⁽⁵²⁵⁾, 인터넷 서울경제⁽⁵²⁷⁾, 인터넷 일요신문⁽⁵²⁹⁾, 한경닷컴⁽⁵³¹⁾, 세계닷컴⁽⁵³³⁾, 이투데이⁽⁵³⁹⁾, 아주뉴스⁽⁵⁴¹⁾, 인터넷 파이낸셜뉴스⁽⁵⁴³⁾,

처 리 결 과	티브이데일리 ⁽⁵⁴⁵⁾ , 인터넷 메트로 ⁽⁵⁴⁷⁾ , 인터넷 내일신문 ⁽⁵⁴⁹⁾ , 인터넷 경향신문 ⁽⁵⁵¹⁾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⁵⁵³⁾ , 전자신문 인터넷 ⁽⁵⁵⁵⁾ , 아이티투데이 ⁽⁵⁵⁷⁾ , 프레시안 ⁽⁵⁵⁹⁾ , 아시아투데이닷컴 ⁽⁵⁶¹⁾ ,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⁵⁶³⁾ ,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⁵⁶⁵⁾ , 인터넷 신아일보 ⁽⁵⁶⁷⁾ , 국회뉴스 ⁽⁵⁶⁹⁾ , 아이뉴스24 ⁽⁵⁷¹⁾ , e중앙뉴스 ⁽⁵⁷³⁾ , 폴리뉴스 ⁽⁵⁷⁵⁾ , 더리뷰 ⁽⁵⁷⁷⁾ , NBS국민방송 ⁽⁵⁷⁹⁾ , 인터넷 주간현대 ⁽⁵⁸¹⁾ , 인터넷 스포츠조선 ⁽⁵⁸³⁾ , 위키트리 ⁽⁵⁸⁵⁾ /사유 : 자진취하)
---------	--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학점은행 기관 지정 ‘교피아’ 뒷돈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4월 1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전직 ○○○○진흥원장, 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외 12개 매체 보도 • 뉴스1코리아 : 『‘교비횡령’ 혐의 김○○ ○○○○직업학교 이사장 3차 소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수정
---------	---

2016서울조정 586	(정정청구) 이○○ 對 쿠키뉴스
-----------------	-------------------

조 정 대 상	『동작갑의 이○○·김○○ 대결이 흥미로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정치면)
---------	--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후보인 신청인이 2004년 모 회사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	----------------

이 행 결 과	『동작갑 이○○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정치면)
---------	---

2016서울조정 588·589	(정정·손배청구) (주) ○○○○ 對 포스트코리아신문
---------------------	-------------------------------

조 정 대 상	『○○○○ 골프장 자본금 한푼 없이 무작정 회원 모집?』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10면)
---------	--

신청인 주장	골프장 운영자인 신청인과 회원들간 입회금 반환 및 회생 계획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회원측 입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

이 행 결 과	『○○○○ 골프장 본지 3/30일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정치면)
---------	--

2016서울조정 590~592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방석호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3)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 심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사 외주 제작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2016서울조정 593~600, 612~614	(각 추후청구) 백○○ 對 인터넷 MBN ⁽⁵⁹³⁾ , 노컷뉴스 ⁽⁵⁹⁴⁾ , 연합뉴스 ⁽⁶¹²⁾ (각 추후·손배청구) 동아닷컴 ^(595·596) , 인터넷 문화일보 ^(597·598) , 온라인 중앙일보 ^(599·600) , 인터넷 헤럴드경제 ^(613·61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 : 『시민 기부금 횡령 … 생활·유흥비로 써』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경찰, 안티MB 카페 운영진 횡령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술값에 쓴 쇠고기 집회 기부금』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좌파 성향 시민운동 일각의 파렴치』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칼럼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네티즌 성금, 술값·생활비로 쓴 “안티MB” 카페지기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美 쇠고기 반대 안티MB’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동아닷컴,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중재부의 결정 내용을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인터넷 MBN, 노컷뉴스, 연합뉴스/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드립니다] ‘안티MB’카페 대표 관련 기소,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	---

2016서울조정 601, 602	(각 정정청구) (주) ○○○○○○ 對 경향신문 ⁽⁶⁰¹⁾ , 인터넷 경향신문 ⁽⁶⁰²⁾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1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2) 『방석호 시절 아리랑TV 입찰 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모 방송사 전 사장과의 친분으로 외주제작사에 선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 보도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603~606	(각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서울매일 ^(603·604)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605·60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매일 : 『○○○단협, 대표회장 선거 “사전 모의와 부정 있었다” 양심 고백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4일자 종교문화면)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 『○○○단협 대표회장 선거, “사전 모의와 부정 있었다”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회장 선거 당시, 사전 모의와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매일 : 『‘○○○단협, 대표회장 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종교문화면)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 『‘○○○단협, 대표회장 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종교면)

2016서울조정 607~609	(정정·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 ^(607·608) (정정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⁶⁰⁹⁾
조 정 대 상	(1) 『전 고법원장, 고리로 돈 빌려준 뒤 성공 보수 미리 뺐 의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2) 『변협, 고금리 대출 의혹 이○○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공 보수를 미리 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10	(반론청구) 김○○ 對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조 정 대 상	『선거 앞두고 또 ‘박원순 명예훼손’ 차량 등장』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재산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선거철에만 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박원순 명예훼손차량’이라고? 절대 아니다! 강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611	(손배청구) 김○○ 對 SBS CNBC-TV
조 정 대 상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프로그램 『오래간만의 출장이었는데』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3년 전 교통사고 영상 제보자로서 인터뷰한 것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15	(정정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슈퍼푸드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에서 살균제와 살충제가 검출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슈퍼푸드, 그 후』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5일자)

2016서울조정 616, 617	(각 정정청구) 윤○○ 對 SBS-TV ⁽⁶¹⁶⁾ , JTBC ⁽⁶¹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이 모범수? ... 석연찮은 이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이번엔 ‘최신식 교도소 수감’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이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JTBC/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SBS-TV)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최신식 교도소 수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4월 29일자)

2016서울조정 618~621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일요시사 ^(618·619) , 인터넷 일요시사 ^(620·621)
조 정 대 상	『조○○ 목사님 땅값 주세요』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24일자 29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폭에게 매도인을 폭행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조○○ 목사님 땅값 주세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5월 1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시사 4월 27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622·623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80세대 신축빌라 2세대만 거주 ... 인천 운영도 ‘유령 마을’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분양 중인 빌라 단지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24·62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괘도난마 프로그램 『北 지령받은 목사, 왜』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북한에 포섭되어 지하조직 구축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5백만원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괘도난마 프로그램 『北 지령받은 목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9일자)

2016서울조정 626~629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626·627) , 이코노믹포스트 ^(628·62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사주간 : 『웅진씽크빅 북클럽 위약금, 불완전판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7일자 사회면) • 이코노믹포스트 : 『웅진씽크빅 북클럽 위약금, 불완전판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 멤버십 계약시 가입자에게 상품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상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630, 631	(각 정정청구) (사) 대한한의사협회 對 의협신문 ⁽⁶³⁰⁾ , 닥터스뉴스 ⁽⁶³¹⁾
조 정 대 상	『한의학 ‘짜통’ 영문명칭 “끝까지 소송”』(의협신문 2016년 4월 11일자 6면, 닥터스뉴스 4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영문 명칭을 짜통이라고 비하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의학 ‘짜통’ 영문명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6년 5월 9일자 6면, 닥터스뉴스 5월 2일자 의사협회면)

2016서울조정 632·633	(정정·손배청구) ○○○○○○○○ 사회복지재단 ○○○○○○ 對 미디어시티 앤방송
조 정 대 상	『노숙자들의 천국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 그들은 왜 떠나려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기관이 봉사단체에 갑질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역 ○○○○○터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뉴스종합면)

2016서울조정 634	(정정청구) 조원진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막말” 새누리 의원들, 모두 총선 출마』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새누리 조원진 의원 ‘세월호 막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635·636	(정정·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동을 학대해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637·638	(정정·손배청구) 마○○ 對 SBS-TV
조 정 대 상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린다-꼬마 작곡가 10세 한○○』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도한 학생이 피아노 영재로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2016년 1월 27일자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린다> 방송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6일자)

2016서울조정 639·640	(정정·손배청구) 윤○○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1) 『목사 집 들어간 여자 권사, 하룻밤 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사회면) (2)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3) 『13억 예산 중 담임목사 연봉만 3억』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4) 『인천 C교회 A 목사, 이번엔 유부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여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일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1, 642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사업연합회 對 시사저널 ⁽⁶⁴¹⁾ , 인터넷 시사저널 ⁽⁶⁴²⁾
조 정 대 상	『○○○생협, 유사 수신행위 해당』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2016년 4월 5일자 66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3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차입금 모집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2016년 5월 10일자 52면, 인터넷 시사저널 5월 1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643	(손배청구) 우○○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수행자 성매매 들뜸에도 제식구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2) 『성범죄에 관대한 참 나쁜 대구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3) 『시민단체, 약령시 사업단장 논란에 적절한 조치 취하라 요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과거 성매매 입건 사실을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44, 707, 708	(각 정정청구) 허현준 對 시사저널 ⁽⁷⁰⁷⁾ , 인터넷 시사저널 ^(644,708)
조 정 대 상	(1)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지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4월 23일자 11면~18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20일자 정치면) (2)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6년 4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보수단체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5	(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장학금 많이, 입학금은 더 많이’... ○○○○○○○대학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장학혜택을 줄이면서 가장 비싼 입학금을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 제목을 『대학원대학 입학금 논란 “비싸거나 없거나”』로 수정 (2016년 5월 4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646	(손배청구) 윤○○ 對 더벨
조 정 대 상	『기업사냥꾼에 골병드는 ○○○○』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상장 폐지시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한 기업사냥꾼이라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7	(손배청구) (주) ○○○○○ 對 위키트리
조 정 대 상	『“도우미가 씻긴 뒤 얼굴 살 벗겨진 아들” 공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파견한 산후도우미의 과실로 신생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잘못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48~655	(각 정정·반론청구) 성남시 외 1인 對 동아일보 ^(648·649) , 동아닷컴 ^(650·651) , 채널 A ^(652·653) , 인터넷 채널A ^(654·65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북핵이 한국 탓이라는 이재명 시장』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A08면, 동아닷컴 3월 23일자 정치면)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재명 “박 정부 탓 북핵 개발”』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22일자 뉴스정치면)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워싱턴 토론회에서 발언한 대북 정책 관련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56~659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SBS-TV ^(656·657) , SBS 콘텐츠허브 ^(658·659)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동 목조 주택 하자·보수’ 따져봐야』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4월 23일자, SBS 콘텐츠허브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동식 목조주택의 불량 시공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 사업장과 간판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660	(정정청구) ○○○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오남용 되는 여성흥분제 ‘○○’... 마약류로 지정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성 흥분제로 사용되는 모 제품에 마약류 지정에 필수적인 의존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661·662	(정정·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1) 『한○○ ○○대 교수회장 폭행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교계면) (2) 『○○대, 폭행혐의 한○○ 교수 증징계 요청』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63	(손배청구) 문○○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소비자 기만하는 자동차사』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664~667, 932~943	(각 정정·손배청구) 염○○ 對 인터넷 경향신문 ^(664·665) , 동두천연천신문 ^(666·667) (각 추후·손배청구) 연합뉴스 ^(932·933) , 동두천연천신문 ^(934·935) , 인터넷 신아일보 ^(936·937) , 아시아경제닷컴 ^(938·939) , 인터넷 경향신문 ^(940·941) , 인터넷 한겨레 ^(942·94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향신문 : 『연천 지역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등 20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동두천연천신문 : 『연천서, 연천 지역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등 20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연합뉴스 :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초기화면) 인터넷 신아일보 : 『‘현무암’ 6천톤 불법 채취 일당 검거 ... 공무원까지 ‘한통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아시아경제닷컴 :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채석을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동두천연천신문^(934·935),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경향신문^(940·941)/내용 : 추후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한겨레/내용 : 추후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664·665)/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동두천연천신문^(666·667))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불법 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신아일보 : 『[추후보도문] “현무암” 6천톤 불법 채취 일당 검거 ... 공무원까지 ‘한통속’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추후보도문]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보도

2016서울조정 668·669	(정정·손배청구) (유)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정 대상	『담양 메타프로방스 국제 PJ파 개입 전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670~685, 711~716	(각 정정·손배청구) ○○○○○ 對 경향신문^(670·671), 인터넷 경향신문^(672·673), 인터넷 미디어오늘^(674·675), 뉴스앤뉴스^(676·677), 인터넷 위클리서울^(678·679), 통일뉴스^(680·681), 한강타임즈^(682·683),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684·685), JTBC^(711·712), 인터넷 JTBC^(713·714), 시사인 Live^(715·716)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정부, 허 행정관 몸담았던 ‘시대정신’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5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청와대가 허현준 행정관 조사 못하는 사정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아침신문속아보기면) • 뉴스앤뉴스 : 『정부, 허현준 靑행정관 몸담았던 단체에 2억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서울 :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정치면) • 통일뉴스 :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청와대는 ‘종북 딱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현장소식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타임즈 : 『어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설 듣고 놀람기보다 ‘과연 그랬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정치국회면)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 『어버이연합 사태, 정대협 “중복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정치외교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극우·보수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청와대 지시로 모 인권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뉴스앤뉴스, 인터넷 위클리서울, 통일뉴스, 한강타임즈,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JTBC, 인터넷 JTBC, 시사인 Live)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초기화면) • 뉴스앤뉴스 : 『〈바로잡습니다〉 허현준 靑행정관 몸담았던 단체에 2억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위클리서울 :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정치면) • 통일뉴스 :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청와대는 ‘중복 딱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현장소식면) • 한강타임즈 : 『어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설 듣고 놀람기보다 ‘과연 그랬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정치국회면)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 『어버이연합 사태, 정대협 “중복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686	(반론청구) (주) ○○○○○○ 對 SBS-TV
조정 대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동 목조 주택 하자·보수 따져봐야』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이동식 목조주택 제조회사인 신청인과 고객의 분쟁과 관련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687·688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불륜녀의 죽음』 제하의 보도 예고편 (2016년 4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수사한 살인 사건 관련 내용을 왜곡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689~692	(각 반론·손배청구) 백○○ 對 JTBC ^(689·690) , 채널A ^(691·69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사건반장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없애달라” 막장 부부의 결말』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4일자)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죽여달라” 막장극]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편을 살인교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JTBC/사유 : 반론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널A/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사건반장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없애달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27일자) • 인터넷 채널 A : 『[“변호사 남편 죽여달라” 막장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693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공, 요금 수납원 인권침해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 『서산C 영업소, 요금 수납원에 ‘화장실 methyl’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톨게이트에서 여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산C 영업소, 요금 수납원에 ‘화장실 methyl’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4면)

2016서울조정 694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어버이게이트”로 드러난 “2013년 국정원 문건”의 실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가정보원이 4·13 총선 직전 선거 판세를 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정원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695, 696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일간투데이 ⁽⁶⁹⁵⁾ , 인터넷 일간투데이 ⁽⁶⁹⁶⁾
조 정 대 상	『탐욕스런 ‘기업형 수퍼마켓’』 제하의 기사 (일간투데이 2016년 4월 28일자 8면, 인터넷 일간투데이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푸드 직매장이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변질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광양 ○○○○ 직매장 관련』 제하의 기사 (일간투데이 2016년 5월 13일자 8면, 인터넷 일간투데이 5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697~705	(각 반론청구) 이○○ 對 연합뉴스 ⁽⁶⁹⁷⁾ , 인터넷 서울신문 ⁽⁶⁹⁸⁾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⁶⁹⁹⁾ , 매경닷컴 ⁽⁷⁰⁰⁾ , 아시아투데이닷컴 ⁽⁷⁰¹⁾ , e머니투데이 ⁽⁷⁰²⁾ , KBS미디어 ⁽⁷⁰³⁾ , 인터넷 YTN ⁽⁷⁰⁴⁾ , 인터넷 BBS불교방송 ⁽⁷⁰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檢 고발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매경닷컴 : 『김태환 새누리의원 등 전·현직 ○○○협회장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아시아게임 대표 선발 개입’ 이○○ 대한○○○협회장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법원검찰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전·현직 ○○○협회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대한○○○협회장, 대표 선발에 개입한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아시안게임 ○○○ 국가대표의 특정팀 소속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연합뉴스, 매경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BBS 불교방송 / 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헤럴드경제, e머니투데이, KBS미디어, 인터넷 YTN/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고발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檢 고발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최신기사면) • 매경닷컴 : 『‘AG ○○○ 출전 선수 선발’ 보도에 관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고발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전·현직 ○○○협회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이○○ 대한○○○협회장 “대표 선발 개입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8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2016서울조정 706	(반론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새집 ‘독성물질’ 없애달라 불렀더니 눈은 따끔, 코는 비릿 ... 독성물질에 또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오존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기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새집증후군 해결 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09·710	(정정·손배청구) 김성곤 對 채널A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총선 불출마하고 세금 외유 평평』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17, 718	(각 손배청구) 박○○ 對 채널A ⁽⁷¹⁷⁾ , 인터넷 채널A ⁽⁷¹⁸⁾
조 정 대 상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긴급 점검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719·720, 770~77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핌 ^(719·720) , MBC-TV ^(770·771) , iMBC ^(772·7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핌 : 『명품 옷가게 여사장, 왜 단골들만 속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대중문화면) MBC-TV :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단골 이웃들 속여 명품 판 옷가게 언니, 빚진 돈에 밀린 갯돈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4일자, iMBC 4월 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헌옷을 명품이라 속여 이웃들에게 팔고, 빚이 70억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C-TV, iMBC/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 옷을 명품 옷으로 판 옷가게 언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핌 2016년 6월 29일자 대중문화면)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다시보기 중 기사일부 삭제 (iMBC 2016년 6월 17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721~726	(각 정정청구) 명○○ 對 조선닷컴 ⁽⁷²¹⁾ , 미디어펜 ⁽⁷²²⁾ , 연합뉴스 ⁽⁷²³⁾ , 인터넷 MBN ⁽⁷²⁴⁾ , KBS미디어 ⁽⁷²⁵⁾ , SBS 콘텐츠허브 ⁽⁷²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닷컴 : 『탈북 팝페라 가수 명○○씨가 전하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실상』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북한면) 미디어펜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국 드라마 보고 귀순 결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정치면) 연합뉴스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MBN : 『北 해외 식당 종업원 “파견 전 집중 사상 교육, 남한 드라마 탈북에 영향”』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사회면) KBS미디어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국제면) SBS 콘텐츠허브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한국 TV드라마에 묘사된 풍족한 남한의 생활상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KBS미디어, SBS 콘텐츠허브/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선닷컴/내용 : 기사수정) 각 취하 (미디어펜, 인터넷 MBN/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닷컴 : 『탈북 팝페라 가수 명○○씨가 전하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실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5월 25일자 북한면) 미디어펜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국 드라마 보고 귀순 결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정치면)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北 해외식당 종업원 “파견 전 집중 사상 교육, 남한 드라마 탈북에 영향”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727, 728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MBN ⁽⁷²⁷⁾ , 인터넷 MBN ⁽⁷²⁸⁾
조 정 대 상	굿모닝MBN 프로그램 『더민주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5월 3일자, 인터넷 MBN 5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이 신청인이 보좌진의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상납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29~73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채널A ^(729·730) , 인터넷 채널A ^(731·732)
조 정 대 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긴급점검!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5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733~735	(각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경향신문 ⁽⁷³³⁾ , 인터넷 경향신문 ⁽⁷³⁴⁾ , 미디어스 ⁽⁷³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KBS서 횡령 혐의 해임된 김○○ 아리랑TV 신임 사장으로 내정』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3일자 미디어면) 미디어스 : 『아리랑TV, 방석호 가고 ‘횡령’ 김○○ 오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인을 아리랑TV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미디어스 /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아리랑TV 신임 사장 내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31일자 사회면) 미디어스 : 『‘아리랑TV 신임 사장 낙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736	(정정청구) (주)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뒷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매립 농지에 대한 관할 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전남 무안 ○○산단 농지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37~74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737·738) , 조선닷컴 ^(739·740)
조 정 대 상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6년 3월 3일자 A12면, 조선닷컴 3월 3일자 법원검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급소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합의에 따라 이미 정정보도 된 사안으로 청구 실익이 없음)

2016서울조정 741~746, 921, 922, 1001	(각 정정청구) 장○○ 對 SBS-TV ^(741~743,921) , SBS 콘텐츠허브 ^(744~746,922) , 프리미엄 조선 ⁽¹⁰⁰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1) 뉴스8 프로그램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일본서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2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2일자 사회면) (2)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체포 ... 구속영장 발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3일자 사회면) (3)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현대미술 거장’ 이○○ 작품 위조 용의자, 日서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3일자 사회면) (4)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위작 논란’ 이○○ 화백, 오늘 경찰 출석』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7일자, SBS 콘텐츠허브 6월 27일자 사회면) • 프리미엄 조선 : 『이○○은 돈보기로 첫 날엔 두 시간, 그 다음엔 네 시간을 꿈꿈히 살펴봤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와이드인터뷰면)
신청인 주장	모 유명 화백의 작품 위조 감정서 자료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콘텐츠허브 :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일본서 검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프리미엄 조선 : 『이○○은 돈보기로 첫 날엔 두 시간, 그 다음엔 네 시간을 꿈꿈히 살펴봤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게재된 감정서 그림 삭제 (2016년 7월 15일자 와이드인터뷰면)

2016서울조정 747	(정정청구) 한국국방연구원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당나라로 갔나 ... ‘사라진 軍 침대’ 이유 아직 못 밝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재부에 제출한 병영생활 현대화사업 중간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당나라로 갔나 ... ‘사라진 軍 침대’ 이유 아직 못 밝혔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5월 2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748·749	(정정·손배청구) 반○○ 외 5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세명의 상전, 시엄마의 시집살이는 언제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5일자)
신청인 주장	4대가 모여 사는 신청인 가족에 관한 내용이 동의 사항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편집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0	(추후청구) 김○○ 외 2인 對 미디어인뉴스
조 정 대 상	『(주) ○○○○○○○○, (주) ○○○ 사업권 가로챈 전 직원 3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퇴직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주) ○○○ 사업권 관련 고소 전 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751, 752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JTBC ⁽⁷⁵¹⁾ , 인터넷 JTBC ⁽⁷⁵²⁾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서울 복판 기지서 ‘지카 실험 추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11일자, 인터넷 JTBC 5월 11일자 정치면) (2) 뉴스룸 프로그램 『하루 수십 개 ‘생화학 실험’』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11일자, 인터넷 JTBC 5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주한미군이 용산 미군 기지에서 생화학 실험을 했고,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주한미군, ‘지카 실험’ 추진 및 생물학 실험”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8일자, 인터넷 JTBC 7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53	(정정청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對 코리아패션+텍스뉴스
조 정 대 상	(1) 『산업통상자원부, 韓패션산업研 원장 선임 거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패션면) (2) 『산패션研, 신임 원장 공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패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장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54, 755, 763, 764	(각 정정청구) 강남경찰서 對 한겨레 ⁽⁷⁵⁴⁾ , 인터넷 한겨레 ⁽⁷⁵⁵⁾ , 네이버 ⁽⁷⁵⁶⁾ , 다음 ⁽⁷⁵⁷⁾
조 정 대 상	『‘100억 수입’ 변호사-강남경찰서 ‘수상쩍은 관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5월 13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네이버, 다음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경찰서가 과다 수입료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모 변호사 관련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6, 757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증권지부 對 한국경제 ⁽⁷⁵⁶⁾ , 한경닷컴 ⁽⁷⁵⁷⁾
조 정 대 상	『모회사 ○○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 ○○○○증권 ‘나 떨고 있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5월 11일자 A21면, 한경닷컴 5월 10일자 증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사측과 영업점 통폐합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증권 노사 점포폐쇄 합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6월 8일자 24면, 한경닷컴 6월 8일자 증권면)

2016서울조정 758, 784, 785	(각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1) 『전○○ 표절건, 자유총연맹 거짓음모론 유포하는 박원순 피고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정치면) (2) 『애국시민련 김○○, 전○○ 표절 - 김○○ 음모론 관련 논란 2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정치면) (3) 『전○○ 표절 옹호 위해, 거짓 음해 인신공격 위험선 넘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음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9·760	(정정·손배청구) 강○○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맞춤형 해외경제 정보 프로젝트 오보로 좌초 ... 허위 제보 확인 않고 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허위제보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761·762, 775·776	(각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미디어스 ^(761·762) , 인터넷 국민일보 ^(775·77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1)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16회 - 마지막 김○○의 환한 웃음이 던지는 의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블로그와면) (2) 『세월호, 그날의 기록 ... 사실의 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3일자 오피니언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박근혜씨 “지난해 6월 형님 대통령 방미 연기는 메르스 아닌 유승민 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이 청해진 해운의 실 소유주이고, 유희장 일가의 요구로 세월호가 개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알림]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미션라이프면)
2016서울조정 765·766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 건물 세입자 불구속기소 “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가수 소유 건물 세입자인 신청인이 허위고소를 일삼아왔고,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서울조정 767, 768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대기원시보 ⁽⁷⁶⁷⁾ , 인터넷 대기원시보 ⁽⁷⁶⁸⁾
조 정 대 상	『선원 ‘2016 월드투어’ 수원서 막 내리다』 제하의 기사 (대기원시보 2016년 5월 16일자 3면, 인터넷 대기원시보 5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특정 공연의 KBS홀 대관 취소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모 프로그램 예술 총감독이 신청인 방송사 소속 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KBS 예술 총감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2면)

2016서울조정 769	(손배청구) 오○○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카드뉴스] 혹시 이 뉴스, 불편하신가요?』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불편하다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트위터 화면을 삽입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774	(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12 프로그램 『“지점장 시켜줄게”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다단계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77·778	(정정·손배청구) (사) ○○○○교회 ○○○○연합회 외 2인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1) 『[단독] ○○○○교회·○○○○연합회 정관 취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교계선교면) (2) 『[단독] “최순영 장로가 ○○○의 실제적 주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교계선교면) (3) 『[단독] “○○○ 재정권 사실상 최○○ 손 안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교계선교면) (4) 『“○○○ 법인허가 취소사유 ...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교계선교면) (5) 『“○○○ 유령 분사무소”... 최○○ 측 재산 은닉?』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교계선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를 특정인이 사유화 하고 있고, 재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정관, 2003년부터 ‘소급무효’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교계선교면)

2016서울조정 779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여성장애인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 판결 환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0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장난으로 치부해 가볍게 여겼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80, 781	(각 정정청구) 박○○ 對 e머니투데이 ⁽⁷⁸⁰⁾ , 전자신문 인터넷 ⁽⁷⁸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양키캔들 취급점 캔들나무 “대세는 천연캔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중기면) • 전자신문 인터넷 : 『“프리미엄+멀티” 양키캔들 취급점 ‘캔들나무’... 높은 성장세 ‘눈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매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782·783	(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뉴스미션
조 정 대 상	『“가족들, ○○○교회에 수억 바치고 피지로 떠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종말론을 펼치며 신도들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786	(손배청구) 손○○ 對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조 정 대 상	(1) 『○○○○○○ 20억 주식판매, 다단계·유사 수신 ‘투자 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자 국내증시면) (2) 『몽골 금광 사장 K씨 “납치 살해될 뻔”』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국내증시면) (3) 『납치 사건 배후 의혹 ‘○○○○○○○○○○’ 어떤 회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국내증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금광 투자사가 광업권도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787·788	(정정·손배청구) (주) ○○○○○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남남북녀 결혼? 사기 주의보』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여성 전문 결혼 중매업체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해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89·790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조 정 대 상	『서울교육청 직무연수서 강사들 일부 발언 내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사직무 연수 중 교사는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존재로 인권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서울교육청 직무연수서 강사들 일부 발언 내용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6월 10일자 현장면)

2016서울조정 791·792	(정정·반론청구) 어○○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강남구 ‘현안 산적’ 세곡동 주민과 대화 … 효과는 미지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세곡지역 주민연합이라는 유명단체의 의견을 보도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793~796	(각 추후·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TV ^(793·794) , 연합뉴스TV 인터넷 ^(795·796)
조 정 대 상	뉴스Y 프로그램 『잠실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 구청 수사 의뢰』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6년 11월 12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797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조 정 대 상	『‘2016 ○○ 스파르탄 레이스’ 오늘만큼은 ‘생얼’도 괜찮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9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 브랜드의 장애물 레이스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98·799, 944·945	(각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798·799) , 노컷뉴스 ^(944·945)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1) 『○○○○교회, 미국서도 시한부 종말론 주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0일자 시사면) (2) 『기독교자유당 “국회 입성 땀 사이비 종교 금지법 제정”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시사면) • 노컷뉴스 : 『한국교회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이 있고,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하는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국민일보/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취하 (노컷뉴스/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한국교회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노컷뉴스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00·801, 804·805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800·801) , 미디어오늘 ^(804·805)
조정 대상	『KBS 신입사원 연수 중 사망, 그때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월 1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7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연수 중 사고로 사망한 신입사원의 유족과 보상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 “KBS 신입사원 연수 중 사망” 관련』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6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02	(정정청구) ○○○○○○마을 (주)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무등록·거짓 광고’ ○○○○○○마을 운영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명, 신청인의 성(姓), 나이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03	(반론청구) 권○○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알바 시위·공금 유용 의혹 ‘사시존치모임’ 내홍 앞과 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한변협으로부터 부적절한 금전 지원을 받아 사시 존치 집회 참가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06~815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JTBC ^(806·807) , 인터넷 JTBC ^(808·809) , MBN ^(810·811) , 인터넷 MBN ^(812·813) , 노컷뉴스 ^(814·81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8시뉴스 프로그램 『13km를 따라가며 ... 이번엔 버스가 버스에게 보복 운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JTBC 3월 18일자 사회면) • MBN : 8시종합뉴스 프로그램 『출근길 만원 상대로 보복 운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MBN 3월 1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1) 『‘칼치기’ 관광 버스의 아찔한 보복 운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사건사고면) (2) 『고속도로 위 ‘칼치기’ 관광버스의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근길 만원버스를 상대로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16~819, 822~825	(각 정정·손배청구) 임○○ ^(816~819) , 구○○ ^(822~825) 對 서울경제 ^(816·817,822·823) , 인터넷 서울경제 ^(818·819,824·825)
조 정 대 상	『○○대 병원, 중소기업 도용 사적 이익 ... 부끄러운 지성의 요람』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6년 5월 27일자 28면, 인터넷 서울경제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병원 연구교수인 신청인들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병원 중소기업 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6년 6월 21일자 29면, 인터넷 서울경제 6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20·821	(정정·손배청구) 윤○○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 불법 다단계로 회원 모집』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다단계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826	(반론청구) (주) ○○○ 對 중기이코노미
조 정 대 상	『‘○○○’과 사업자 대립 첨예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스크린골프 업체들에게 과도한 기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코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현장이슈면)

2016서울조정 827	(정정청구) 대한체육회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에 분쟁해결 조항을 신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828·829, 850·851, 1095~1098	(각 정정·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828·829) , 미디어스 ^(850·851) , 미디어오늘 ^(1095·1096) , 미오켓 ^(1097·109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MBN 기자가 소개비 받아 “전달만 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종합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미오켓 5월 30일자 미디어면) • 미디어스 : 『거액 받고 다시 돌려주는 기자의 “선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미디어오늘, 미오켓/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초기화면) • 미디어오늘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종합면) • 미디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MBN기자, 소개비 받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미디어뉴스면)
2016서울조정 830·831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동·식물로 만든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기 왜 안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2일자 중소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완제 의약품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중소기업면)

2016서울조정 832·833	(정정·손배청구) 송○○ 對 뮤지컬
조 정 대 상	『오롯이 본질에 가까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35면~38면)
신청인 주장	특정 뮤지컬 배우를 과장되게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834, 835	(각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⁸³⁴⁾ , 인터넷 채널A ⁽⁸³⁵⁾
조 정 대 상	7시 종합뉴스 프로그램 『유명 건설사 사장 사기꾼 전락』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6월 2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형 건설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속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미이행)
2016서울조정 836	(정정청구) (주) ○○○ 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1) 『[단독] 3D프린터 ○○○, 국책 과제 무더기 수주 …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2) 『‘국책과제 무더기 수주 ○○○, 기술력 놓고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3) 『○○○ 수주 독식 논란의 중심, 주○○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국책 과제를 독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국책과제 수주 특혜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837, 838	(각 손해청구) 김○○ 對 TV조선 ⁽⁸³⁷⁾ , 인터넷 TV조선 ⁽⁸³⁸⁾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너는 종놈이다”...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갑질』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5월 27일자, 인터넷 TV조선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고급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갑질을 보도하면서, 파트타임 노무자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너는 종놈이다”...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갑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삭제 (TV조선 2016년 월 일자, 인터넷 TV조선 6월 13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839·840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조 정 대 상	『윤○○의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과거 문제를 일으킨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윤○○의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삭제 (2016년 7월 6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841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 ○○대병원 경영 악화, 존폐 기로에 위기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경영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대병원 경영 악화, 존폐 기로에 ‘위기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2·843	(정정·손배청구) 송○○ 외 1인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적당한 합의금 받고 나가라』 건물주 ‘횡포’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물주인 신청인들이 세입자인 카페 주인을 내쫓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주 애월 더 ○○”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4·845	(반론·손배청구) 정성호 對 수도권중앙신문
조 정 대 상	(1) 『더민주 정성호 국회의원 사법기관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정치의회면) (2) 『정성호 의원 국감장 증인 업체 아파트로 이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정치의회면) (3) 『양주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성호 의원 재산이 어떻게 늘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6일자 정치의회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846, 847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세계일보 ⁽⁸⁴⁶⁾ , 세계닷컴 ⁽⁸⁴⁷⁾
조 정 대 상	『일 못하는 경호실·혁신처 ... 부처 성과 평가서 ‘꼴찌』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6월 6일자 1면, 세계닷컴 6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2015년 재정 투자 성과 평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통령경호실 성과평가’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7월 4일자 6면, 세계닷컴 7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8, 849	(각 정정청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對 온라인 중앙일보⁽⁸⁴⁸⁾, 중앙일보⁽⁸⁴⁹⁾
조 정 대 상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6월 3일자 종합1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와의 합의 때문에 서울지하철공사가 안전업무 외주사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6월 3일자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7월 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5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52·853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우리동네 좋은치과’의 굴욕』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9일자 치과계는지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추진한 상표 등록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
2016서울조정 854·855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대 “센” 총장이 온다 ... 설립자·부인, 이사장-총장 “대물림”』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홈면) (2) 『4년제 보다 등록금 비싼 ○○○○대, 성적 장학금 일방 폐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 소유 빌딩이 경매처분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856	(정정청구) (재) ○○병원 ○○○○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1) 『1.총회 산하기관 재산들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6일자 뉴스와보도면) (2) 『2.전주 ○○병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뉴스와보도면) (3) 『3. 총회 회의록을 통해 본 산하기관의 사유화 과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뉴스와보도면) (4) 『4. ○○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자 뉴스와보도면) (5) 『5. 절차법 위반하면 그 법은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뉴스와보도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관개정을 하면서 총회가 아닌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신청인 병원이 총회 재산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57·858	(정정·손배청구) 노○○ 외 17인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이○○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교계선교면)
신청인 주장	교회 장로인 신청인들이 교회 담임 목사의 해임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교계선교면)

2016서울조정 859·860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 저가 휴대폰 판매 A/S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급하는 해외 저가 휴대폰에 대해 A/S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861	(반론청구) (주) ○○○ 對 프레스맨
조 정 대 상	『[○○○의 실체와 허상 ③] “누구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환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엔터프라이즈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프랜차이즈 전환과 관련해 반대측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의 실체와 허상 ③] “누구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환인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부분 반론 삽입 (2016년 6월 20일자 엔터프라이즈리포트면)
2016서울조정 862	(정정청구) ○○○○○○ (주)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1)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조선 출혈 경쟁불러 조선업계 독 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종합3면) (2) 『血稅 땀질처방으로 한계 ... ‘과감한 수술’』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종합3면) (3) 『건조 진행률 조작 의혹 ... ○○조선 ‘깜깜이 회계’가 화 키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경제4면) (4) 『○○조선 - 산은 ‘비리 은폐’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종합면) (5) 『부실에 눈감은 ‘낙하산 감사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종합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저가수주 경쟁을 주도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63	(반론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제2 실손 보험 될라 ...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방보험 관련 진료비 체계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제2 실손 보험 될라 ...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6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64, 865	(각 정정청구) (재) ○○○○재단 對 한국일보 ⁽⁸⁶⁴⁾ , 인터넷 한국일보 ⁽⁸⁶⁵⁾
조 정 대 상	『청년희망 펀드 9개월 ... 희망이 시들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6월 8일자 1면, 3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보도의 진실성 인정)

2016서울조정 866, 867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문화일보 ⁽⁸⁶⁶⁾ , 인터넷 문화일보 ⁽⁸⁶⁷⁾
조 정 대 상	(1) 『조선업 防産인력 구조조정 신중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5월 19일자 종합1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19일자 경제면) (2) 『‘防産’ 변수 ... 인력 감축 반대 구실될 수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경제7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사의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868	(정정청구) 허○○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보험금을 노린 ‘검은 공생’ ... “진료도 없이 가짜 환자 유치”』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실손보험을 노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서울조정 869·870	(정정·손배청구) 황○○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나경원 딸 대입특혜 기자, “일부 잘못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며 무죄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법정에서 나경원 의원 딸의 대입 특혜 의혹 보도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나경원 딸 대입특혜 보도 기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71~876	(각 정정·손배청구) 황○○ 對 경향신문 ^(871·872) , 인터넷 경향신문 ^(873·874) , 민중의 소리 ^(875·87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도둑 출근 황○○ 특조위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쫓겨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6일자 사회면) 민중의소리 : 『도둑 출근 황○○ 특조위 ○○○장, 사무실서 쫓겨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인 신청인이 도둑 출근 후 세월호 유족의 항의로 쫓겨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중의소리/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황○○ 특조위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쫓겨나』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도둑 출근’ 을 삭제 (2016년 6월 29일자 사회면) 민중의소리 : 『황○○ 특조위 부위원장, 사무실서 쫓겨나』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도둑 출근’ 을 삭제 (2016년 7월 15 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77	(정정청구) (재) 국제방송교류재단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정리뉴스] ‘민폐 사장’ 방석호·아리랑TV 사건 총정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4일자 향이네면)
신청인 주장	아리랑TV가 외주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중의소리/내용 : 정정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리뉴스] ‘민폐 사장’ 방석호·아리랑TV 사건 총정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향이네면)

2016서울조정 878·879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당신의 반려견, 어떻게 분양받으셨습니까?』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애견샵 주인인 신청인이 농장견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80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 ○○구 장애인협회 부당이득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모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신청인에게 불법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는 협회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구 장애인협회 부당이득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881·882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2년이나 수장된 세월호 진실 ... 아직도 찻값은 치러지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7일자 사회면) (2) 『책임지지 않은 ‘책임자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사회면) (3) 『참사는 오래 지속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4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실 소유주로 증축을 지시하고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83	(정정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배○○ 신부” 세월호, 천민 자본주의에 찔린 물고기』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를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배○○ 신부” 세월호, 천민 자본주의에 찔린 물고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6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84~887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지하철노동조합 對 한경닷컴 ^(884·885) , 아시아경제닷컴 ^(886·88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4일자 사설면) • 아시아경제닷컴 : (1) 『서울 지하철 ‘메피아’ 탄생의 기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2) 『서울메트로 ‘메피아’ 관련 노사 합의 ‘증거’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사회면) (3) 『[실감현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지하철노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사측과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 알선 및 처우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한경닷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아시아경제닷컴)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6월 3일자 ‘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하의 기사 (한경닷컴 2016년 7월 7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88~891	(각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인터넷 태권도신문 ^(888·889) , 무카스뉴스 ^(890·89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태권도신문 : (1) 『○○○ 이사장, 임기 만료 하루 앞두고 토사구팽?』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이슈면) (2) 『악취 찌는 저질 코미디에 점령된 국기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기자수첩면) • 무카스뉴스 : 『“똥물”로 얼룩진 국기원 ... 임시 이사장 아수라장 ‘파행’』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의 임시 이사회 개최가 파행으로 끝난 것이 신임 원장 측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92	(손배청구) 임○○ 외 5인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퀴어문화축제 속 기독교인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퀴어문화 축제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퀴어문화축제 속 기독교인들’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93~896	(각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중앙일보 ^(893·894) , 온라인 중앙일보 ^(895·896)
조 정 대 상	『경남교육감 측근, 교육청과 17건 무더기 계약 논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5월 27일자 21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남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이행)
2016서울조정 897·898	(정정·손배청구) 오○○ 對 무카스뉴스
조 정 대 상	『태권도 성지 국기원에서 펼쳐진 ‘똥물 이사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긴급호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임시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99·900, 930·931	(각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노컷뉴스 ^(899·900) , 현대종교 ^(930·93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교회”는 ○○○와 같은 이단』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문화면) • 현대종교 : 『○○○교회 피해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호 39면~4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고, 가정 파괴를 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노컷뉴스/사유 : 기사수정) • 조정불성립결정 (현대종교)
이 행 결 과	『“○○○교회”는 ○○○와 같은 이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보도 삽입 (노컷뉴스 2016년 7월 19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901, 1043	(손배, 정정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풍문으로들었소 프로그램 『오○○님의 사회활동』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머니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방송으로 가족사가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50만원 - 동의 후 금액지급)
2016서울조정 902	(정정청구) ○○○○ ○○○○○○○○연대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어축제에서 성찬 집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퀴어문화 축제에서 성찬 집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퀴어축제에서 성찬 집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03·904, 905	(정정·손배청구) 최○○ ^(903·904) 對 KBS-1TV (손배청구) 최○○ ⁽⁹⁰⁵⁾
조 정 대 상	KBS스페셜 프로그램 『저성장의 뒷』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 75만원 지급)
2016서울조정 906	(정정청구) ○○○○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현관 담벼락 ... ‘감옥’ 만든 건설사』 제하의 보도 (2016년 월 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토지분쟁 관련 사건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07·908	(정정·손배청구) 이○○ 對 현대종교
조 정 대 상	『○○○교회 피해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호 39면~44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 신자인 신청인의 이혼 소송 등 가정사와 관련해 남편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09~916	(각 정정청구) 이○○ ⁽⁹⁰⁹⁾ , 오○○ ⁽⁹¹⁰⁾ , 김○○ ^(911~913) , 정○○ ⁽⁹¹⁴⁾ , 박○○ ^(915,916) 對 연합뉴스 ^(909~911,914,916) , 조선닷컴 ⁽⁹¹²⁾ , SBS 콘텐츠허브 ^(913,91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뒤늦게 성차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군인에 공짜로 줬더니 ... 너무 뜨거운 커피 한 잔』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뒤늦게 성차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스타벅스가 진행중인 군인무료커피 증정행사를 두고 여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각 (연합뉴스, 조선닷컴/사유 : 당사자 부적격) • 취하 (SBS 콘텐츠허브/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17~92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917·918) , iMBC ^(919·920)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제철 고사리 도둑들 고사리밭에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19일자, iMBC 5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귀농한 신청인이 고소 남발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23	(정정청구) 이태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리베이트 계약’ 당시 회계 책임자는 박선숙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국민의당 광고계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삽입 및 원 기사 제목 및 부제목 수정 (2016년 7월 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924, 925	(각 정정청구) 임○○ 외 2인 對 인터넷 MBN ⁽⁹²⁴⁾ , MBN ⁽⁹²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빛나간 의리 동료 식당에서만 회식』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의장님의 빛나간 의리”... 의정운영비 ‘쌈짓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및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관악구 의회가 전체회식을 할 때마다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빛나간 의리, 동료 식당에서만 회식’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7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26, 927	(각 정정청구) 이○○ 對 아시아경제 ⁽⁹²⁶⁾ , 아시아경제닷컴 ⁽⁹²⁷⁾
조 정 대 상	(1) 『정부 연구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3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3일자 정치면) (2) 『이○○ 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삼창에 순간 얼어붙은 워크숍』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4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4일자 정치면) (3) 『은폐·내부입단속 … ○○의 황당 “오리발”』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4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후속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 이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928, 969	(각 반론청구) (의) ○○병원 유지재단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⁹²⁸⁾ , 민중의소리 ⁽⁹⁶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돈 안 되는 환자 내쫓고 항의하는 간호사는 해고 - ○○정신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5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환자복부터 반찬·온수까지 … 돈 안되는 환자 차별하는 ○○정신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병동에서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29	(정정청구) 백○○ 對 LPG로컬파워뉴스
조 정 대 상	『경찰이 고소 취하 증용 … 사법 독립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지인의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게 취하를 증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경찰이 고소 취하 증용 … 사법독립 걸림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46	(정정청구) (사) ○○○○○○○○○○ 對 MBC-TV
조 정 대 상	무한도전 프로그램 『여름 휴가 무계획』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는 것처럼 방송해 수돗물에 관한 불신을 조장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947	(정정청구) ○○○○○○○○○○○○○교회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세습 반대하자 출교로 응답한 교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출교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6서울조정 948~951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경향신문 ⁽⁹⁴⁸⁻⁹⁴⁹⁾ , 일요시사 ⁽⁹⁵⁰⁻⁹⁵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MB 동서’ 신○○ ○○산업 회장 검찰 ‘300억원 횡령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8면) 일요시사 : 『잘도 피했던 대어 드디어 낚였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지위를 이용해 3백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신○○ ○○산업 회장,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사회면) 일요시사 : 『신○○ ○○산업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1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952·953	(정정·손배청구) ○○○○식품 (주)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1) 『○○○○ 상장에 전국이 들썩 “뭘 일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경제/IT면) (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 상장』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5일자 경제/IT면) (3) 『영업권만 가진 회사(?)의 단독상장은 안 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경제/IT면) (4) 『“○○○○ 식품(주)은 ○○○○(주) 자체이자 본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경제/IT면) (5) 『“○○○○ 식품이 ○○○○냐? 아니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경제/IT면) 외 2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천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법적 분쟁중이어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954·955, 995	(정정·손배청구 ^(954·955) , 정정청구 ⁽⁹⁹⁵⁾ (주) ○○○○○○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中 ‘○○버터칩’ 인기에 짝퉁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8일자 월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제조판매하는 과자가 짝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⁹⁹⁵⁾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취하 ^(954·955)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中 판매 짝퉁 ‘○○버터칩’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월드면)
2016서울조정 956~959	(각 정정·손배청구) 고○○ 對 주간침례신문 ^(956·957) ,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958·959)
조 정 대 상	(1) 『총회 규약대로 집행하며』 제하의 기사 (주간침례신문 2016년 6월 4일자 1면,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6월 2일자 총회면) (2) 『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 규약을 지켜야 된다』 제하의 기사 (주간침례신문 2016년 6월 18일자 1면,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6월 15일자 총회면)
신청인 주장	신학대학 교수인 신청인의 비위 및 전횡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60, 961	(정정, 손해청구) 평택경찰서 ⁽⁹⁶⁰⁾ , 박○○ 외 6인 ⁽⁹⁶¹⁾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평택경찰서, 수사관 교체 의혹에 이어 ‘불공정한 수사 논란’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평택에서 발생한 납치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경찰서가 수사관을 교체하고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62~964	(정정·반론·손배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시사타임즈
조 정 대 상	『시민단체 사청련, “○○여대 김모 이사장, 교육부 감사” 강력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의 이사장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965~968	(각 정정·손배청구) 팽○○ 對 MBC-TV ^(965·966) , iMBC ^(967·968)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조강지처의 반격 내연녀 위자로 소송』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29일자, iMBC 5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보도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미용실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970·971, 975·976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국민일보 ^(970·971) , 국민일보 ^(975·976)
조 정 대 상	『軍 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 신분 노출하며 동성 파트너 찾는 군인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6년 7월 1일자 29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3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현역 군인들이 이용하는 게이 전용 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미 전역한 신청인을 사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972·973	(정정·손배청구) 송○○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5일자 사회면) (2)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회면) (3) 『학교 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4) 『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학교 규정도 '손 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사과,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74	(정정청구) (주) ○○○○○○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대형 외식업체서 일하던 청년 "자살" ...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장시간 근로 및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형 외식업체 청년직원 자살 관련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3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977·978, 1021·1022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라포리시안
조 정 대 상	(1) 『[기고] 지난주 약제급여 평가위 회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오피니언면) (2) 『[기고] 심평원, 문제를 방치하다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오피니언면) (3) 『[기고]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심평원은 모든 위원회를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오피니언면) (4) 『[기고] 심평원과 식약처는 ‘감질’하는 위원회 모두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7일자 오피니언면) (5) 『[기고] 정말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약가산정 및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박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979, 980	(각 반론청구) ○○○○○고등학교 對 KBS-1TV ⁽⁹⁷⁹⁾ , KBS미디어 ⁽⁹⁸⁰⁾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비리고발교사” 파면 ... “이사진 자격박탈”』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6월 28일자, KBS미디어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내부비리 고발 교사를 파면하고, 교육청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진 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뉴스7 프로그램 『교육청 고강도 제재에 학교법인 “법적 대응”』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21일자)

2016서울조정 981, 982	(각 정정청구) (사) ○○ 對 동아일보 ⁽⁹⁸¹⁾ , 동아닷컴 ⁽⁹⁸²⁾
조 정 대 상	『청년수당 위탁 기관에 박원순 측근 업체 선정』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7월 5일자 A14면, 동아닷컴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7월 21일자 A32면, 동아닷컴 7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83~98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시사N ⁽⁹⁸³⁻⁹⁸⁴⁾ , 시사N Live ⁽⁹⁸⁵⁻⁹⁸⁶⁾
조 정 대 상	『‘유혹할까요 고백할까요’』 제하의 기사 (시사N 2016년 6월 13일자 문화면, 시사N Live 6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결혼생활이나 자녀 양육기간에 자신이 무기력했다고 고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사N 2016년 7월 23일자 9면)

2016서울조정 987-988	(정정·손배청구) 배○○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대중음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발표한 곡이 질 낮고 성의 없는 음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대중음악면)

2016서울조정 989	(손배청구) 오○○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원격 진료하는 오○○ 공중보건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포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 및 성명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990, 998	(각 반론청구) 교육부 對 매일경제 ⁽⁹⁹⁰⁾ , 매경닷컴 ⁽⁹⁹⁸⁾
조 정 대 상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7월 2일자 A2면, 매경닷컴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유학기제가 일선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행복한 수업 ... 교실에 활력』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8월 10일자 A25면, 매경닷컴 8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91, 992	(각 정정청구) ○○○○○○ ○○○○○회 對 MBC-TV ⁽⁹⁹¹⁾ , iMBC ⁽⁹⁹²⁾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천주교 재단 운영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0일자, iMBC 6월 10일자 사회면) (2) 뉴스24,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천주교 재단 운영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1일자, iMBC 6월 1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93·994	(추후·손배청구) 정○○ 對 MBN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입찰 비리』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고, 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국 최대」아파트 입찰 비리 잡음』 관련 반론 및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8월 24일자)

2016서울조정 996	(반론청구) 박○○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조교 선생님들이 아프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보도만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2면)

2016서울조정 997	(정정청구) (사) ○○○○○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속 모르는 한약 속타는 소비자』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일자)
신청인 주장	급성 독성간염 원인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한약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999	(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알리시아 비칸데르, 팬들과 첫 인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해외 유명 연예인의 내한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000	(정정청구) ○○○○식품 (주)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제과 신○○ 대표 vs ○○○호텔 김○○, ‘○○버터칩’ 이름 누가 지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 제품이 제품명 선정 시 후보작에 없던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02·1003	(정정·손배청구) ○○산업 (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중앙분리대 단부시설 사고나면 흥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국도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단부시설이 오히려 사고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5시뉴스 프로그램 『‘단부시설’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5일자)

2016서울조정 1004·1005	(정정·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1) 『‘한방 음악치료’ 정부 지원 논란 … 복지부는 “홍보비 지원일 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의료면) (2) 『정부가 권장한 한방 음악치료, 알고 보니 신 의료기술로 불인정』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정책면) (3) 『근거 없는 한방 음악치료에 정부 지원 왜 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4) 『외국인 대상 ‘한방 음악치료’ 지원 사업 결국 철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7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발한 한방 음악치료를 다른 사람이 개발했으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의료면)
2016서울조정 1006	(정정청구) ○○○○아파트대표회의 對 KBS-2TV
조 정 대 상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아파트, 갑질의 횡포』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파트, 갑질의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6년 8월 10일자 아침이좋다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1007·1008	(정정·손배청구) 신○○ 對 뉴스21
조 정 대 상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불법 증차를 하였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지역뉴스면)

2016서울조정 1009, 1010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전국아파트신문 ⁽¹⁰⁰⁹⁾ , 인터넷 전국아파트신문 ⁽¹⁰¹⁰⁾
조 정 대 상	『사라진 변전소 보상금, 동네 발각』 제하의 기사 (전국아파트신문 2016년 6월 1일자 1면, 인터넷 전국아파트신문 5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변전소 설치에 대한 보상금 확인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11~101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현대원 對 경향신문 ^(1011~1013) , 인터넷 경향신문 ^(1014~1016)
조 정 대 상	(1) 『현대원 박근혜 후보 홍보영상 지시 ... 학부생 동원, 제작비로 5만원 지급』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3일자 사회면) (2) 『현대원 수석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방청수업 불참 사유 써내라고 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15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5일자 사회면) (3) 『현대원의 학교기업, 아내 제자들 채용』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20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수 재직 시절 박근혜 대선후보 동영상 제작을 학생들에게 지시하거나 동원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자 6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17·1018	(정정·손배청구) 나○○ 對 인터넷 종교와진리
조 정 대 상	『전주 ○○○○○○○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 천국 지옥 간증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이단사건실화면)
신청인 주장	담임 목사인 신청인이 영매, 강신술 등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장하였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전주 ○○○○○○○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 천국 지옥 간증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이단사건실화면)

2016서울조정 1019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병원 청소 노동자 휴게실 보안 요원이 막아선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보안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서울조정 1020	(손배청구) 오○○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물총 축제에 참가한 사진 (2016년 7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물총 축제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23	(정정청구) 외교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결정 강행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조기 결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외교부 사드반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024, 1025	(각 정정청구) ○○○○가스 (주) 對 가스신문 ⁽¹⁰²⁴⁾ , 인터넷 가스신문 ⁽¹⁰²⁵⁾
조 정 대 상	『대학 실험실 무허가 독성가스 판매 ‘물의를’』 제하의 기사 (가스신문 2016년 6월 22일자 9면, 인터넷 가스신문 6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실험실 등에 무허가 독성가스를 납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026·1027	(정정·손배청구) (재) 자유경제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개 돼지”... 자유경제원 “귀족 엘리트주의”와 상통』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최한 토론회의 내용을 귀족 엘리트주의와 상통한다고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자유경제원 귀족 엘리트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028, 1029	(각 정정청구) (주) ○○○○○○ 對 한겨레⁽¹⁰²⁸⁾, 인터넷 한겨레⁽¹⁰²⁹⁾
조 정 대 상	(1) 『하루 11시간 이상 ‘실습’ ... 또 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6월 16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5일자 사회면) (2) 『또 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제하의 사설 (한겨레 2016년 6월 16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5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장시간 근로 및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및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2면) • 인터넷 한겨레 : 『또 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제하의 사설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2일자 사설면)
2016서울조정 1030	(정정청구) 기상청 對 레드카펫코리아
조 정 대 상	(1) 『기상청, 550억원짜리 슈퍼컴 4호기, 스위스는 20억원에 구입, 혈세 낭비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홈페이지) (2) 『기상청, “스위스가 20억에 구입한 슈퍼컴 550억원 구매 사실 철저히 은폐하라” 거짓 자료 배포,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기상청이 기상 관측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비슷한 성능의 다른 기종보다 수십배 비싸게 구입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상청 슈퍼컴 도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1031	(정정청구) ○○○○○○○○ ○○○○협의회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1) 『‘성폭력’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2)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들, 보호시설 기피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성폭력’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시설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8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32	(손배청구) 최○○ 對 티브이데일리
조 정 대 상	(1) 『도 넘은 엑소 팬들, ‘차도 위에서 광란의 질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연예면) (2) 『‘최악의 팬심’ 엑소 팬들, 무질서로 공항 점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아이돌 그룹의 공항출국과 관련한 팬들의 무질서한 행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33·1034, 1039·1040	(각 정정·손배청구) 우병우 對 조선일보 ^(1033·1034) , 경향신문 ^(1039·104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1면) 외 2건 경향신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 ‘몰래 변론’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1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청인이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고, 현직 검사장의 거액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으며, 변호사 시절 법조 브로커와 어울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035·1036	(정정·손배청구) 반○○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단독] 백종원 식당 식사 후 배탈 미모의 여자 톱스타 6백만원 요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배우인 신청인이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종원 식당 여배우 합의금 요구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37·1038	(정정·손배청구) 진○○ 對 KBS-2TV
조 정 대 상	여유만만 프로그램 『김밥 하나로 연매출 10억원?』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음 개발한 달걀말이 김밥을 다른 사람이 원조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여유만만 프로그램 『옆집 부자들 비법의 모든 것! 4탄』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1일자)

2016서울조정 1041, 104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서울신문 ⁽¹⁰⁴¹⁾ , 인터넷 서울신문 ⁽¹⁰⁴²⁾
조 정 대 상	『메피아 부추긴 매킨지 용역 보고서 서울시, 안전 눈 감고 비용절감 지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6년 6월 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6월 8일자 정책행정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보낸 외주 업무 효율화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안전강화보다는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6년 8월 10일자 8면, 인터넷 서울신문 8월 9일자 정책행정면)

2016서울조정 1044~1047	(각 조정·손배청구) 김한표 對 KBS-1TV ^(1044·1045) , KBS미디어 ^(1046·1047)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호통·막말·고압 질의 ... 20대 국회 ‘구태’ 여전』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3일자, KBS미디어 7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호통·막말·고압 질의 ... 20대 국회 ‘구태’ 여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KBS-1TV 2016년 월 일자, KBS미디어 8월 2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048~1050	(각 정정청구) ○○○ (주) 對 SBS-TV ⁽¹⁰⁴⁸⁾ , SBS 콘텐츠허브 ⁽¹⁰⁴⁹⁾ , 다음 ⁽¹⁰⁵⁰⁾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왕자 출신 스님 등신불이라더니 ... 기막힌 사기극』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7월 9일자, SBS 콘텐츠허브, 다음 7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획하여 전시한 모 스님의 등신불이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 취하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51, 1052	(각 반론청구) 신○○ 對 중앙일보 ⁽¹⁰⁵¹⁾ , 온라인 중앙일보 ⁽¹⁰⁵²⁾
조 정 대 상	『산은, 대우조선에 낙하산 인사 감사원 지적 뭉개고 강행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6월 20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해임사유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8월 16일자 종합면, 온라인 중앙일보 8월 16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053	(정정청구) 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정부보조금 부당 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국제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교수의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 담당수사관인 신청인이 보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후속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단독면)

2016서울조정 1054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유명 돌침대 상표 도용 업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유명 돌침대 상표 도용 업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7월 22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055·1056	(정정·손배청구) 권 ○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황제 노역’ 분노 확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황제 노역을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057·1058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청담동 백만장자 둘러싼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사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59~1061	(정정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한겨레⁽¹⁰⁵⁹⁾ (정정·반론청구) 인터넷 일요서울^(1060·106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법인자금 맘대로 쓴 ○○여대 상임이사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법원장 출신 ○○여대 이사장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인사전횡과 재정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일요서울/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법인자금 맘대로 쓴 ○○여대 상임이사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인터넷 한겨레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62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모순에 빠진 방사청, 불평등하지만 변경 못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산 K2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 기준이 부품마다 제각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K2 전차 변속기 내구도 검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63	(정정청구) ○○○○○의사회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성형·미용 의약품 중국인들에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원장 등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형·미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으로 검거된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064~1073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조선닷컴 ^(1064·1065) , 동아닷컴 ^(1066·1067) , 인터넷 한국일보 ^(1068·1069) , 연합뉴스 ^(1070·1071) , KBS미디어 ^(1072·10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닷컴 : 『개그맨 유○○가 세운 빙수 브랜드 ‘○○○’, 매출액 부풀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뉴스면) 동아닷컴 : 『개그맨 유○○가 설립한 빙수 회사 ‘○○’ 불공정 행위로 과태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경제면) 인터넷 한국일보 : 『『개그맨 유○○ 설립 빙수 프랜차이즈, 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뉴스면) 연합뉴스 : 『매출 뺑뺑기 허위 광고 ‘○○○’에 과태료 500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최신기사면) KBS미디어 : 『매출 뺑뺑기 허위 광고 ‘○○○’에 과태료 500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사업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취하 (조선닷컴, 인터넷 한국일보, 연합뉴스, KBS미디어/사유 : 자진취하) 취하 (동아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74, 1075	(각 손배청구) 김○○ 對 채널A ⁽¹⁰⁷⁴⁾ , 인터넷 채널A ⁽¹⁰⁷⁵⁾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 버거’ 發 ... 햄버거 전쟁 승자는?』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햄버거 가게에 있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버거’ 發, 햄버거 전쟁 승자는?』 제하의 기사 중 동영상 삭제 (2016년 7월 2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76, 1077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한빛자산관리대부 등 강제집행 남발로 궁핍한 채무자 피 빨아 먹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0일자 단독/탐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강제집행을 남발하고 횡포를 부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78, 1079	(각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MBC-TV ⁽¹⁰⁷⁸⁾ , iMBC ⁽¹⁰⁷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식약처 국민 건강은 뒷전, ‘비리·부패’ 몸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31일자, iMBC 5월 3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식약처가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식약처 국민 건강은 뒷전, ‘비리·부패’ 몸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iMBC 8월 26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080~1085	(각 정정·손배청구) 장○○ 외 1인 對 조세금융신문 ⁽¹⁰⁸⁰⁻¹⁰⁸¹⁾ , 인터넷 비즈한국 ⁽¹⁰⁸²⁻¹⁰⁸³⁾ , 인터넷 MBN ⁽¹⁰⁸⁴⁻¹⁰⁸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금융신문 : 『신○○ 딸들과 롯데 마트 갑질에 회사 부도나고 도망자 신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산업기업면) • 인터넷 비즈한국 : 『신○○ 딸들 횡포에 100억 원대 손실 도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기업면) • 인터넷 MBN : 『신○○ 자녀기업 ‘○○○’ 100억 떼먹고 외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횡포로 업체가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도산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86~108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1086·1087) , 한겨레 ^(1088·108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성주 외부세력 부각’ KBS 보도지침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미디어면) • 한겨레 : 『“성주 외부세력 개입 키워라” 사드 ‘내부지침’에 들끓는 KBS』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시위 보도시 KBS내에 외부세력 개입을 부각시키라는 보도 지침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미디어면) • 한겨레 : 『‘성주 외부세력 개입’ 관련 KBS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090	(정정청구) 신○○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대학교 학생징계 해제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와보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는데도 무죄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 교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학원/신학대학면)

2016서울조정 1091	(반론청구) ○○축산업협동조합 외 1인 對 시사1
조 정 대 상	『○○ 축협 상무 전모씨 자살 사건의 의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의 비리 목인 스트레스로 직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축협 상무 전모씨 자살 사건의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92·1093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폭행 시비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폭행사건에서 신청인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양주 주차장 폭행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3일자)

2016서울조정 1094	(정정청구) (주) ○○○ 對 Kitimes.com
조 정 대 상	『○○○, 노골적 ‘찍어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부서장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직을 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99	(손배청구) 송○○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음란동영상 때문에 일가족 자살(?)”... 군산괴담(怪談), 실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음란동영상 때문에 일가족 자살(?)” ... 군산괴담(怪談), 실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8월 4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100, 1101	(각 반론청구) (주) ○○○○○○ 對 중앙일보 ⁽¹¹⁰⁰⁾ , 온라인 중앙일보 ⁽¹¹⁰¹⁾
조 정 대 상	『보청기 10배 비싸도 성능은 비슷』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7월 25일자 B5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2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보청기가 가장 고가임에도 성능은 다른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보청기 10배 비싸도 성능은 비슷』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8월 16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102, 1155, 1156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전자신문 ⁽¹¹⁰²⁾ (각 반론청구) 전자신문 ⁽¹¹⁵⁵⁾ , 전자신문 인터넷 ⁽¹¹⁵⁶⁾
조 정 대 상	(1) 『監査 소나기만 피하려는 ‘不法 불감증’ 출연연』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7월 19일자 6면) (2) 『노는 연구원, 시간 때우는 연구자』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7월 18일자 종합면, 전자신문 인터넷 7월 1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징계 규정 통일이 신청인 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기각 (반론청구/ 사유 : 당사자 부적격)
이 행 결 과	『“출연연 징계 규정 가이드라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8월 26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1103	(손배청구) 흥○○ 對 MBC-TV
조 정 대 상	(1)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창원 모텔서 태아 시신 발견, 유기 후 옆 방에 숨은 생모』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버려지는 갓난 아이들, 어디로 가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태아 유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1104, 1105	(각 정정청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對 아시아타임즈 ⁽¹¹⁰⁴⁾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¹¹⁰⁵⁾
조 정 대 상	『광주시 남한산성 음식점소 ‘편파 단속’ 논란』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6년 7월 21일자 16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월 2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유지가 운영하는 음식점소를 제외하는 등 편파 단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06	(정정청구) 원○○ 외 2인 對 메디컬투데이
조 정 대 상	『‘3년간 105억원 탈세’ ○○○ 성형외과 원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의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병원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00억 대 탈세 J성형외과 원장 구속 ... 진료 차트 삭제에 이중 장부까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익명처리 (2016년 8월 8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107	(정정청구) 정청래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의 낯뜨거운 ‘봉하마을 순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당대표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6일자 A2면)

2016서울조정 1108	(손배청구) 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탈북 여성 중매업체' 남남북녀는 없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여성 중매업체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모습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다시보기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109	(반론청구) ○○○○ 마을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한 노인의 주택을 무단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반론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110	(손배청구) 백○○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부당 이득 월 800만원 ... 주유소 '정량 미달' 사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주유소들의 정량 미달 주유 사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주유소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111~1114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JTBC ^(1111·1112) , 인터넷 JTBC ^(1113·1114)
조 정 대 상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부회의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사드 보도와 관련하여 KBS 내에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6년 9월 27일자)

2016서울조정 1115	(정정청구) 박○○ 對 데일리메디
조 정 대 상	『얼굴 주름 개선용 허가된 필러가 생식기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 주름개선용 필러를 생식기 주사용으로 허가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16	(손배청구) 강○○ 對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梨大 게시판에 지방대·전문대 비하 일부 글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학교내 게시판 아이디가 보도의 캡처화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17, 1118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아리랑TV, 허위 제안서 받고 외주제작사에 12억원 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사회일반면) (2)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십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3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방송사에 허위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19	(정정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강남구청 ‘덧글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20·1121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21 프로그램 『친환경 인증 속여 학교 등에 콩나물 공급』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입산 콩을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합의사항 미이행

2016서울조정 1122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세종시, 민간 전원주택 진입로에 혈세 40억원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최신기사면) (2) 『민간 전원주택 진입로에 세종시 혈세 40억원 ‘평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추진중인 장군면 내 도로사업이 민간업체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112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트래블데일리
조 정 대 상	『○○○협, 안 보여주나 못 보여주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출금 및 위탁금 사용 등 자금 흐름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안 보여주나 못 보여주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124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치렀다’고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을 치른 업체인 듯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25	(손배청구) (주) ○○○○○○○○○○ 對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돈벌이 전략한 자가혈 주사 ‘경고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자가혈 주사 시술 관련 기사에 신청인 회사가 만든 제품의 삽화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돈벌이 전략한 자가혈 주사 ‘경고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8일자 IT·과학면)

2016서울조정 1126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헬조선과 게임의 법칙 - 개천에서 용이 날까용?』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의한 기획 의도와 다르게 방송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SBS스페셜 프로그램 『헬조선과 게임의 법칙 - 개천에서 용이 날까용?』 제하의 다시보기 영상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9월 8일자)

2016서울조정 1127·1128	(정정·손배청구) 서○○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엄마의 동거인 누가 장독대 밑에 묻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살해된 신청인의 부친이 생전에 농작물과 가축을 편취했다는 등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129	(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구 장애인 협회 내부 갈등 폭로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모 기관장에 임명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30, 1131	(각 정정청구) 최○○ 對 tvN ⁽¹¹³⁰⁾ , 인터넷 tvN ⁽¹¹³¹⁾
조 정 대 상	수요미식회 프로그램 『77회 아이스크림』 제하의 보도 (tvN 2016년 8월 3일자, 인터넷 tvN 8월 4일자 수요미식회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하는 아이스크림의 주성분이 함량 미달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안녕하세요. 수요미식회 제작진입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N 8월 24일자 시청자 게시판) 및 해당 동영상 중 관련 멘트 및 자막 삭제

2016서울조정 1132~1147	(손배청구) 우○○ 외 1인 對 MBN ⁽¹¹³²⁾ , 인터넷 MBN ⁽¹¹³³⁾ , SBS-TV ⁽¹¹³⁴⁾ , SBS 콘텐츠허브 ⁽¹¹³⁵⁾ , TV조선 ⁽¹¹³⁶⁾ , 인터넷 TV조선 ⁽¹¹³⁷⁾ , YTN ⁽¹¹³⁸⁾ , 인터넷 YTN ⁽¹¹³⁹⁾ , 채널A ⁽¹¹⁴⁰⁾ , 인터넷 채널A ⁽¹¹⁴¹⁾ , 연합뉴스TV ⁽¹¹⁴²⁾ , 연합뉴스TV 인터넷 ⁽¹¹⁴³⁾ , 뉴스1 코리아 ⁽¹¹⁴⁴⁾ , 뉴시스 ⁽¹¹⁴⁵⁾ , e머니투데이 ⁽¹¹⁴⁶⁾ , 민중의소리 ⁽¹¹⁴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프로그램 『모텔 화장실서 신생아 시신 발견 ... 산모 긴급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MBN 8월 8일자 사회면)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모텔서 출산 후 방치 ... 옆방서 식사하던 산모 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8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호텔서 아기 사체 ... 30대 女 영장 검토』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8일자 사건사고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서울 모텔서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 ... 30대 산모 영장 검토』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YTN 8월 8일자 사회면) • 채널A : 굿모닝A 프로그램 『호텔에 영아 시신 버린 엄마 ... 긴급 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14 프로그램 『호텔서 갓난아기 시신 발견 ... 경찰, 엄마 구속영장 방침』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8월 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도심 모텔서 아기 숨진채 발견 ... 산모 구속영장 검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7일자 사건사고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신청인의 호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 지급) • 각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인터넷/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SBS-TV, SBS 콘텐츠허브, YTN, 인터넷 YT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뉴시스, e머니투데이, 민중의소리/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도심 호텔에서 아기 숨진채 발견 ... 산모 구속영장 검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사건사고면) • 뉴시스 : 『서울 종로구 호텔에서 생후 4시간된 아이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건사고면) • e머니투데이 : 『호텔서 숨진 갓난아이 ... 엄마, 출산 후 지인들과 식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호텔서 생후 4시간된 아이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48, 1149	(각 정정청구) 육군 제○○○○부대 對 일요신문 ⁽¹¹⁴⁸⁾ , 인터넷 일요신문 ⁽¹¹⁴⁹⁾
조정 대상	『육군 군수사령부 흥부 패드·지혈 거즈 군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8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신문 8월 1일자 특종/단독면)
신청인 주장	육군 군수사령부가 구입한 흥부 패드와 지혈 거즈의 성능과 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군수사령부 흥부 패드·지혈 거즈 도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10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신문 9월 26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150~1153	(각 정정·손배청구) 흥○○ 對 SBS-TV ^(1150·1151) , SBS 콘텐츠허브 ^(1152·1153)
조 정 대 상	TV동물농장 프로그램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5월 15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강아지 번식장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애견 경매장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TV동물농장 프로그램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9월 25일자)

2016서울조정 1154	(정정청구) 민○○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대우조선 자금 민○○ 측에 유입 정황 檢,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의 불법 자금이 신청인에게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대우조선 자금 민○○측에 유입 정황 檢,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0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157~1166	(각 정정·손배청구) 설○○ 對 세계닷컴 ^(1157·1158) , 금융소비자뉴스 ^(1159·1160) , 인터넷 팝콘뉴스 ^(1161·1162)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1163·1164) , 시사위크 ^(1165·116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 20대 알바생, 70대 노인에 막말 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사회면) • 금융소비자뉴스 : 『○○○○ 20대 알바생이 노인에게 막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팝콘뉴스 : 『○○○○ 20대 직원 - 70대 노인 욕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편의점 직영점, 여직원 막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시사위크 : 『○○○○ 여직원 - 노인 욕설 다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신청인이 노인 고객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금융소비자뉴스, 인터넷 팝콘뉴스,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시사위크/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세계닷컴/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진상 고객 VS 짜증내는 알바생 ...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제하의 기사 중 기사제목 및 내용 일부 수정 (세계닷컴 2016년 8월 17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67	(손배청구) 주○○ 對 중앙일보
조정 대상	물총 축제에 참가한 사진 (2016년 7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물총축제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50만원)

2016서울조정 1168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정 대상	『상조뉴스, ○○○○○○○○ 광고덧가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상조/장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상조회사가 광고 발주를 대가로 신청인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69~1186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뉴스1코리아 ^(1169·1170) , YTN ^(1171·1172) , 인터넷 YTN ^(1173·1174) , 로이슈 ^(1175·1176) , e머니위크 ^(1177·1178)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1179·1180) , 월드투데이 ^(1181·1182) , 이슈타임 ^(1183·1184) , 티브이데일리 ^(1185·1186)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제자 학대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YTN : 신율의 시사탕탕 프로그램 『인분 교수, 감형됐는데 구속 집행정지 신청 왜?』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인분 교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사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슈 : 『인분 교수, 심신 미약·우울증 고통호소 ...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e머니에스 : 『“인분 교수” 수감 1년만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 우울증·심신미약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인분 교수,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심신미약·우울증 고통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제자 학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신청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가 심신미약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1코리아/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 동의, YTN/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4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 인터넷 YTN, 티브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로이슈, e머니워크,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월드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이슈타임⁽¹¹⁸³⁾/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동의) • 취하 (이슈타임⁽¹¹⁸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정정보도문] 제자 학대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 로이슈 :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 ...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에스 : 『“인분 교수”수감 1년만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 우울증·심신미약 호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생활문화면)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인분 교수,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심신미약·우울증 고통 호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인분 교수, 평소 사람에게 잔인한 짓 해보고 싶어해 ... 충격 일화 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87, 1209	(각 정정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더엘 ⁽¹¹⁸⁷⁾ , e머니투데이 ⁽¹²⁰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엘 : 『“전관예우 근절’ 시늬만 하는 법조 3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일자 법뉴스면) • e머니투데이 : 『“전관예우 근절’ 시늬만 하는 법조 3류 ... 국감 자료 제출조차 모두 반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88~1191	(각 정정·손배청구) ○○○○법인 외 1인 對 한겨레 ^(1188·1189) , 인터넷 한겨레 ^(1190·1191)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건설업계를 장악해 노조 파괴 및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법인 및 전○○ 노무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0일자 4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92	(정정청구) (주) ○○○○○○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1) 『‘정부 보증’ 기적의 화상 치료제, ‘물약’이라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칼럼면) (2) 『한 방에 70만원 세포 치료제, ‘뽕약’이라면 ...』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약가산정 및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93·1194	(정정·손배청구) 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강적들 프로그램 『넥슨의 라스트판, 위너는?』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신청인 주장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5백만원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조정 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강적들 프로그램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5일자)

2016서울조정 1195	(정정청구) ○○○○○○ 對 데일리 비즈온
조 정 대 상	『불에 녹는 고무발포 단열재가 소방 난연 제품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생산하는 단열재의 난연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96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브레이크 안 걸리고 멈추고 ... 째라인 사고 속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97~1200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1억짜리 쓰레기통, 열어보니 ...』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하자 덩어리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01	(정정청구) 시청자미디어재단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채용, 특혜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의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한 사실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02	(정정청구) 신○○ 외 1인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無성과에 검찰 수사까지 ... 고민 깊어지는 ‘민유성 사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최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고문이 뚜렷한 업무성과도 없고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無성과에 검찰 수사까지 ... 고민 깊어지는 ‘민유성 사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6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203~1206, 1228·1229, 1290·1291	(각 반론·손배청구) 한○○ 對 한겨레21^(1203·1204), 인터넷 한겨레21^(1205·1206) (각 정정·손배청구) 뉴스앤조이^(1228·1229,1290·129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21 : 『평화 없는 ○○박물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34면~37면, 인터넷 한겨레21 5월 16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 : (1) 『○○박물관에 지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8일자 사회면) <li style="padding-left: 20px;">(2) 『모두가 한○○ 교수 문제라고 하는데 ...』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사회면) <li style="padding-left: 20px;">(3) 『○○박물관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뉴스앤조이)
이 행 결 과	『<평화없는 ○○박물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21 2016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07, 1208	(각 정정청구) 심○○ 對 한겨레 ⁽¹²⁰⁷⁾ , 인터넷 한겨레 ⁽¹²⁰⁸⁾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무사인 신청인이 과거 모 컨설팅 회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노조 파고를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심○○ 노무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3일자 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10	(손배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강남구청 ‘댓글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1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또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자 속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12	(정정청구) (주) 문화방송 對 더팩트
조 정 대 상	(1) 『[「단독포착」 “외압 하차 논란” 최양락, 술과 주차관리 “인고의 세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단독특종면) (2) 『[TF 이슈추적] “주차관리” 최양락, 14년 진행 라디오 하차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연예가화제면) (3) 『[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외압논란” 최양락, 배신에 우는 속사정』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연예가화제면)
신청인 주장	개그맨 최양락이 MBC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에서 하차한 것이 외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최양락 하차 외압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213, 1214, 1271, 127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1213,1214) , 김○○ ^(1271,1272) , 對 일요신문 ^(1213,1271) , 인터넷 일요신문 ^(1214,1272)
조 정 대 상	『서울시 공사 수주 방수 전문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7월 17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신문 7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건설업체 취업이 대가성 채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서울시 공사 수주 방수 전문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10월 24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신문 10월 1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215·121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발작하는 장애인에 성수만 뿌려” 천주교 신부 ‘장애인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17	(정정청구) (의) ○○의료재단 對 인터넷 아시아글로벌
조 정 대 상	『파주 요양병원서 간병인 의료행위 재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사회/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주 요양병원서 간병인 의료행위 재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문화면)
2016서울조정 1218·1219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 정 대 상	『[귀족노조 下] 고용 강요에 활동비 강제 징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간부가 공사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귀족노조 下] 고용 강요에 활동비 강제 징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일부 삭제 (2016년 9월 7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220	(정정청구) 반○○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1)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사회면) (2)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종으로 목돈 챙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연예면) (3)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사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배우인 신청인이 복통치료를 이유로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종원 식당 여배우 합의금 요구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221	(정정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열 네개 유리병의 증언』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국가배상소송의 정부 측 변호사인 신청인이 인권유린 상황을 옹호한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협의)
2016서울조정 1222·1223	(정정·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굿모닝A 프로그램 『‘집에서 애나 봐’ 고위 공무원의 갑질』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고위 공무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24, 1225	(각 정정청구) ○○○○병원 對 TV조선 ⁽¹²²⁴⁾ , 인터넷 TV조선 ⁽¹²²⁵⁾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 슈퍼박테리아 보균 환자 발생 및 환자 관리』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전염병 환자의 격리나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26	(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對 인터넷 한의신문
조 정 대 상	『의료 바우처카드 소지자 대상 본인 부담금 대납은 ‘환자 유인행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27	(반론청구) 오○○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치매환자 명자씨의 수상한 9개의 고액보험』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치매환자를 속여 고액 보험에 불법가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치매환자 명자씨의 수상한 9개의 고액보험”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3일자)

2016서울조정 1230	(정정청구) 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6개월만에 누명 벗은 방석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0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취재보도한 모 방송 사장 횡령 의혹 기사가 사실확인도 않은 무책임한 보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31	(정정청구) (재) ○○○기념재단 외 3인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북한 제○○ 광수 박○○ 상장 귀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시민군으로 위장 침투하였다는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북한 제○○ 광수 박○○ 상장 귀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32~1234	(정정·손배청구) 나○○ 對 경향신문 ^(1232·1233) (정정청구) 인터넷 경향신문 ⁽¹²³⁴⁾
조 정 대 상	『교육부 고위 간부 “민중은 개·돼지 ... 신분제 공고화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했다는 등 발언 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35~124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대한불교○○○ 외 2인 對 MBC ^(1235~1237) , 인터넷 MBN ^(1238~1240)
조 정 대 상	(1) 뉴스8 프로그램 『주지 연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2월 29일자, 인터넷 MBN 2월 29일자 사회면) (2) 굿모닝 프로그램 『주지 연임 대가 금품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3월 1일자, 인터넷 MBN 2월 29일자 사회면) (3) 뉴스8 프로그램 『스님이 택시기사? ... “경력” 문제로 소송 중인 ○○○ 총무원장』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8월 5일자, 인터넷 MBN 8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단 총무원장이 모 주지스님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한불교 ○○○ 총무원장 금품 수수 및 경력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10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41, 1242	(각 반론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현대종교 ⁽¹²⁴¹⁾ ,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¹²⁴²⁾
조 정 대 상	『이단의 또 다른 방법 ‘시위’』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6월 1일자 108면~112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6월 1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교단과는 관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10월 24일자 103면)

2016서울조정 1243	(손배청구) 신○○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저수지로 간 부부 -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되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부부 사망사건의 의문을 다루면서 자녀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244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진행』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 출시한 화장품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진행』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245	(반론청구) ○○○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다단계 업계 2위인 ‘○○○’ 대표, 檢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사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자격을 박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46	(정정청구) 국방부 對 통일뉴스
조 정 대 상	『사드배치의 진실』 제하의 만평 (2016년 8월 2일자 통일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등의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47~125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의사회 외 19인 對 한국일보 ^(1247~1249) , 인터넷 한국일보 ^(1250~1252)
조 정 대 상	『산모 줄자 ...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8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과잉진료, 비급여진료 등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산부인과 진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53, 1254	(각 손배청구) 장 ○ 對 인터넷 문화일보 ⁽¹²⁵³⁾ , 네이버 ⁽¹²⁵⁴⁾
조 정 대 상	『“앉아서 출근하다니” ... ‘천국鐵’ 된 9호선』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화일보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네이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문화일보/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보도) • 취하 (네이버/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55·1256	(정정·손배청구) 지○○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납치된 딸 찾으러 한국 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가정사에 대해 이혼한 전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57	(정정청구) 윤장현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관사 처분후 자택서 살던 윤장현 광주시장 별도 사저 생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밀실 정치를 위하여 사저에서 생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윤장현 광주시장, 별도 사저 생활 의혹’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광주면)
2016서울조정 1258, 1259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¹²⁵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²⁵⁹⁾
조 정 대 상	『○○대 부총장, 셀프 추천으로 재연임 가능성』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8월 29일자 사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 부총장이 본인을 부총장으로 추천하여 연임할 것이라고 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한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60, 1261	(각 반론청구) (주) ○○○ 對 프레스맨 ⁽¹²⁶⁰⁾ , 중기이코노미 ⁽¹²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맨 : 『○○○은 “불통존?”... 가맹사업 막무가내 질주에 업주 시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엔터프라이즈 리포트면) • 중기이코노미 : 『중기청 “검찰 고발, 사업자와 갈등”... 조치없으면 선정 취소 가능성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산업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업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프레스맨/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중기이코노미)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프레스맨 2016년 10월 4일자 엔터프라이즈 리포트면)

2016서울조정 1262·1263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 박○○씨는 “목사” 아닌 “거짓 선지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가 영터리 교리를 주장하고 부정축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이단&이슈면)

2016서울조정 1264~1266	(정정·반론·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생협 부당하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내용을 보도하는 대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생협 부당하고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을 수정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67·1268	(정정·반론청구) 조희연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규모 출판기념회 “시끌”』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교육관계자의 참석을 강요하고 책을 강매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조희연 교육감 출판기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0월 7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69·1270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4명으로 늘어』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 성폭행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뒷모습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73, 1274	(각 정정청구) 국가보훈처 對 아주경제 ⁽¹²⁷³⁾ , 아주뉴스 ⁽¹²⁷⁴⁾
조 정 대 상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5만원 없어 못준다는 보훈처』 제하의 기사 (아주경제 2016년 7월 1일자 4면, 아주뉴스 7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국가보훈처의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 1인당 300만원까지 올려 지원』 제하의 기사 (아주경제 2016년 11월 9일자 종합면, 아주뉴스 11월 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275~1278	(각 정정청구) (주) 아이엠비씨 對 YTN ⁽¹²⁷⁵⁾ , 인터넷 YTN ⁽¹²⁷⁶⁾ , 채널A ⁽¹²⁷⁷⁾ , 인터넷 채널A ⁽¹²⁷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국민신문고21 프로그램 『이제는 아빠 육아 휴직 전성시대』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인터넷 YTN 8월 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외 5건 • 채널A : 7시뉴스 프로그램 『The 깊은 뉴스, 남성 육아 휴직의 실태』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79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홍보관 영업? 후불제 상조회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상조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80~1283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시사저널 ^(1280·1281) , 인터넷 시사저널 ^(1282·1283)
조 정 대 상	(1) 『검찰, 스포츠토도 수탁업체 ○○○○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7월 19일자 28면~29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21일자 사회면) (2) 『‘제2의 스포츠토도 사태’ 터지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7월 19일자 28면~29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유성 해외 출장, 향응 수수 등 비리와 부정 투성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2일자 인사이드뉴스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84~128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협회 對 MBC-TV ^(1284~1286) , iMBC ^(1287~1289)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어르신들 가족같이 돌봐줍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9일자, iMBC 6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노인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292, 1293	(각 손해청구) 주○○ 對 SBS-TV ⁽¹²⁹²⁾ , SBS 콘텐츠허브 ⁽¹²⁹³⁾
조 정 대 상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내 혈관 수치는? 레드 서울 캠페인』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9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9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혈압 측정 등 뇌혈관 질환 예방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94·1295	(정정·손배청구) 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평균 연봉 1.6억 ... 의사 급여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의사의 급여가 증가할수록 비급여 비용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296	(정정청구) 김○○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봄비는 공원에서, 다섯살 꼬마가 숨졌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원에서 벌어진 아동 실종사건이 근처 공연장 관람객의 무관심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297~1302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對 주간동아 ^(1297·1298) , 인터넷 주간동아 ^(1299·1300) , 동아닷컴 ^(1301·130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동아 : 『2조원 삼킨 액체 로켓 개발 안 하나, 못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28면, 29면, 인터넷 주간동아 7월 25일자 사회면) 외 1건 동아닷컴 : 『지지 부진 한국형 발사체 ... 눈치만 보다 일본 따라잡을 기회 놓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4일자 주간동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액체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의도적으로 연기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03~1306	(각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저널 ^(1303·1304) , 인터넷 서울경제 ^(1305·130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사저널 : 『‘청담동 주식부자’에 속은 투자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청담동 주식부자’ 대주주로 있는 ‘○○○○○’도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경제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307~1310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¹³⁰⁷⁾ , 인터넷 경향신문 ⁽¹³⁰⁸⁾ , 쿠키뉴스 ⁽¹³⁰⁹⁾ , 데일리안 ⁽¹³¹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나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3일자 미디어면) • 쿠키뉴스 : 『KBS, 30억 투자한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한 기자들에 징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영화면) • 데일리안 : 『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지시 거부하자 징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소속 기자들에게 특정 영화를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쿠키뉴스, 데일리안/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낮은 평점 준 평론가 비판 지시’ KBS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7일자 미디어면) • 쿠키뉴스 : 『KBS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영화면) • 데일리안 : 『KBS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311~1314	(각 정정·손배청구) 박○○ 외 4인 對 조선닷컴 ^(1311·1312) , 인터넷 채널A ^(1313·131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닷컴 : 『○○ 男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女 탈의실에 몰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널A : 『수영 女탈의실 몰카 ... 코치진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선수촌 여자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315, 1316	(각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¹³¹⁵⁾ , 인터넷 한겨레 ⁽¹³¹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겨레 : 『국정원, “양우회” 펀드 불법 운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1면) 외 10건 인터넷 한겨레 : 『“영리업무 금지” 어기고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서 펀드 투자』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9월 5일자 정치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국가정보원이 직원 상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4일자 연재면)

2016서울조정 1317·1318	(정정·반론청구) ○○○○○○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구모 출판기념회에 시끌』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일선 교사와 교육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서울시 교육감 출판기념회 행사 참석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319	(반론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엠비엔 집중 진단 -닭은 듯 다른 위작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친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전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9일자)

2016서울조정 1320~132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TV조선 ^(1320~1322) , 인터넷 TV조선 ^(1323~1325) , 조선닷컴 ^(1326~132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미르재단 이사장 문화 행사에 특혜 용역?』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16일자 탐사기획면) 외 2건 조선닷컴 : 『미르 이사장 김○○ 부부에 국가 예산 50억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부가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배후에 정권실세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2016서울조정 1329~133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1329·1330) , 조선닷컴 ^(1331·1332)
조 정 대 상	『‘저축은 비리’ 그는 왜 옥중 자살 시도했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6년 9월 2일자 A12면, 조선닷컴 9월 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구치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이 옥중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3·1334	(정정·손배청구) 황○○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유물을 보나요? ... ‘장애 유모차’ 못 들어간다는 박물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박물관장인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박물관 입장을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5	(정정청구) 경기도 광주시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경기 광주 오폐 난개발 현장 “탈세·공무원 비리”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메인화면)
신청인 주장	경기 광주시가 지역 난개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으로 명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기 광주 오폐 난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36, 1337	(각 반론청구) 여성가족부 對 경향신문 ⁽¹³³⁶⁾ , 인터넷 경향신문 ⁽¹³³⁷⁾
조 정 대 상	『‘나눔의집’ 몰래 방문한 여가부 장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자 11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를 비밀리에 방문하고 대화도 없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8, 1339	(각 반론청구) 김○○ 對 MBC-TV ⁽¹³³⁸⁾ , iMBC ⁽¹³³⁹⁾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장모 사위 친권 다툼 누가 손녀딸을 키우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8월 2일자, iMBC 8월 2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아내와 딸을 두고 가출하고 아내 사망 후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딸의 친권을 주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40	(반론청구) ○○○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 (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피부질환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제품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341~1362	(각 정정청구) 신○○ 對 인터넷 국민일보 ^(1341,1342) , 온라인 중앙일보 ⁽¹³⁴³⁾ , 인터넷 이데일리 ⁽¹³⁴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³⁴⁵⁾ , 인터넷 시민일보 ⁽¹³⁴⁶⁾ , 연합뉴스 ⁽¹³⁴⁷⁾ , 국제뉴스 ⁽¹³⁴⁸⁾ , KBS미디어 ⁽¹³⁴⁹⁾ , 인터넷 MBN ⁽¹³⁵⁰⁾ , 인터넷 YTN ⁽¹³⁵¹⁾ , 인터넷 평화방송 ⁽¹³⁵²⁾ , 뉴데일리 ^(1353,1354) , 더팩트 ⁽¹³⁵⁵⁾ , 데일리인 ^(1356,1357) , 미디어펜 ^(1358,1359) , 미래한국 Daily ⁽¹³⁶⁰⁾ , 브레이크뉴스 ⁽¹³⁶¹⁾ , 아이뉴스24 ⁽¹³⁶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더민주 중국 방문단, 한중 관계 불만 더 지르고 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중혈맹 복원’ 발언의 진위 ... 중국 측 “바로 잡아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국제면) • 인터넷 이데일리 : 『하태경 “北·中혈맹 회귀발언 사실무근 ... 더민주,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더민주 방중단의 ‘사드로 인한 북중 혈맹 복원’ 언급은 거짓』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정당면) • 인터넷 시민일보 : 『하태경, “정부차원에서 특사 보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정치면) • 연합뉴스 : 『與, 더민주 초선 ‘사드 방중’에 연일 ‘십자포화’』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최신기사면) • 국제뉴스 : 『與 “더민주, 방중 녹취록 확인해야 ... 미이행시 징계 요구안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정치면) 외 1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드 관련 방중 당시 중국측 인사의 발언을 날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뉴데일리, 미래한국 Daily/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시민일보, 연합뉴스, 국제뉴스, 인터넷 MBN, 인터넷 평화방송, 더팩트, 데일리안, 미디어펜, 아이뉴스24/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KBS미디어, 데일리안, 브레이크뉴스/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인터넷 YTN/사유 : 자진취하)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중혈맹 복원”발언의 진위 … 중국 측 “바로 잡아달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국제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하태경 “北·中혈맹 회귀발언 사실무근 … 더민주,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더민주 방중단의 ‘사드로 인한 북중 혈맹 복원’ 언급은 거짓”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정당면) • 인터넷 시민일보 : 『하태경, “정부차원에서 특사 보내야”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당/국회면) • 연합뉴스 : 『與, 더민주 초선 ‘사드 방중’에 연일 ‘십자포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7일자 최신기사면) • 뉴데일리 : 『[정정보도] 與 “더민주, 방중 녹취록 확인해야 … 미이행시 징계요 구안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치면) 외 7개 매체

2016서울조정 1363~136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현대원 對 경향신문 ^(1363~1365) , 인터넷 경향신문 ^(1366~1368)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대원, 연구용역 능력 없으면서 자신의 학교기업 통해 사업 수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29일자 5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8일자 사회면) (2) 『현대원 제자들 우리 인건비, 현 수석 측이 가져갔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0일자 사회면) (3) 『현 수석 측 ‘돌려받은 인건비’ 입출금 내역 확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0일자 사회면) (4) 『현대원 청 미래수석, 중국 게임쇼 출장에 초등생 아들 데려갔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수 재직 시절 연구능력도 없이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0월 27일자 6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69, 1370	(각 손해청구) 손○○ 對 뉴데일리경제 ⁽¹³⁶⁹⁾ , 메디컬투데이 ⁽¹³⁷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경제 : 『체형 교정센터 ‘유사 의료행위’ 주의보 ... 카이로프랙틱 치료 ‘불법’』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휴면) • 메디컬투데이 : 『체형 교정센터에서 의료 행위? 알고도 행한 ‘불법행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체형 교정센터가 의료행위 홍보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경제 : 『체형 교정센터 ‘유사 의료행위’ 주의보 ... 카이로프랙틱 치료 ‘불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2일자 휴면) • 메디컬투데이 : 『체형 교정센터에서 의료 행위? 알고도 행한 ‘불법행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8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371~137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주간경향 ^(1371~1373) , 인터넷 주간경향 ^(1374~1376)
조 정 대 상	『“[김진호의 ‘웰빙- 우파와 대형 교회’] (7)캐릭터 교회의 몰락과 보수대연합의 시대』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6년 8월 16일자 44면~46면, 인터넷 주간경향 8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옷로비 사건과 관계 있으며, 모 그룹의 비자금처로 이용되는 등 권력화 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6년 10월 24일자 11면, 인터넷 주간경향 10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77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분당 아파트서 주민이 관리소장 폭행 ... “갈비뼈 3개 골절”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1378, 1379	(각 정정청구) 진○○ 對 TV조선 ⁽¹³⁷⁸⁾ , 인터넷 TV조선 ⁽¹³⁷⁹⁾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억울함에 목숨으로 대신합니다” 70대 경비원 투신사망』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8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투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인 신청인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80·1381	(정정·손배청구) 한국공항공사 對 시사ON
조 정 대 상	『직원 옥죄는 한국공항공사, 군 출신 사장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한국공항공사가 군 출신 사장 부임후 수직적 군대 문화가 확산되어 직원을 옥죄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382~1415, 1573~1600, 1692~1705, 1733~1762	(각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국민일보 ^(1382-1383,1692-1693) 인터넷 경향신문 ⁽¹³⁸⁴⁻¹³⁸⁵⁾ 인터넷 서울신문 ^(1386-1387,1749-1750) 시사N Live ⁽¹³⁸⁸⁻¹³⁸⁹⁾ 인터넷 서울경제 ⁽¹³⁹⁰⁻¹³⁹¹⁾ 인터넷 여성신문 ⁽¹³⁹²⁻¹³⁹³⁾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¹³⁹⁴⁻¹³⁹⁵⁾ 조선닷컴 ⁽¹³⁹⁶⁻¹³⁹⁷⁾ 인터넷 한겨레 ⁽¹³⁹⁸⁻¹³⁹⁹⁾ 프레시안 ⁽¹⁴⁰⁰⁻¹⁴⁰¹⁾ 허핑턴포스트코리아 ⁽¹⁴⁰²⁻¹⁴⁰³⁾ 고발뉴스닷컴 ⁽¹⁴⁰⁴⁻¹⁴⁰⁵⁾ 월드투데이 ⁽¹⁴⁰⁶⁻¹⁴⁰⁷⁾ 코리아뉴스타임즈 ⁽¹⁴⁰⁸⁻¹⁴⁰⁹⁾ 한국NGO ⁽¹⁴¹⁰⁻¹⁴¹¹⁾ 뉴시스 ^(1412-1413,1704-1705) 뉴스코리아 ⁽¹⁴¹⁴⁻¹⁴¹⁵⁾ CBC뉴스 ⁽¹⁵⁷³⁻¹⁵⁷⁴⁾ 더팩트 ⁽¹⁵⁷⁵⁻¹⁵⁷⁶⁾ 뉴스한국닷컴 ⁽¹⁵⁷⁷⁻¹⁵⁷⁸⁾ 뉴스엔뉴스 ⁽¹⁵⁷⁹⁻¹⁵⁸⁰⁾ 아시아경제닷컴 ^(1581-1582,1751-1752) 이뉴스투데이 ⁽¹⁵⁸³⁻¹⁵⁸⁴⁾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⁵⁸⁵⁻¹⁵⁸⁶⁾ 국민일보 ⁽¹⁵⁸⁷⁻¹⁵⁸⁸⁾ TV조선 ⁽¹⁵⁸⁹⁻¹⁵⁹⁰⁾ 인터넷 TV조선 ⁽¹⁵⁹¹⁻¹⁵⁹²⁾ 연합뉴스TV ⁽¹⁵⁹³⁻¹⁵⁹⁴⁾ 인터넷 연합뉴스TV ⁽¹⁵⁹⁵⁻¹⁵⁹⁶⁾ YTN ⁽¹⁵⁹⁷⁻¹⁵⁹⁸⁾ 인터넷 YTN ⁽¹⁵⁹⁹⁻¹⁶⁰⁰⁾ 인터넷 일요서울 ⁽¹⁶⁹⁴⁻¹⁶⁹⁵⁾ e머니투데이 ⁽¹⁶⁹⁶⁻¹⁶⁹⁷⁾ 씨앤비뉴스 ⁽¹⁶⁹⁸⁻¹⁶⁹⁹⁾ 에스티브이 ⁽¹⁷⁰⁰⁻¹⁷⁰¹⁾ 포커스뉴스 ⁽¹⁷⁰²⁻¹⁷⁰³⁾ 연합뉴스 ⁽¹⁷³³⁻¹⁷³⁴⁾ 내외뉴스통신 ⁽¹⁷³⁵⁻¹⁷³⁶⁾ 국제타임스 ⁽¹⁷³⁷⁻¹⁷³⁸⁾ 민중의소리 ⁽¹⁷³⁹⁻¹⁷⁴⁰⁾ 시사포커스신문 ⁽¹⁷⁴¹⁻¹⁷⁴²⁾ 인사이트 ⁽¹⁷⁴³⁻¹⁷⁴⁴⁾ 프린티어타임스 ⁽¹⁷⁴⁵⁻¹⁷⁴⁶⁾ 동아닷컴 ⁽¹⁷⁴⁷⁻¹⁷⁴⁸⁾ 인터넷 이데일리 ⁽¹⁷⁵³⁻¹⁷⁵⁴⁾ 온라인 중앙일보 ⁽¹⁷⁵⁵⁻¹⁷⁵⁶⁾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⁷⁵⁷⁻¹⁷⁵⁸⁾ , 애플경제 인터넷,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황당 교육』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외 2건 • 인터넷 경향신문 :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황당’ 성희롱 예방 교육』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국민의당 성교육 강사 “성희롱 참고 넘어가게 미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사회면) • 시사N Live : 『성희롱 당하면 참는 게 미덕?』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성희롱 피해는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정치면) 외 42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시사N Live,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코리아/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선닷컴, 인터넷 한겨레, 뉴시스^(1412·1413), 뉴스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서울신문^(1386·1387), 인터넷 여성신문, 한국 NGO, 더팩트, 뉴스한국닷컴, 뷰스앤뉴스, 아시아경제닷컴^(1581·1582), 이뉴스투데이,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YTN, 인터넷 YTN, 인터넷 일요서울, 에스티브이, 포커스뉴스, 뉴시스, 내외뉴스통신, 국제타임스, 인사이드, 프런티어타임스, 동아닷컴, 인터넷 이데일리,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채널A/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고발뉴스닷컴, 월드투데이, 코리아뉴스타임즈, CBC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e머니투데이, 씨앤비뉴스, 연합뉴스, 민중의소리, 시사포커스신문, 인터넷 서울신문^(1749·1750), 아시아경제닷컴^(1751·1752), 애플경제 인터넷/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국민일보, 국민일보)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Live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정치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초기화면) 외 15개 매체
<p>2016서울조정 1416, 1417</p>	<p>(각 반론청구) 정○○ 對 한겨레⁽¹⁴¹⁶⁾, 인터넷 한겨레⁽¹⁴¹⁷⁾</p>
<p>조 정 대 상</p>	<p>(1) 『김형준 부장검사, 수사대상 금융기업서도 항응 받았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9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9일자 사회면) (2) 『김형준, KB증권 수사 전후 5차례 접대받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9일자 13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9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일명 스폰서 검사에게 항응을 제공하고 기업 수사정보를 파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불성립결정</p>

2016서울조정 1418~1421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채널A ^(1418·1419) , 인터넷 채널A ^(1420·1421)
조정대상	7시뉴스 프로그램 『판검사 회식에 의원 남편 ...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6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2012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법사위원과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합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결과	뉴스특보 프로그램 『「판검사 회식에 의원 남편 ... 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2월 11일자, 인터넷 채널A 12월 1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422~1424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뉴스타파
조정대상	(1) 『도돌이표 사학 비리 ...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2)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 ... '사분위'와 사학법』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3) 『○○대 전 이사의 고백 ... "김○○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 설립자가 사학 비리의 주역이며, 총장 복귀가 학교 내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25~1440	(각 정정청구) (주) ○○○ 對 시크뉴스 ⁽¹⁴²⁵⁾ , 아이뉴스24 ⁽¹⁴²⁶⁾ , 조선비즈닷컴 ⁽¹⁴²⁷⁾ , 컨슈머타임스 ⁽¹⁴²⁸⁾ , 화이트페이퍼 ⁽¹⁴²⁹⁾ , 아시아경제닷컴 ⁽¹⁴³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⁴³¹⁾ , 한경닷컴 ⁽¹⁴³²⁾ , 인터넷 MBN ⁽¹⁴³³⁾ , 뉴스타운 ⁽¹⁴³⁴⁾ , 문화뉴스 ⁽¹⁴³⁵⁾ , 동아닷컴 ⁽¹⁴³⁶⁾ , 조선닷컴 ⁽¹⁴³⁷⁾ ,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¹⁴³⁸⁾ , 인터넷 한국스포츠통계 ⁽¹⁴³⁹⁾ , 한경닷컴 ⁽¹⁴⁴⁰⁾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크뉴스 :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CMIT·MIT 혼합물 검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뷰티면) • 아이뉴스24 : 『일부 물티슈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 유명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 전량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기업면) • 컨슈머타임스 : 『'○○○ 물티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기타면) • 화이트페이퍼 :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 어느 제품이길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생활경제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경제닷컴 : 『유아용 물티슈에 살균제 성분 포함 ... 소비자 “불안·배신” 분통』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산업/IT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 또 구설, 이번엔 일부 제품 독성물질 - 세균 과다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뉴스속보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시크뉴스, 아이뉴스24, 조선비즈닷컴, 화이트페이퍼, 아시아경제닷컴, 환경닷컴/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컨슈머타임스,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후속보도) • 취하 (인터넷 MB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기각 (뉴스타운, 문화뉴스, 동아닷컴, 조선닷컴,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환경닷컴/사유 : 피신청인 주의의무 이행)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크뉴스 :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CMIT·MIT 혼합물 검출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10월 6일자 뷰티면) • 아이뉴스24 : 『일부 물티슈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 유명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 전량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30일자 기업면) • 컨슈머타임스 : 『○○○○·○○○ 물티슈, CMIT·MIT 검출되고 세균 많아 ...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30일자 기타면) • 화이트페이퍼 :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 어느 제품이길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28일자 생활경제면) 외 3개 매체

2016서울조정 144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젊은이 기준’ 50년대 19세 ... 80년대 21.5세 ... 현재 41세 ... 2040년엔 52.6세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출처가 불명확한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조정 신청 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1442	(손배청구) 김○○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1) 『신앙과 훈련 빌미로 노동력·돈 착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기독교 가치 내세우는 곳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4일자 사회면) (3) 『문화 선교한다면서 특하면 '가계 저주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연습생들을 착취한다고 보도하고 초상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앙과 훈련 빌미로 노동력·돈 착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443~1446	(각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한국일보 ^(1443·1444) , 인터넷 한국일보 ^(1445·1446)
조 정 대 상	『500억대 국기원 명소화 사업 잡음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9월 22일자 27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2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의 명소화 사업이 이사회 논의도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447~146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인KBS-1TV ^(1447·1448) , MBC-TV ^(1449·1450) , SBS-TV ^(1451·1452) , JTBC ^(1453·1454) , YTN ^(1455·1456) , 연합뉴스TV ^(1457·1458) , 인터넷 국민일보 ^(1459·146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치킨집 주인 갑질 ... 아르바이트생 폭행』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왜 좋아! 주인이 알바생 폭행, “신고하면 보복” 협박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근무 중 즐었다고 알바생 폭행 ... 잔혹한 사장님』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JTBC : 아침& 프로그램 『“좋았다”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업주』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일하다 좋아?”...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업주』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 뉴스포커스 프로그램 『근무시간에 좋아? ... 알바생 무차별 폭행 치킨집 사장』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 인터넷 국민일보 : 『“일하다 좋아? 물어버릴거야”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사장』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치킨집 사장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461~1464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KBS-1TV ^(1461·1462) , KBS미디어 ^(1463·1464)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사실 구급차 불법·탈법 운상 ... 범죄 악용까지』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6일자, KBS미디어 9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으로 사실 구급차를 제작 및 유통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465~1467	(각 정정청구) (주)○○○○○○○ 對 KBS-1TV ⁽¹⁴⁶⁵⁾ , KBS-2TV ⁽¹⁴⁶⁶⁾ , KBS미디어 ⁽¹⁴⁶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생명줄인데 ... 소방관 공기통, 잠수용으로 실험 ‘들통’』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11일자, KBS미디어 9월 11일자 다시보기면) • KBS-2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소방관’ 공기통 충전기, ‘잠수용’ 실험해 합격?』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12일자, KBS미디어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방관 공기통 충전 장치를 개발하면서 시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68, 1469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채널A ⁽¹⁴⁶⁸⁾ , 인터넷 채널A ⁽¹⁴⁶⁹⁾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승객이 떠 안은 ‘항공유 운반’ 적자』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9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코레일의 항공유 운반비용 적자가 방위사업청의 낮은 운반비 책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서울조정 1470~1473, 1476, 1477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MBN ^(1470·1471) , 인터넷 MBN ^(1472·1473) (각 정정청구) 네이버 ⁽¹⁴⁷⁶⁾ , 다음 ⁽¹⁴⁷⁷⁾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설탕 잔뜩 넣는 ○○』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9월 13일자, 인터넷 MBN, 네이버, 다음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생과일 주스가 과일 함량은 부족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474	(정정청구) ○○○○중학교 對 iMBC
조 정 대 상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학폭위,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PD수첩 다 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학폭위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고, 상담 내용을 허위기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75	(정정청구) (사) ○○○○○○○연맹 對 아시아투어닷컴
조 정 대 상	『여가부, 무허가 청소년 체험 캠프 8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미인증 청소년 체험 캠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p>2016서울조정 1478~1490</p>	<p>(각 추후·손배청구) 윤석용 對 MBN^(1478·1479), 인터넷 일요서울^(1480·1481) (각 추후청구) 인터넷 국민일보⁽¹⁴⁸²⁾, 노컷뉴스⁽¹⁴⁸³⁾, 시사위크⁽¹⁴⁸⁴⁾, 인터넷 이데일리⁽¹⁴⁸⁵⁾, 매경닷컴⁽¹⁴⁸⁶⁾, SBS 콘텐츠허브⁽¹⁴⁸⁷⁾, 뉴스1코리아⁽¹⁴⁸⁸⁾, 뉴시스⁽¹⁴⁸⁹⁾, 연합뉴스⁽¹⁴⁹⁰⁾</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아침뉴스 프로그램 『윤석용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0일자) • 인터넷 일요서울 : 『서울 강동을, 경선 앞두고 ‘진정서’ 봇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정치면) 외3건 • 인터넷 국민일보 : 『검찰, 윤석용 새누리당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노컷뉴스 : 『검찰, 새누리당 윤석용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시사위크 : 『[선거법 위반 현황표 입수] 선관위, 54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이데일리 : 『檢, 윤석용 새누리당 강동을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매경닷컴 : 『檢, 새누리당 강동을 윤석용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외 4개 매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일요서울/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 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부제소 조항 및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노컷뉴스, 인터넷 이데일리, 매경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시사위크, 뉴스1코리아, 뉴시스,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 취하 (SBS 콘텐츠허브/사유 : 후속보도, MBN/사유 : 자진취하)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위크 : 『[선거법 위반 현황표 입수] 선관위, 54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5일자 정치면) • 뉴스1코리아 : 『檢, 새누리 서울지역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3일자 정치면) • 뉴시스 : 『與 강동을 이재영-윤석용, 경선 앞두고 신경전 가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7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검찰, 윤석용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정치면) • 연합뉴스 : 『檢, 강동구 출마 새누리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49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달랑 5시간 ... 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2013년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 검정이 신청인 출판사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달랑 5시간 ... 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법인명 삭제 (2016년 10월 6일자 사회교육면)

2016서울조정 1492·1493	(정정·손배청구) 광진경찰서 외 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광진경찰서’ 무슨 기준으로 교통 법규 위반 판단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494~1496	(정정·반론·손배청구) 고○○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은밀한 범죄 영유아 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직업도 없이 무위 도식한다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보도, 부제소)

2016서울조정 1497, 1509	(각 반론청구) (주) ○○○ 對 KBS-1TV ⁽¹⁴⁹⁷⁾ , KBS미디어 ⁽¹⁵⁰⁹⁾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140억’ 콜택시 사업 ... 시민·기사 모두 외면』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3일자, KBS미디어 7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콜택시 통신 단말기가 오류가 잦고 입찰 기준에 못 미치는 CPU를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1498~1501	(각 정정·반론청구) ○○○○○○○○ ○○○교회 對 한겨레 ^(1498·1499) , 인터넷 한겨레 ^(1500·1501)
조 정 대 상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7월 5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반대파 교인을 축출하려 고소를 남발하고 고위 판검사 신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2월 6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502·150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문학상 수상 시인의 두 얼굴? 성폭행, 학대, 논문대필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논문 대필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사 조건부 블라인드 처리)

2016서울조정 1504~150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1504·1505) , 뉴스1코리아 ^(1506·150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최신기사면) • 뉴스1코리아 : 『“과장 어디갔나”... ○○○○○○발전협의회 전 회장, 여성공무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직 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뉴스1코리아/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연합뉴스 2016년 10월 19일자 최신기사면)

2016서울조정 1508	(정정청구) 원○○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법정싸움 ‘테디베어’... 한류스타, 전직 고위공무원 등 피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법적 분쟁에 있는 상대방과 오랜 동료였으며, 특정 캐릭터 상표의 디자인 및 상표권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단독] 법정 싸움 ‘테디 베어’... 한류스타·전직 고위공무원 등 피해』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510·1511	(반론·손배청구) 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한밤에 바다로 돌진한 승용차! 왜 바다로 돌진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보도하고 동의 없이 병실을 무단 촬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1512	(정정청구) ○○회계법인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회계법인 대우조선 외부감사 덤핑수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계 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 용역을 덤핑으로 수주함으로써 분식회계를 확대한 원흉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회계법인 “공정경쟁 통해 대우조선 외감 수주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조세회계면)

2016서울조정 1513, 1514	(각 정정청구) 이○○ 對 한겨레 ⁽¹⁵¹³⁾ , 인터넷 한겨레 ⁽¹⁵¹⁴⁾
조 정 대 상	『학교 불량급식 뒤엔 ‘17배나 비싼 시래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2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학교 급식자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0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25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515	(정정청구) 새누리당 對 땀지일보
조 정 대 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3일차 통화 내용 미래로부터 ... 입수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투쟁 중에 몰래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허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정치사회면)

2016서울조정 1516~151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SBS-TV ^(1516·1517) , SBS 콘텐츠허브 ^(1518·1519)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마사회, A양 이용해 허위 홍보 ... 황당한 가족』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8월 27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재활 승마사업 홍보를 위해 장애 아동의 재활 내용을 허위로 과장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20	(정정청구) 남○○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및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현직 경찰, 조폭과 수억원 거래 ... 돈 거래만?』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및 7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고리의 사채놀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21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선관위, 국민의당 심○○ 위원장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모 정당 지역위원장인 신청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후속보도 - 동의 후 보도)

2016서울조정 1522	(정정청구) 예금보험공사 對 프라이مج체
조 정 대 상	『예금보험공사 성추행 ... 너도나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오 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예금보험공사 성추행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523~1526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한겨레 ^(1523·1524) , 인터넷 한겨레 ^(1525·1526)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3면, 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노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거 모 컨설팅 회사의 행동대장으로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0월 29일자 4면)

2016서울조정 1527~1530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CBS-R ^(1527·1528) , 노컷뉴스 ^(1529·1530)
조 정 대 상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KBS는 정말 별나게 지진 보도를 했다』 제하의 보도 (CBS-R 2016년 9월 23일자, 노컷뉴스 9월 24일자 문화/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KBS가 지난 9월 지진 발생 당시 특보를 극장 방송하는 등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6년 10월 2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531~153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구○○ 對 일요신문 ^(1531~1533) , 인터넷 일요신문 ^(1534~1536)
조 정 대 상	『불법 전매 앓고 법 지켰더니 손해만』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7월 10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신문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거 상가의 공동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제안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금전적 배상 없이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537	(반론청구) 김○○ 對 아이에스플러스닷컴
조 정 대 상	『○○○, 비리 직원에 거액 퇴직 위로금은 관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1일자 축구면)
신청인 주장	모 체육협회 직원인 신청인이 비리 때문에 퇴사하면서 거액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프로축구면)

2016서울조정 1538·1539	(정정·손배청구)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음산협, 집행부 둘러싼 내홍 절정』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자의 피선거권 문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음산협, 집행부 둘러싼 내홍 절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540·154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가평투데이
조 정 대 상	『누가, 8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몰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불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누가, 8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몰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4일자 기획면)
2016서울조정 1542~1552, 1640~1650	(각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국민일보⁽¹⁵⁴²⁾, 동아닷컴⁽¹⁵⁴³⁾, e머니투데이⁽¹⁵⁴⁴⁾, 인터넷 서울경제⁽¹⁵⁴⁵⁾, 세계닷컴⁽¹⁵⁴⁶⁾, 스타뉴스⁽¹⁵⁴⁷⁾, 인터넷 스포츠동아⁽¹⁵⁴⁸⁾, 위키트리⁽¹⁵⁴⁹⁾, 조선닷컴⁽¹⁵⁵⁰⁾,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¹⁵⁵¹⁾, 인터넷 헤럴드경제⁽¹⁵⁵²⁾, CBC뉴스⁽¹⁶⁴⁰⁾, 매경닷컴⁽¹⁶⁴¹⁾, 민중의소리⁽¹⁶⁴²⁾, 비즈엔터⁽¹⁶⁴³⁾, 스타서울TV⁽¹⁶⁴⁴⁾, 스타투데이⁽¹⁶⁴⁵⁾, 아시아경제닷컴⁽¹⁶⁴⁶⁾, 스포츠한국미디어⁽¹⁶⁴⁷⁾, 엑스포츠뉴스⁽¹⁶⁴⁸⁾, 티브이데일리⁽¹⁶⁴⁹⁾, 한경닷컴⁽¹⁶⁵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일보 : 『배우 강○○, 영화 ‘○○’ 주○○ 감독 빛 보증 섰다가 파산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시사면) • 동아닷컴 : 『강○○, 주○○ 감독 빛 보증 섰다가 파산 절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연예면) • e머니투데이 : 『배우 강○○, 주○○ 감독 빛 보증 서다 파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뉴스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배우 강○○, 주○○ 감독에 명의 빌려줬다 파산 절차 …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방송연예면) • 세계닷컴 : 『배우 강○○, 주○○ 감독 빛 보증 섰다가 ‘파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스포츠면) • 스타뉴스 : 『‘파산’ 강○○ “바보 같았다 … 전화위복 되길” 무명 여배우의 고백』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영화면) 외 1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배우 강○○, 주○○ 감독 빛 보증 섰다 파산절차 밟는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홈면) 외 1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e머니투데이, 인터넷 서울경제, 세계닷컴, 스타뉴스, 인터넷 스포츠동아, 조선닷컴,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CBC뉴스, 매경닷컴, 민중의소리, 비즈엔터, 스타서울TV, 스타투데이, 스포츠한국미디어, 엑스포츠뉴스, 티브이데일리, 한경닷컴/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위키트리, 아시아경제닷컴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키트리 : 『“이름 빌려 달라” 영화감독에 속아 파산한 배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6년 10월 14일자 영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A여배우, 주○○ 감독에 속아 파산 절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6년 10월 25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553, 1554, 1661, 1662	(각 정정청구) 전○○ 對 SBS-TV ⁽¹⁵⁵³⁾ , SBS 콘텐츠허브 ^(1554,1662) , SBS-R ⁽¹⁶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실명 아이 치료비 챙겨간 변호사 수임료 관련 의혹제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4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24일자 사회면) • SBS-R : 한수진의 시사전망대 프로그램 『아동 학대로 실명 ... 돈 가로챈 변호사 ‘파렴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5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재산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55~1558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이데일리 ^(1555·1556) , 네이버 ^(1557·1558)
조 정 대 상	『“警, ‘한술밥’ 식구들끼리 몸싸움 물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 7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동료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警, 몸싸움 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네이버 10월 28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559	(정정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법률구조공단, 만성 적자에도 수십 억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의 적법한 소송성과급 지급을 비난하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법률구조공단 “기준 바뀌 대상 늘어 ... 정부지원 확대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최신기사면)

2016서울조정 1560~1565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1인 對 매일경제 ^(1560·1561) , 한국경제 ^(1562~156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연봉 8400만원 ○○○○○ ‘임금 올려달라’ 노조 파업』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1일자 18면) • 한국경제 : (1) 『생산직 직원, 하루 7시간 근무에 연봉 8400만원 받는다는데 ...』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7면) (2) 『○○○○○ 노조원 10%가 친인척 관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사측에 친인척 채용을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 (매일경제/사유 : 반론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경제)
이 행 결 과	『○○○○○ 노조 “불법점거 아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11월 3일자 18면)
2016서울조정 1567~1570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채널A ^(1567·1568) , 인터넷 채널A ^(1569·1570)
조 정 대 상	(7시뉴스 및 아침뉴스 프로그램 『출동 여경 성희롱 ... 여경 성추행 늘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0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여성 경찰인 신청인이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한 후 수치심에 출근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571, 1572, 1601, 1602, 1685, 1686	(각 정정·손배청구) 은평구 對 아시아투데이 ^(1571·1601) , 아시아투데이닷컴 ^(1572·1602) (각 정정청구) 아시아투데이 ⁽¹⁶⁸⁵⁾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⁶⁸⁶⁾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등재 않고 불법 공연한 ‘숲속극장’』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불법 운영 의혹』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닷컴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3) 『불법 건물 짓고 공연장사한 서울 은평구 ... “파렴치한 행동, 즉각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닷컴 2016년 10월 7일자 사회면) (4) 『불법 건축물 판치는데 ... 손 놓고 있는 은평구』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불법 공연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0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월간프리저던트
조 정 대 상	『하이슈/○○○○ 반칙과 뻔뻔함으로 막가는 ○○○○ 회장선거 파동 전말 “공산당 아래서도 20년 버틴 차○○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 선거에 불법과 반칙이 난무했고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협회 반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1604~1606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¹⁶⁰⁴⁾ , 주간경향 ⁽¹⁶⁰⁵⁾ , 인터넷 주간경향 ⁽¹⁶⁰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朴 “대통령직 사퇴” 실언에 뺨 터졌다던 차은택』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사회면) • 주간경향 : 『박근혜 비선실세 차은택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36면, 37면, 인터넷 주간경향 10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2013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와 5·16 쿠데타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朴 “대통령직 사퇴” 실언에 뺨 터졌다던 차은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경향 : 『박근혜 비선실세 차은택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07~163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연합뉴스 ^(1607~1612) , 인터넷 경향신문 ^(1613~1615) , 인터넷 국민일보 ^(1616~1618) , 인터넷 한겨레 ^(1619~1621) , 인터넷 한국일보 ^(1622~1624) , SBS 콘텐츠허브 ^(1625~1627) , 인터넷 YTN ^(1628~1630) , EBS-TV ^(1631~163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1) 『“교육부, ○○대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전국면) (2) 『2017학년도는 새로운 민주 ○○대로 시작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전국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교육부, ○○대 이사 9명 전원 자격 박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6년 끈 ‘○○대 사태’ 마무리되나 … 교육부, 이사 전원 임원

조 정 대 상	<p>취임 승인 취소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교육부, 옛 재단 쪽 ○○학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교육부 임원 취임 승인 통보, ○○대 사태 해결 전기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전국면) • SBS 콘텐츠허브 : 『교육부, ○○대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대학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연합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한겨레/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충분히 취재한 후 보도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EBS-TV/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대 임용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SBS 콘텐츠허브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전국면) 외 1건

2016서울조정 1634~163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 콘텐츠허브 ^(1634·1635) , 인터넷 일요신문 ^(1636·1637) , 인터넷 한겨레 ^(1638·163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콘텐츠허브 : 『학생에 ‘갑질’ ○○대 교수, 이번엔 시간 강사 무더기로 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전북대 ‘갑질 교수’ 논란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대 무용과 교수, 이번엔 시간강사 일방해촉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강의 예정이던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교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인터넷 한겨레/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일요신문/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대 무용과 교수, 이번엔 시간강사 일방 해촉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51~166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1651~1653) , 조선닷컴 ^(1654~1656)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경제 ^(1657·1658) , 인터넷 서울경제 ^(1659·1660)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1)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1면, 조선닷컴 10월 3일자 사회면) (2) 『착취와 쟁취 ...』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3면, 조선닷컴 10월 3일자 사회면) 서울경제 :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해도 임금손실 '0'... 파업은 민노총 지원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2면, 인터넷 서울경제 9월 3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하 노조들의 파업이 불법이고 기득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63·1664	(정정·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
조정 대상	『천경자 위작논란 미인도 습작추정 스케치 발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2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친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습작본이 존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22면)
2016서울조정 1665	(정정청구) 백○○ 對 인터넷 한겨레
조정 대상	『○○ 디자인 ○○학교』 제멋대로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원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666	(손배청구) 권윤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네이밍, 사람 이름을 딴 법안 Top 5』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일명 ‘유병언법’을 소개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네이밍, 사람 이름을 딴 법안 Top 5』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삭제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67~1669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비리 사학재단 배 불리다 퇴출위기 처한 대학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사학 비리의 온상이고 전 이사장이 학교를 망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및 김○○ 전 총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70, 1671	(각 정정청구) ○○○○협회 서울특별시○○○○ 對 동아일보 ⁽¹⁶⁷⁰⁾ , 동아닷컴 ⁽¹⁶⁷¹⁾
조 정 대 상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 설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1면, 동아닷컴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축사가 내진설계는 역량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672~167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1672·1673) , KBS미디어 ^(1674·1675)
조 정 대 상	(1) 9시뉴스 프로그램 『고교 女배구팀 코치, 학생들 수차례 성추행 ‘충격’』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13일자, KBS미디어 9월 13일자 스포츠면) (2) 9시뉴스 프로그램 『배고 코치 성추문 사태 … 교육청 알고도 묵인』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20일자, KBS미디어 9월 20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고교 여자 배구팀 코치의 성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9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중 신청인 관련 영상 삭제 (KBS미디어 2016년 10월 28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676	(손배청구) 신○○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랏돈 타라”… 줄줄 새는 탈북자 지원금』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자 취업지원금 악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아르바이트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2016서울조정 1677·1678	(정정·손배청구) ○○○○○○○○○○○○○ ○○○○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1) 『언론 유명세 ‘조희팔 검거단’ 檢수사 연루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2) 『고소당한 ○○○의 ‘700억대 건물 부당취득 의혹사건’, 그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3)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희팔 검거단(○○○)’,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4) 『8000억대 사기에 남은건 ‘700억대 건물’… 개발업체 - ○○○○○○ ‘소유권 게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거액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79·1680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여자는 공대가면 공주” 교수발언 성차별 VS 학생들이 왜곡』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수업중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H대 A교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81, 1682	(각 정정청구) 이○○ 對 TV조선 ⁽¹⁶⁸¹⁾ , 인터넷 TV조선 ⁽¹⁶⁸²⁾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갤노트 교환 제품도 폭발 주장』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리콜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교환품도 폭발했다고 주장한 신청인이 삼성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83, 1684	(각 정정청구) ○○○○○협회 對 동아일보 ⁽¹⁶⁸³⁾ , 동아닷컴 ⁽¹⁶⁸⁴⁾
조 정 대 상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 설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1면, 동아닷컴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축사가 내진설계는 역량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보도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87	(정정청구) (주) ○○○ 對 문화뉴스
조 정 대 상	『○○○ 멀티슈 설립자, 알고보니 ‘벤틀리 물고 졸피뎀 질주 男’』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멀티슈에서 가슴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688	(정정청구) (주) ○○○○○○○○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국내 크라우드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경제면) (2) 『국내 크라우드 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내 크라우드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11월 7일자 금융증권면)

2016서울조정 1689	(정정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또 오사카 ‘혐한 논란’… 통학 증명서에 ‘조선진’ 표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한국 학생에게 통학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690, 1691	(각 정정청구) (재) 케이스포츠 對 인터넷 한겨레 ⁽¹⁶⁹⁰⁾ , 인터넷 경향신문 ⁽¹⁶⁹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K스포츠 박과장의 ‘수상한 독일 출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경향신문 :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최순실 딸의 독일 전지훈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지원했으며 국내 대기업에 독일 현지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06·1707	(정정·손배청구) 고○○ 외 1인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웨딩 컨설팅협회 또 다른 갑질 자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웨딩 컨설팅 소상공인들에게 담합을 요구하는 갑질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08~1729	(각 정정·손배청구) 군인권센터 對 뉴스1코리아 ^(1708·1709) , 인터넷 국민일보 ^(1710·1711) , 동아일보 ^(1712·1713) , 동아닷컴 ^(1714·1715) , 문화일보 ^(1716·1717) , 인터넷 문화일보 ^(1718·1719) , 세계일보 ^(1720·1721) , 세계닷컴 ^(1722·1723) , 조선닷컴 ^(1724·1725) , 아주뉴스 ^(1726·1727) , 뉴스천지 ^(1728·172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나라 위해 전사했지만 빈소는 쓸쓸”… 어느 제독의 애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5일자 극빙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인 헬기 추락사고 순직 가족』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9일자 시사면) • 동아일보 : 『순직 헬기 장병들의 爲國 헌신과 유족의 눈물겨운 절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27면, 동아닷컴 10월 8일자 오피니언면) • 문화일보 : 『순직·전사 장병 유족의 의견함 … 대한민국의 귀감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39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7일자 오피니언면) • 세계일보 : 『순직·전사 장병 유족의 의견함 … 대한민국의 귀감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23면, 세계닷컴 10월 7일자 사설면) • 조선닷컴 : 『한 해군 제독의 애도 … “세월호·백남기 빈소는 북적, 순직 군인 빈소는 쓸쓸 … 눈물이 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군인권센터가 순직 장병 영결식을 거부하라고 유가족을 선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30	(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아주뉴스
조정 대상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안무치 태도 논란 … 국감 지각 두고 말 바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지각 출석한 것을 두고 스스로 적절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3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여성경제신문
조정 대상	『“30만원이나 더 비싸다” ○○ 효사랑 휴가 프로그램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직원 복지 일환으로 시행한 여행 프로그램이 시중가보다 비싸고 업체와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 효사랑 휴가 프로그램 뒷거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732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연합뉴스
조정 대상	『철도 파업 21일째 ‘콩나물 객차’… 무궁화호 22분 지연 운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도파업 기간중 구미역 열차의 지연 출발이 기관사의 운전미숙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행 결과	『철도 파업 21일째 ‘콩나물 객차’… 무궁화호 22분 지연 운행』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11월 4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763, 1764	(각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MBC-TV ⁽¹⁷⁶³⁾ , iMBC ⁽¹⁷⁶⁴⁾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대 ○○병원 직원 돈으로 병원 신축?』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0월 16일자, iMBC 10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직원들에게 병원신축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 불응자에게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학교 ○○병원 신관신축 기부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2월 6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1765	(정정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對 연합뉴스TV
조 정 대 상	10시뉴스 프로그램 『30년 된 아파트 속 싹튼 불화 ... 침해하게 갈린 주민들』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도제한이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66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참여 압박”』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육부 ○○대에 평단 사업 참여 종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767, 1768	(각 반론청구) 박○○ 對 SBS-TV ⁽¹⁷⁶⁷⁾ , SBS 콘텐츠허브 ⁽¹⁷⁶⁸⁾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사용 중지 보형물 적극 추천 ... 위험한 가슴 성형』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0월 17일자, SBS 콘텐츠허브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가슴성형 보형물이 사용중지된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769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일베發 ‘빨간 우의 가격설’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의 타격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70	(정정청구) ○○○○○○○ 유한공사 對 스틸데일리
조 정 대 상	『수입 철근, 품질 경쟁력 강화로 ‘정면승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분석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철강 제품이 품질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강철, “철근 품질 지적 부당”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분석기획면)

2016서울조정 1771	(반론청구) 서울서초경찰서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 제식구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여대생 성추행 혐의 경찰관을 수사한 신청인 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실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72, 1773	(각 정정청구) 광상도 對 TV조선 ⁽¹⁷⁷²⁾ , 인터넷 TV조선 ⁽¹⁷⁷³⁾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몰랐다 … 있을 수 없는 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25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직접 유출할 수도 있다고 신청인이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몰랐다 … 있을 수 없는 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인터넷 TV조선 2016년 11월 9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774	(손배청구) 한○○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남편의 20대 내연녀 머리카락 자르고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주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보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75, 1797	(각 정정청구) ○○○○○○ 對 TV조선 ⁽¹⁷⁷⁵⁾ , 인터넷 TV조선 ⁽¹⁷⁹⁷⁾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의료보험 뺑뺑기 ... 유학생 등친 대형 유학원』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2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학원에서 유학생 의료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76~1778	(각 정정청구) 국군○○○○○부대 對 JTBC ⁽¹⁷⁷⁶⁾ , 인터넷 JTBC ⁽¹⁷⁷⁷⁾ , 인터넷 일 요신문 ⁽¹⁷⁷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1) 뉴스룸 프로그램 『최전방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 군 검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1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면) (2) 뉴스룸 프로그램 『대북 확성기까지 비리 의혹 ... 납품가 80억 뺑뺑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요신문 : 『국방부 대북 확성기 '성능 미달' 사실상 시인? ... 은밀히 장비 교체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군의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 업체선정 의혹 및 가격 부풀리기 비리가 포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79·1780	(각 반론청구) 전남개발공사 對 시사저널 ⁽¹⁷⁷⁹⁾ , 인터넷 시사저널 ⁽¹⁷⁸⁰⁾
조 정 대 상	『전남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사지 내몰렸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9월 9일자 24면~26면, 인터넷 시사저널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남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사지 내몰렸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8일자 24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81·1782	(정정·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선수촌 몰카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여자탈의실 몰래 카메라 촬영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찍은 운동 선수에게 동영상을 폐기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783~1788	(각 정정청구) ○○○○위원회 對 신아일보 ^(1783,1785,1786) , 인터넷 신아일보 ^(1784,1787,1788)
조 정 대 상	(1) 『‘남원○○○’ 염불보다 잣밥(?)』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9월 19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9월 18일자 지방네트워크면) (2) 『○○○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 이유는?』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9월 22일자 16면, 인터넷 신아일보 9월 21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주최하는 축제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관 주도의 축제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춘향제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12월 2일자 20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2일자 지방네트워크면)

2016서울조정 1789, 1790	(각 반론청구) 국가보훈처 외 1인 對 월간조선 ⁽¹⁷⁸⁹⁾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¹⁷⁹⁰⁾
조 정 대 상	『김일성 친척좌익 인사에겐 ‘건국훈장’... 독립운동한 임정 고문 고승은 서훈 불가』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6년 8월호 62면~7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8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친척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6서울조정 1791·1792	(정정·손배청구) 김○○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시흥시 특혜 의혹에 공무원 개입설 일파만파 파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가 모 지자체의 의류수거함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데 특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93, 1871	(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슈핑데일리
조 정 대 상	(1) 『해양수산부도 비선 실세 측근 지원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해운면) (2) 『해양부 3억 5천만원 강제모금 이제 보니 ...』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조타실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소속 산하 재단이 차은택씨와 계약하는데 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해수부 비선 실세 측근 지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해운면) (2) 『해수부 3억 5천만원 강제모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조타실면)

2016서울조정 1794	(정정청구) 류○○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황우석 다시 보기 ... 즐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취재파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황우석 박사 즐기세포 연구팀에서 제 1저자 및 특허 지분을 요구해 갈등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우석 다시 보기 ... 즐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취재파일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95, 1796	(각 반론청구) 배○○ 對 경향신문 ⁽¹⁷⁹⁵⁾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⁹⁶⁾
조 정 대 상	『검찰 ‘특수부 검사’ 전원 투입』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0월 25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건설 사업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1월 1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98	(반론청구) 정○○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백남기 농성장의 한 대자보를 반박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故 백남기 씨 농성장의 흡연장에 대자보를 붙여 반말로 청소년의 흡연을 문제 삼으며 강압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99·1800, 1811~1818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 ^(1799·1800) , 뉴스엔 ^(1811·1812)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1813·1814) , 이슈타임 ^(1815·1816) , 헤럴드POP ^(1817·181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면) 외 1건 • 뉴스엔 : 『김○○, 3월 폭행 사건 이틀전 뺑소니 검거 감사패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방송면) 외 1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 김○○ 측 “폭행 사건 징역,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중”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가화제면) • 이슈타임 :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집행 유예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면) 외 1건 • 헤럴드POP : 『김○○ 측 “불미스러운 일 죄송,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다름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먼저 맥주를 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조선 : 『[김○○ 측 “폭행 사건 물의 죄송 … 억울한 부분 항소 고려중”(입장전문)],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연예면) • 뉴스엔 : 『(정정보도문)김○○ 측이 주장한 A양과 술자리 상해사건 전말 “의도 치않아, 항소준비”/김○○, 3월 폭행 사건 이틀전 뺑소니 검거 감사패 받았다 [이슈와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방송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정정보도문] 김○○ 측 “폭행 사건 징역,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중”(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연예면) • 이슈타임 : 『[정정보도]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집행 유예 선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연예스포츠면) • 헤럴드POP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방송면)
2016서울조정 1801·1802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인협
조 정 대 상	『국회 국정감사의 권위 땅바닥에 … “졸고 자고 하품은 예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피감기관의 관계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 도중 잠이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회 국정감사의 권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1803, 1824~1826	(각 정정청구) 원○○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¹⁸⁰³⁾, 헤럴드경제⁽¹⁸²⁴⁾, 한겨레⁽¹⁸²⁵⁾, 인터넷 한겨레⁽¹⁸²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럴드경제 : 『감희 날 검문? 최순실, 靑 경호 책임자 경질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6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28일자 사회면) • 한겨레 : 『최순실, 행장관 차 타고 청와대 수시로 드나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를 출입하는 최순실 씨를 일선 경찰들이 검문검색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경질성 인사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헤럴드경제, 한겨레/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2면)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804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뉴스스
조 정 대 상	『복지관장이 구의원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살포했다가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의원인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복지관장이 구의원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살포했다가 적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805~1808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¹⁸⁰⁵⁾ , 조선닷컴 ⁽¹⁸⁰⁶⁾ , 파이낸셜뉴스 ⁽¹⁸⁰⁷⁾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⁸⁰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코레일 파업 한 달, 시민이 참아줄테니 安全 우선』 제하의 사실 (2016년 10월 25일자 35면, 조선닷컴 10월 25일자 오피니언면) 파이낸셜뉴스 :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4일자 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2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진행하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809·1810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재난방송 주관사’ KBS, 경주 지진때도 드라마 내보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진 재난방송을 요청받고도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819, 1823	(각 반론청구) 황○○ ⁽¹⁸¹⁹⁾ , 박○○ ⁽¹⁸²³⁾ 對 엠스플뉴스
조 정 대 상	『김○○ 한화 2군 ‘인권 침해’ 지시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한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이 2군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820, 1872~1874, 1976~1985, 1997,1998	(각 정정청구) ○○○○○○ 對 뉴스1코리아 ⁽¹⁸²⁰⁾ , 노컷뉴스 ⁽¹⁸⁷²⁾ , 아시아경제닷컴 ^(1873,1980) , 인터넷 경향신문 ⁽¹⁸⁷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¹⁹⁷⁶⁾ , 뉴시스 ⁽¹⁹⁷⁷⁾ , 연합뉴스 ⁽¹⁹⁷⁸⁾ , 브레이크뉴스 ⁽¹⁹⁷⁹⁾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⁹⁸¹⁾ , 일요신문 ⁽¹⁹⁸²⁾ , 온라인 중앙일보 ⁽¹⁹⁸³⁾ , 국제뉴스 ⁽¹⁹⁸⁴⁾ , 축제뉴스 ⁽¹⁹⁸⁵⁾ , 한국공보뉴스 ⁽¹⁹⁹⁷⁾ , 인터넷 CJ헬로비전 ⁽¹⁹⁹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하강시설 ‘○○○’ 안전 점검에서 18개 수리, 2개 이용 제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 가량 수리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전국 ○○○ 중 절반이 안전에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전국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은 위험 노출 … 국민안전처 점검 결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보화면) • 뉴시스 : 『전남도, ○○○ 재난 관리 대상 신규 지정』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광주/전남면) • 연합뉴스 : 『전남도, ○○○ 안전 관리 제도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외 8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 사고가 속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노컷뉴스/내용 : 기사수정)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연합뉴스, 브레이크뉴스, 아시아투데이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축제뉴스, 한국공보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일요신문, 국제뉴스, 인터넷 CJ헬로비전/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기사 제목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점검에서 18개 수리·2개 이용제한』로 수정 (2016년 11월 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절반가량 수리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기사 제목을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이 안전에 문제 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로 수정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안전처 “전국 하강 레포트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전국 하강 레포트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2월 5일자 정보화면) • 뉴시스 : 기사 제목을 『전남도, 하강 레포트 시설 재난 관리 대상 신규 지정』로 수정 (2016년 12월 5일자 광주/전남면) • 연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트 시설 안전 관리 제도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	--

2016서울조정 1821·1822	(정정·손배청구) 울산광역시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 공동주택 비리 몸통 김기현 시장 거론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전국면) (2) 『김기현 울산시장이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울산시장이 지역 공동주택 입찰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울산 공동주택 관련 울산시장에 대한 보도를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부산/경남면)

2016서울조정 1827~1834, 1835~1842	(각 정정청구) 사광기 ^(1827~1834) , (주)세계일보 ^(1835~1842)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1827,1835) , 아시아경제닷컴 ^(1828,1838) , 인터넷 서울경제 ^(1829,1830,1836,1837) , 조선닷컴 ^(1831,1839) , 오마이뉴스 ^(1832,1840)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833,1841) , 스타서울TV ^(1834,184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윤희 문건 터뜨렸던 세계일보, 수상쩍은 최순실 인터뷰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Red면) • 아시아경제닷컴 : 『최순실 인터뷰, 통일교 통해 성사說 ... 당사자는 부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경제 : (1)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 받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2) 『최순실 ‘통일교 S씨’ 伊 대사로 추천했었다. 조응천 반대로 무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조선닷컴 : 『최순실 · 정윤희와 세계일보의 묘한 인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치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특급 정보 7~8개 공개되면 대통령 하야” 통일교는 “국정농단” 알고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스타서울TV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각종 의혹 쏟아져 ...“정유라,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인 듯”』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와 인터뷰를 한 것이 전(前) 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서울경제/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오마이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서울경제,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스타서울 TV/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조선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9일자 Red면) • 아시아경제닷컴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정치면)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통일교는 ‘국정농단’ 알고 있었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843	(정정청구) ○○○○○○○○○○ 對 SBS-TV
조정 대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가려진 죽음 - ○○시립○○○ 129명 사망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서 인권유린 및 사망자 은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844	(정정청구) ○○○○○복지관 對 일다
조 정 대 상	『“가임기 여성은 팔라야” 상사의 발언이 농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노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가임기 여성은 팔라야” 상사의 발언이 농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노동면)
2016서울조정 1845·1846	(정정·손배청구) 흥○○ 對 종로저널
조 정 대 상	『유독가스와 악취로 못살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공소가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악취 풍겨 주민들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4면)
2016서울조정 1847~1863	(각 반론청구) 김경재 對 뉴시스⁽¹⁸⁴⁷⁾, 인터넷 이데일리⁽¹⁸⁴⁸⁾, 아주뉴스⁽¹⁸⁴⁹⁾, 조선일보⁽¹⁸⁵⁰⁾, 조선닷컴⁽¹⁸⁵¹⁾, 연합뉴스⁽¹⁸⁵²⁾, 한경닷컴⁽¹⁸⁵³⁾, SBS 콘텐츠허브⁽¹⁸⁵⁴⁾, 인터넷 헤럴드경제⁽¹⁸⁵⁵⁾, 쿠키뉴스⁽¹⁸⁵⁶⁾, 인터넷 MBN⁽¹⁸⁵⁷⁾, 매경닷컴⁽¹⁸⁵⁸⁾, 인터넷 연합뉴스TV⁽¹⁸⁵⁹⁾, 인터넷 시사저널⁽¹⁸⁶⁰⁾, 인터넷 스포츠경향⁽¹⁸⁶¹⁾, 인터넷 서울신문⁽¹⁸⁶²⁾, 인터넷 파이낸셜뉴스⁽¹⁸⁶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취업알선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취업 알선’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아주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혐의 피소 당해 ... 무고로 맞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고발했던 고소인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12면, 조선닷컴 10월 12일자 사회면) 외 1건 • 연합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 김 “무고로 고소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한경닷컴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 김 “무고로 고소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취업 알선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뉴시스, 조선일보, 조선닷컴/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연합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이데일리, 아주뉴스, 한경닷컴,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인터넷 MBN, 매경닷컴,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시사저널, 인터넷 스포츠경향,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사기 혐의 고소인, 고소 취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당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고발했던 고소인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2016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 한경닷컴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2016서울조정 1864·1865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SBS-TV
조정 대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딸 ○○이』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분만 과정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가사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딸 ○○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7년 1월 16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866·1867, 1877·187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한국일보 ^(1866·1867) , 조선일보 ^(1877·187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마사회 사업에도 崔 입김 미쳤나 ... 차은택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5면) • 조선일보 : 『62억→100억, 89억→110억 ... 차은택이 수주하면 예산 꺾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5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차은택 커넥션의 영향으로 마사회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A02면)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A2면)
2016서울조정 1868	(정정청구)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울원자력본부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한울원전 온배수 사용한 수영장 피부병 속출 -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소포제를 사용했고 이를 수 십년간 무단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한울원전 온배수 사용한 수영장 피부병 속출 -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869·1870	(정정·손배청구) (사) ○○○○○중앙회 외 2인 對 JTBC
조 정 대 상	저녁뉴스820 프로그램 『불참자에게도 위생교육 유료증』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모 지회가 유흥업소 위생교육을 하면서 돈을 받고 불참자를 이수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돈 받고 유료증 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3일자)

2016서울조정 1875·1876	(정정·손배청구) 정○○ 對 비아이코리아
조 정 대 상	『산업은행, 차세대 PMO 선정과정 ‘불공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금융IT면)
신청인 주장	모 은행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관리감독할 업체 선정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업은행, 차세대 PMO 선정과정 ‘불공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금융IT면)

2016서울조정 1879	(반론청구) ○○○○○○○○노동조합 ○○지부 ○○○○지회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회사 상장 폐지 몰아가는 ○○페인트 폭력 노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파이낸셜컨슈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페인트 상장 폐지는 사측 불법 행위 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증권면)

2016서울조정 1880~188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N ^(1880·1881) , 인터넷 MBN ^(1882·1883)
조 정 대 상	리얼다큐쇼 프로그램 『이천년의 신비, 혼을 풀어놓는 사람들』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5월 12일자, 인터넷 MBN 5월 12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불상을 다른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강경 부처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11월 23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884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디스패치뉴스
조 정 대 상	『특혜가 아니라 인연? ... YG, 수상한 복합 문화단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5일자 TODAY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모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특혜가 아니라 인연? ... YG, 수상한 복합 문화단지’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5일자 TODAY면)

2016서울조정 1885, 1886, 1891~1898 1901~1908, 1914~1917,	(각 정정청구) 나○○^(1885,1886), ○○○○○○○○○○ (주)^(1895,1896), ○○○○○○ ○○ (주)^(1901,1902), 조○○^(1903,1904), 방○○^(1914,1915), 이○○^(1916,1917) 對 시사브 리핑^(1885,1895,1902,1904,1915,1917), 프라임경제^(1886,1896,1901,1903,1914,1916) (각 정정·반론청구) 김○○^(1891~1894), ○○○○○○○○○○ (주)^(1897·1898) 의 왕도시공사^(1905~1908) 對 시사브리핑^(1891·1892,1897·1898,1907·1908), 프라임경제^(1893· 1894,1905·190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사브리핑 : 『잡음 끊이지 않는 ‘○○시 도시개발 사업’, 김○○ ○○시장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문제의 핵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정치면) 프라임경제 : 『김○○ ○○시장 둘러싼 ‘특혜의혹’... 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지자체 산하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 해당 지자체장의 특혜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프라임경제/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각 조정불성립결정 (시사브리핑)

2016서울조정 1887, 1888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중앙일보⁽¹⁸⁸⁷⁾, 온라인 중앙일보⁽¹⁸⁸⁸⁾
조 정 대 상	『방사청, 한국형 헬기 수리온 엔진 결빙문제 숨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9월 24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서울조정 1889, 1890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KBS-1TV ⁽¹⁸⁸⁹⁾ , KBS미디어 ⁽¹⁸⁹⁰⁾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최순실 집에서 100m ... 靑경호원 숙소 “의문”』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11월 6일자, KBS미디어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경호실이 최순실 씨 거처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경호원 숙소를 정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靑경호원 숙소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6년 12월 1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899·1900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최태민씨, 박 대통령·교회 앞세워 이권 챙겼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시사면) (2) 『최태민, 朴대통령 지렛대 삼아 한국교회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을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09·1910	(반론·손배청구) 박○○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공무집행 방해? 경찰 “과잉 대응” 덜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 누명까지 씌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11~1913	(각 반론청구) ○○회계법인 對 뉴스1코리아 ⁽¹⁹¹¹⁾ , 서울신문 ⁽¹⁹¹²⁾ , 인터넷 서울신문 ⁽¹⁹¹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 제2의 ○○회계법인 되나 ... 대우조선 사태로 최대 위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경제면) • 서울신문 : 『○○, 대우조선 '분식' 유탄 ... 회계법인 '빅4 체제' 깨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22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모 기업의 분식회계를 공모 혹은 방조했으며, 내부 인력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코리아 : 『○○, 제2의 ○○회계법인 되나 ... 대우조선 사태로 최대 위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2일자 금융증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 대우조선 '분식' 유탄 ... 회계법인 '빅4 체제' 깨지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1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918, 1919	(각 정정청구) 조윤선 외 1인 對 한겨레 ⁽¹⁹¹⁸⁾ , 인터넷 한겨레 ⁽¹⁹¹⁹⁾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윤선의 정무수석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정치면) (2) 『문체부 장관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주역이었다니』 제하의 사설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27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3) 『문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 ... 기록 감추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

2016서울조정 1920	(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국정원 직원 사칭 16년간 여성 역대 돈 뜯은 '진드기男』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4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 관련 사건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21	(정정청구) (주) ○○○○○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1) 『경기 포천,○○○ 주배관 공사 “한국가스공사 표준시방서” 무시, 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2) 『포천 ○○○ 주배관 공사, 표준시방서 무시한 “괴” 문건 나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부실 공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기포천 L.N.G 주배관 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22·1923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KBS 뉴스9 시청률과 박근혜 지지율은 연동?』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KBS 뉴스9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BS 뉴스 시청률과 박근혜 지지율 연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924·1925, 1942~1945	(각 정정·손배청구) 나○○ 對 TV조선 ^(1924·1925,1942·1943) , 인터넷 TV조선 ^(1944·1945)
조 정 대 상	(1) 뉴스쇼판 프로그램 『군 장성의 황당 성교육 “성희롱 피하려면 빨리 결혼해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3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3일자 뉴스면) (2) 뉴스7 프로그램 『군 장성의 황당 성교육 “성희롱 피하려면 빨리 결혼해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4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단장 재직 시 소속 여군 대상 교육에서 여성을 상품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軍 장성의 황당 성교육”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26~1929	(각 정정·손배청구) 류○○ 對 경향신문 ^(1926·1927) , 인터넷 경향신문 ^(1928·1929)
조 정 대 상	『‘박정희 미화’ 소설 쓴 류○○, 박 대통령이 만든 재단 이사였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1월 8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이 차은택과의 인연 때문이고 최순실의 딸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2월 14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930~193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1930·1931) , 한국경제 ^(1932·193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안봉근, 장차관의 대면보고 가로막고, 이재만,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4면) 한국경제 : 『이○○ 전 인사처장 직격 인터뷰 ‘박근혜 정부 실패는 측근들 인사 전횡 탓’』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정부 실패는 청와대 특정 인사들의 인사전횡 탓이라고 인터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34·1935	(정정·손배청구) 전○○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누가 서른살 먹은 여자와 결혼하겠나”… 한자 수업에 여성 혐오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강의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누가 서른살 먹은 여자와 결혼하겠나?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36~1939	(각 정정·반론청구) (사) ○○○○선교회 외 1인 對 인터넷 CTS기독교TV
조 정 대 상	『최태민 관련 (1)』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전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 단체가 최태민씨와 유사한 이단 사이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선교회 및 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전체면)
2016서울조정 1940, 1941	(각 정정청구) 레이어소시에이트 對 동아일보 ⁽¹⁹⁴⁰⁾ , 동아닷컴 ⁽¹⁹⁴¹⁾
조 정 대 상	『한식 세계화 사업 곳곳에 ‘최순실 그림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8면, 동아닷컴 11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잡지사가 주관한 해외 한식 홍보 행사에 미르재단이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946·1947	(정정·손배청구) 김○○ 對 월간큐스포츠
조 정 대 상	『김○○ 편집장은 대한○○연맹 전무이사를 꿈 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면, 5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연맹 임원인 신청인이 전무이사 자리 욕심에 연맹 수석부회장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48	(정정청구) 구○○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막내 아들인 신청인이 부모님 집을 두고 큰 형님과 상속 다툼을 벌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49·1950	(정정·손배청구) 김○○ 對 JTBC
조 정 대 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추적 2탄! 최순실 게이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최순실씨가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및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추적 2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2일자)

2016서울조정 1951~1954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SBS-TV ^(1951·1952) , SBS 콘텐츠허브 ^(1953·1954)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수술 마친 중환자 누워있는데 ... 난동부린 간호사』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1월 7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간호사인 신청인이 수술을 마친 중환자의 침대를 흔들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수술 마친 중환자 누워있는데 ... 난동부린 간호사』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55~1958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중앙일보 ^(1955·1956) , 온라인 중앙일보 ^(1957·1958)
조 정 대 상	『청와대, 마사회장 연임 불가 통보』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11월 1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1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 관련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59·1960	(정정·손배청구) ○○○○ (주)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김기현 울산시장이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모 지자체와 유착하여 급성장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61	(정정청구) (주) ○○○○○○○○○ 對 더벨
조 정 대 상	『○○○○ 생명과학, 줄줄 샌 투자금』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아티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약 개발 사업의 뚜렷한 성과도 없이 투자금을 허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962, 1963	(각 정정청구) 정동영 對 한국경제 ⁽¹⁹⁶²⁾ , 한경닷컴 ⁽¹⁹⁶³⁾
조 정 대 상	『‘트럼프 외교’ 나선 정동영 박 대통령 해야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11월 18일자 1면, 2면, 한경닷컴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드너 미국 상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히 해야하도록 미국이 역할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12월 9일자 2면, 한경닷컴 12월 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964·1965	(정정·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노조는 무조건 타도? 위험한 코레일 사장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오피니언면) (2) 『‘할인 폐지’로 떠돈 번 코레일, SRT 뜨자 ‘울며 겨자 먹기’ 할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경제정책면) (3) 『코레일 인력유출 심각 ... 낙하산 사장 독단에 ‘엑소더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경제일반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독단적인 경영 때문에 핵심 인재들이 빠져 나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66, 1967	(각 손배청구) 송○○ 對 MBN⁽¹⁹⁶⁶⁾, 인터넷 MBN⁽¹⁹⁶⁷⁾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뉴스초점 - ‘나’를 사랑합니다』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만든 웹툰을 뉴스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MBN 100만원, 인터넷 MBN 150만원)
2016서울조정 1968, 1969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채널A⁽¹⁹⁶⁸⁾, 인터넷 채널A⁽¹⁹⁶⁹⁾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崔, 대통령과 전용기 동승” 증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1월 15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여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970, 1971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1) 『벤처에도 최순실 입김? 정유라에 “名馬” 판 벤처기업, 정부·대기업서 수 십억 특혜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2) 『신생업체가 순식간에 “창조 경제 주역”... 성장 배경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명마를 헐값에 판 대가로 정부 및 대기업에서 수십억 특혜를 받고 급성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최순실 게이트] 신생 벤처기업 1사 특혜 지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72, 1973	(각 정정청구) (사) ○○○○○협회 對 옵티위클리 ⁽¹⁹⁷²⁾ , 인터넷 옵티위클리 ⁽¹⁹⁷³⁾
조 정 대 상	『무리한 정관 개정 ... 가까운 시간·회비만 ‘평평’』 제하의 기사 (옵티위클리 2016년 10월 15일자 1면, 인터넷 옵티위클리 10월 18일자 기관단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 없이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옵티위클리 2016년 12월 15일자 1면, 인터넷 옵티위클리 12월 16일자 기관단체면)
2016서울조정 1974	(손배청구) ○○○○교회 외 1인 對 kidok.com
조 정 대 상	『“순교적 삶과 순교 증거하는 일 매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타 지역 노회에 불법 가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16서울조정 1975, 2033, 2065, 2074	(정정청구) 임○○ 對 이투데이⁽¹⁹⁷⁵⁾ 임○○ 외 1인 對 소비라이프⁽²⁰³³⁾, 한국금융⁽²⁰⁶⁵⁾, 아시아경제닷컴⁽²⁰⁷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투데이 :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증권/금융면) 외 2건 • 소비라이프 : 『금감원, 전 정무위 국회의원 아들 ‘특채’… 부원장보 전격 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뉴스면) • 한국금융 : 『금감원,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경제면) • 아시아경제닷컴 : 『[기자수첩] 금감원 특혜 채용 의혹은 ‘현재 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모 기관에 채용된 것이 해당 기관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86	(정정청구) (주)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1인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원인이 김미화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87~1989	(정정·반론·손배청구) 권○○ 對 e글로벌이코노믹
조 정 대 상	『朴 대통령 지지율 사실은 38.4%, 최순실 사태 드디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데 ... 박근혜 지지 박사모의 긴급 성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고 유병언씨의 과적 지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6서울조정 1990~1993, 1996	(각 정정·손배청구) 광상도 對 TV조선 ⁽¹⁹⁹⁰⁻¹⁹⁹¹⁾ , 인터넷 TV조선 ⁽¹⁹⁹²⁻¹⁹⁹³⁾ (정정청구) 네이버 ⁽¹⁹⁹⁶⁾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최태민 묘, 김○○ 전 회장 공동소유 땅에 …』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2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네이버 1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은 것이 최순실씨의 영향 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취하 (네이버/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최태민 묘, 김○○ 전 회장 공동소유 땅에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및 VOD 재편집 (인터넷 TV조선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네이버 12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94, 1995	(각 반론청구) 장정숙 對 국민일보 ⁽¹⁹⁹⁴⁾ , 인터넷 국민일보 ⁽¹⁹⁹⁵⁾
조 정 대 상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6년 11월 21 일자 27면, 인터넷 국민일보 11월 2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고 확 대 해석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민일 보 2016년 12월 30일자 기독교뉴스면, 인터넷 국민일보 12월 30일자 시사면)

2016서울조정 1999~2016	(각 정정청구) 장○○ 對 동아일보 ⁽¹⁹⁹⁹⁾ , 동아닷컴 ⁽²⁰⁰⁰⁾ , 서울신문 ^(2001,2002) , 인터넷 서울신문 ^(2003,2004) , 세계일보 ⁽²⁰⁰⁵⁾ , 세계닷컴 ⁽²⁰⁰⁶⁾ , 파이낸셜뉴스 ⁽²⁰⁰⁷⁾ , 인터넷 파이 낸셜뉴스 ⁽²⁰⁰⁸⁾ , 한국일보 ^(2009,2010) , 인터넷 한국일보 ^(2011,2012) , 연합뉴스 ^(2013,2014) , 오 마이뉴스 ⁽²⁰¹⁵⁾ , KBS미디어 ⁽²⁰¹⁶⁾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정상회의까지 주무른 차은택 … 용역업체 선장 대가 수억 뺏겨』 제 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10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정치면) • 서울신문 : (1) 『정부 새 상징도 ‘최순실 라인’ 작품』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9일자 정치면) (2) 『애초부터 ‘최순실표 태극’ 정해 놓고 오방색도 넣으려 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9일자 정치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 『송성각도 사표 ... 문체부 제 궤도 오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5면, 세계닷컴 10월 31일자 정치면) • 파이낸셜뉴스 : 『‘최·차 라인’ 정리한 문체부, 정상화 속도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6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31일자 문화면) • 한국일보 : 『인사·사업·예산 주무른 ‘문화계 황제’ 차은택』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5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생활면) 외 1건 • 연합뉴스 :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라인 정리 ... 정상화 이뤄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최신기사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차은택 씨의 은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KBS미디어/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동아일보, 동아닷컴,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세계일보, 세계닷컴,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정부 새 상징도 ‘최순실 라인’ 작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송성각도 사표 ... 문체부 제 궤도에 오르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사고/알림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라인 정리 ... 정상화 이뤄지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30일자 최신기사면) • 오마이뉴스 : 『통합된 정부 상징 체계 로고, 소름끼치는 이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9일자 정치면) • KBS미디어 : 『명쾌한 해명 없이...“의혹 다 털고 투명한 문체부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2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2017	(손배청구) 권○○ 對 티비리포트
조 정 대 상	『정준영 사건, 결국 상처만 남기고 ‘무혐의 → 용서’ 종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의 전 여자 친구인 신청인을 나쁜 여자로 매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18	(반론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예장 ○○ 김○○ 총회장, 시국 관련 담화문 발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교계교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예장 ○○ 김○○ 총회장, 시국 관련 담화문 발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7일자 교계교단면)

2016서울조정 2019	(정정청구) 신○○ 對 영등포신문
조 정 대 상	(1) 『국토부, 주민의견서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로 볼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면) (2) 『문래○○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주 협의회 추진 급물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1면) (3) 『조합 방식 주민의견서, 과반수 미달로 반려"/"토지 등소유자 방식, 사업 시행자 명칭 승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추진중인 재개발 추진 방식이 해당 지역 주민 동의 미달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20·2021	(정정·손배청구) 정○○ 對 귀금속경제신문
조 정 대 상	『2016년 11월 둘째 주 업종브리핑』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8면)
신청인 주장	모 보석 감정원이 폐업하자 신청인이 동일 상호로 개업하고 상호 등록출원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2022~2029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경향신문 ^(2022·2023) , 인터넷 경향신문 ^(2024·2025) , TV조선 ^(2026·2027) , 인터넷 TV조선 ^(2028·202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단독]김종 전 차관 인맥 ... 태권도협회까지 뺏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6일자 사회면)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김종, 측근 이용해 하위 체육단체 장악 정황』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1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1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인사 정황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향신문 : 『[단독]김종 전 차관 인맥 ... 태권도협회까지 뺏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12월 30일자 사회면) TV조선 : 프로그램 『김종, 측근 이용해 하위 체육단체 장악 정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3일자, 인터넷 TV조선 23월 23일자 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2030~2032	(정정·반론·손배청구) (의) ○○○의료재단 외 1인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병원 갈등①] 강남구, ○○병원 운영업체 배임 횡령으로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급여 횡령·문서 위조 ... 복마전된 ‘○○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요양병원 갈등②] 불법·편법 병원 옹호하는 이상한(?) 강남구의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협의않고 왜 고발부터 하나”질책 ... 구의원님들 ‘수상한(?)’ 업체 옹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관할구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2016서울조정 2034, 2035, 2081	(각 정정청구) 장○○ 對 월간중앙 ⁽²⁰³⁴⁾ , 온라인 중앙일보 ⁽²⁰³⁵⁾ , 동아닷컴 ⁽²⁰⁸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중앙 : 『고유의 석채(石彩) 비밀 푸는 게 위작 가리는 핵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58면~164면, 온라인 중앙일보 11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이○○ 한때 月30 ~ 40점 多作 ... 작품 관리 안돼 위조범들 “표적”』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화백 작품 관련 위조 감정서 자료 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월간중앙,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피신청인 사과, 동아닷컴/사유 : 당사 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36·2037	(정정·손배청구) 심재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北 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 위원장』 제하의 사설 (2016년 10월 14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론을 비난하는 등 반미 친북을 주장해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2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38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윤선 장관 청문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직원 ‘갑질’ 멍드는 서희덕 비롯 한 국음반산업협회 회원들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정치면) (2) 『노태강 “난 억울한 희생양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인사 좌천에 최순실 개입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3일자 정치면) (3) 『최순실 ‘왜’ 문화체육관광부 시켜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당선자 회장 승인 반려 지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문화관광부가 최순실과 차은택의 지시로 한국음반산업협회장 당선자의 승인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39	(정정청구) 한국산업은행 외 1인 對 모바일한경
조 정 대 상	『최순실의 금융부역자들1- 임종룡과 이동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모바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모 기업의 퇴출에 앞장섰고 회장 임명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40~2043	(각 정정·손배청구) 염동열 對 동아일보 ^(2040·2041) , 동아닷컴 ^(2042·2043)
조 정 대 상	『“올림픽 배후 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땅』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1월 23일자 8면, 동아닷컴 11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평창올림픽 배후 도시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신청인과 최순실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땅』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2월 30일자 투데이면, 동아닷컴 12월 29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44	(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대구 찾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쓴소리’ 쏟아진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45·204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건강 검진 두려운 여성들 … 수면내시경 받다 성추행 당하면 어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의 성추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검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2047	(정정청구) 구○○ 對 스포츠Q
조 정 대 상	『대표팀 총감독 ‘무자격 논란’, 돌로 쪼개진 ○○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아마스포츠편)
신청인 주장	모 종목 국가대표 총감독인 신청인이 부정으로 단종을 발급받은 무자격 지도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구○○ ○○대표팀 총감독 논박, “국가기관 결정까지 났는데, 언제까지 자격 논란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1일자 아마스포츠편)

2016서울조정 2048·2049	(정정·손배청구) 김기춘 對 고발뉴스닷컴
조 정 대 상	(1) 『[카드뉴스] 최순실 재산추적 … 김기춘은 거기서 뭐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9일자 이상호의 사실은면) (2)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 사무실로 이용 … 무슨 관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이상호의 사실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실장 취임 직전까지 최순실 소유 건물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최순실과 긴밀히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50~2052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 ○○○○ 對 백세시대
조 정 대 상	『대한○○회를 흔드는 일을 당장 그만 두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추진하는 노인 건강 관련 사업이 노인들을 돈으로 현혹하는 황당한 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53, 2054, 2084	(각 정정청구) 목○○ 對 KBS-1TV ⁽²⁰⁵³⁾ , 인터넷 경향신문 ⁽²⁰⁵⁴⁾ , 오마이뉴스 ⁽²⁰⁸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차은택 사단, 국립아시아전당 인사도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2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부패옹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최순실-차은택 일당, ‘광주’ 유린하고 ‘평창’으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공연장 전시 예술감독에 임명된 것이 차은택과 당시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오마이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KBS-1TV/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기사 수정)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부패옹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6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목○○ 교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3일자 지역면)

2016서울조정 2055·2056	(정정·손배청구) 임○○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1) 『임○○ ○○시 문화원장 판소리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전국면) (2) 『임○○ ○○시 문화원장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전국면) (3) 『○○시, 꿀볼건 무형문화재 지정 행정 … 임○○ 문화원장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소리 완창 공연을 한 사실이 없고, 사사 이력이 불명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57~2060, 2113~2116	(각 정정청구) (주) 세계일보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²⁰⁵⁷⁾ , 인터넷 국민일보 ⁽²⁰⁵⁸⁾ , 인터넷 이데일리 ⁽²⁰⁵⁹⁾ , e머니에스 ⁽²⁰⁶⁰⁾ , 온라인 중앙일보 ⁽²¹¹³⁾ , 조선닷컴 ⁽²¹¹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²¹¹⁵⁾ , 인터넷 서울신문 ⁽²¹¹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네티즌, 최순실 사진 속 콘센트 이상, 독일이 아닌 덴마크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생활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네티즌 수사대 ‘최순실 추적’나섰다 …』 독일 아닌 덴마크서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시사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최순실 인터뷰 장소 독일 아니다,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정치면) • e머니에스 : 『최순실 인터뷰, 독일 아닌 덴마크 네티즌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뉴스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최순실 인터뷰 장소 독일 아니다, 네티즌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최순실 인터뷰가 독일이 아닌 덴마크에서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바로잡습니다>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생활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시사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e머니에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생활문화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2016서울조정 2061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최순실 공천 의혹 의원들 발끈』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것이 최순실 덕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6서울조정 2062·2063	(정정·손배청구) ○○○○ (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아파트 전기료 절감 사업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공하는 LED교체 공사의 전기료 절감 효과는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64	(정정청구) 박○○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정유라 지도 감독, 미성년 성폭행 피소 ... 최순실씨 측근 승마 협회 간부가 징계 막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8면)
신청인 주장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최순실 씨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66~2071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미디어스 ^(2066·2067) , 인터넷 위클리옴 ^(2068·2069) , 노컷뉴스 ^(2070·207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진선미, KBS·MBC 경찰 수사 요청한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옴 : 『“진선미, KBS·MBC경비원 동원해 노조에 물리력 행사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정치면) • 인터넷 노컷뉴스 : 『공영방송 KBS의 ‘공정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사 경비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노조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노컷뉴스/기사수정,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위클리오늘/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KBS시큐리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오늘 : 『“KBS시큐리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노컷뉴스 : 『공영방송 KBS의 ‘공정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제하의 기사 중 “9일 오전 〇〇〇 청경들은”을 “〇〇〇 사측은”으로, 보도사진 하단의 자막 내용의 “9일 〇〇〇 신관 천막 철거”를 “8일 〇〇〇 신관 천막 설치”로 각 수정 (2017년 1월 3일자 문화/미디어면)

2016서울조정 2072·2073	(정정·손배청구) 민경욱 對 JTBC
조정 대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5탄, 7시간, 또 다른 팩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전 청와대 대변인인 신청인이 세월호 사고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75~2078	(각 정정·손배청구) 유〇〇 對 TV조선 ^(2075·2076) , 인터넷 TV조선 ^(2077·2078)
조정 대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차은택 ‘KT 광고 모델’ 선정까지 관여』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1월 21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평창올림픽 모 기업 광고 모델로 선정된 것이 차은택씨의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차은택 ‘KT 광고 모델’ 선정까지 관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7년 2월 16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79	(손배청구) 허○○ 對 SBS-TV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돈 챙겨라 ... 줄줄 새는 탈북자 지원금』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탈북자 취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탈북자 직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80	(정정청구) 한○○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유료 방송 발전안 결합 상품 이슈 ... 또 학회 대리전?』 제하의 기사 (2016년 11 월 27일자 ICT/벤처면)
신청인 주장	세미나 사회자인 신청인이 특정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082, 2083	(각 반론청구) 한국공인노무사회 對 시사저널 ⁽²⁰⁸²⁾ , 인터넷 시사저널 ⁽²⁰⁸³⁾
조 정 대 상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사냥꾼’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8월 23 일자 40면, 41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무사의 90%가 회사 측을 대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사냥꾼’의 그림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 넷 시사저널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085~2088	(각 정정·반론청구) 채○○ 對 한겨레 ^(2085·2086) , 인터넷 한겨레 ^(2087·2088)
조 정 대 상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삼성물산의 합병건에 주도적으로 찬성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도 삼성의 발표를 그대로 옮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2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6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2089·2090	(정정·손배청구) 강 ○ 외 8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이상한 장학사, 못 믿을 학폭위』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91·2092	(정정·손배청구) 오○○ 對 연합뉴스TV
조 정 대 상	연합뉴스20 프로그램 『발가벗기고 굶기고 정신병원 환자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학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93·2094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이지경제
조 정 대 상	『[단독] ○○○ “휴게소 수의 계약”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유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95~2102	(각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²⁰⁹⁵⁾ , 월드투데이 ⁽²⁰⁹⁶⁾ , 아시아뉴스통신 ⁽²⁰⁹⁷⁾ , 아시아경제닷컴 ⁽²⁰⁹⁸⁾ , 인터넷 스포츠동아 ⁽²⁰⁹⁹⁾ , 인터넷 YTN ⁽²¹⁰⁰⁾ , 쿠키뉴스 ⁽²¹⁰¹⁾ , 전자신문 인터넷 ⁽²¹⁰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경찰 ‘의경 동원’ 새누리당사 청소, 직권남용·인권침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새누리당 당사, 청소는 경찰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찰 ‘달걀 세레’ 與 당사 물청소 … 시민들 ‘지시자와 새누리까지 싸잡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경찰 ‘새누리당 청소’ 처음이 아니었나 … 지휘관 “그 동안 해오던 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경찰, 새누리당사 청소 논란 … 총괄 지휘관 “전혀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최신뉴스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스포츠동아, 쿠키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인터넷 YTN, 전자신문 인터넷/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경찰 ‘의경 동원’ 새누리당사 청소, 직권남용·인권침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새누리당 당사, 청소는 경찰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찰 ‘달걀 세레’ 與 당사 물청소 … 시민들 ‘지시자와 새누리까지 싸잡아 비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경찰 ‘새누리당 청소’ 처음이 아니었나 … 지휘관 “그 동안 해오던 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9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경찰, 새누리당사 청소 논란 … 총괄 지휘관 “전혀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외 1개 매체

2016서울조정 2103·2104, 2107·2108, 2136, 2137, 2144·2145, 2253, 2263, 2266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본헤럴드 ^(2103·2104) , 인터넷 국민일보 ^(2144·2145) (정정·반론청구) 시사NLive ^(2107·2108) (정정청구) MBC-TV ⁽²¹³⁶⁾ , iMBC ⁽²¹³⁷⁾ , 인터넷 경향신문 ⁽²²⁵³⁾ , 연합뉴스 ⁽²²⁶³⁾ , 인터넷 스포츠서울 ⁽²²⁶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헤럴드 :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단·사이비, 영향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사회면) • 시사NLive :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그들은 왜 대포폰을 사용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6일자, iMBC 12월 6일자 다시보기면) • 국민일보 : 『예정합동, “대통령의 리더십, 국민에게 ‘희망’ 아닌 ‘짐’이 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시사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이끈 ‘특수통’』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秋 “무서운 신정정치 ... 차대통령, 최순실과 심령 대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 『소름끼치는 평행이론 셋 조희팔 X 유병언 X 이영복 = 마스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가 정윤희, 최태민과 함께 활동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본헤럴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시사NLive/사유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연합뉴스, 인터넷 스포츠서울/사유 : 기사수정) • 각 조정불성립결정 (MBC-TV, iMBC) • 조정성립 (국민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Live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인터뷰 오피니언면) • 국민일보 : 『예정합동, “대통령의 리더십, 국민에게 ‘희망’ 아닌 ‘짐’이 됐다”』 제하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 삽입 (2017년 1월 31일자 시사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이끈 ‘특수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秋 “무서운 신정정치 ... 차대통령, 최순실과 심령 대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 『소름끼치는 평행이론 셋 조희팔 X 유병언 X 이영복 = 마스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1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2105, 2106	(각 정정청구) 김○○ 對 법보신문 ⁽²¹⁰⁵⁾ , 인터넷 법보신문 ⁽²¹⁰⁶⁾
조 정 대 상	『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직원 징계하려는 ○○사』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6년 10월 29일자 교계면, 인터넷 법보신문 10월 28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종무원을 성희롱하고 피해 당사자가 문제제기하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09~2112, 2227~2231	(각 정정·반론청구) ○○○○ (주) 對 뉴시스 ^(2109·2110) , 쿠키뉴스 ^(2111·2112) (각 반론청구) 아주뉴스 ⁽²²²⁷⁾ , 메디컬투데이 ⁽²²²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²²²⁹⁾ , 인터넷 베이비뉴스 ⁽²²³⁰⁾ , 컨슈머타임스 ⁽²²³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무허가 ‘○○인삼 ○○○ 홍삼은 홍삼 농축액’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식약처, ‘○○인삼 ○○○ 홍삼 농축액’ 무허가분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메디컬투데이 : 『‘무허가’ 홍삼 농축액 판매 중단·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산업면)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 컨슈머타임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건강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117	(정정청구) (사) ○○○○○○ 외 1인 對 아이굿뉴스
조 정 대 상	『이단 사이버 심각한 사회적 피해 양산 ... “바른 신학 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문화/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 단체가 구원파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회 박○○ 목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30일자 문화/기획면)

2016서울조정 2118·2119	(정정·손배청구) 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프랑스로 입양간 딸, 왜 제주도로 돌아왔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해외입양 보낸 딸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20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스쿨 정○○ 교장, 사기 혐의 법정 구속 돼』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1심 내용을 실명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교육면)

2016서울조정 2121·2122	(정정·손배청구) 양기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사문제를 스님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경기면)

2016서울조정 2123, 2124	(각 정정청구) ○○○○○○○○○○○○○○○사업연합회 對 KBS-1TV ⁽²¹²³⁾ , KBS미디어 ⁽²¹²⁴⁾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100% 무항생제 ... 알고 보니 폐기용 소뼈』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11월 30일자, KBS미디어 11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사골 곰탕이 폐기용 소뼈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25, 2126	(각 정정청구) 민○○ 對 시사저널 ⁽²¹²⁵⁾ , 인터넷 시사저널 ⁽²¹²⁶⁾
조 정 대 상	『“금호-산업은행 커넥션’ 감추려 박○○이 희생양 됐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9일자 75면~77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은행장 재직 시 한 기업과 이면합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등 부정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호-産銀 커넥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2월 21일자 시사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2월 13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2127, 2128	(각 정정청구) (주) ○○○○○○건설 對 이뉴스투데이 ⁽²¹²⁷⁾ , 부자동네타임즈 ⁽²¹²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코스닥 퇴출 ‘○○○○○○○’ 경영권 분쟁 몸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 • 부자동네타임즈 : 『〈단독〉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 경영권 분쟁에 몸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출도 없는 유령회사이고 코넥스 상장도 허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일자 전국면) • 부자동네타임즈 : 『“○○○○○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7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2129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시간에도 관사에 ... ‘대통령 뺨치는’ 공중 보건익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2) 『이 현수막이 내걸린 사연 ‘병역보건 군정 농단 위도 주민 다 죽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안군 ○○면 공중 보건익인 신청인들이 근무 위치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반론보도문] ○○ 내과 공중 보건익, “보건복지부에 이익제기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130·2131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경기도의회 교육청 행정감사, 민원인 소란에 한때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의회 감사장에서 방청객인 신청인이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32·2133	(정정·손배청구) 황○○ 對 코람데오닷컴
조 정 대 상	『○○총회 인사위, 황당한 순환 보직 기습 시도 실패로 끝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고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업무에 무능하고 사생활이 부도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134·2135	(반론·손배청구) 전○○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사노맹 관련 백태웅 교수, 납북자 문제 발제자로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69면)
신청인 주장	1984년 서울대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을 학원프락치 사건이라고 잘못 표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호)

2016서울조정 2138·2139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최태민 파헤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 中情서 압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친정부 활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6일자 시사면)

2016서울조정 2140	(정정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이석기·한상균 석방을” 도 넘은 광장 정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29면)
신청인 주장	광화문 촛불집회장에서 신청인 노조 관계자가 전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우선 순위에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27면)

2016서울조정 2141, 2142	(각 정정청구) 이○○ 對 SBS-TV ⁽²¹⁴¹⁾ , SBS 콘텐츠허브 ⁽²¹⁴²⁾
조 정 대 상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대통령의 시크릿』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1월 19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줄기세포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줄기세포 배양 및 치료’ 관련 알림 보도』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7년 1월 3일자 그것이알고싶다 시청자게시판면)

2016서울조정 2143	(손배청구) 김○○ 對 SBS CNBC-TV
조 정 대 상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포크레인 전복』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촬영하여 방송국에 제보한 포크레인 전복사고 장면을 무단으로 재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146·2147	(정정·손배청구) 정○○ 對 에픽미디어
조 정 대 상	『중편 방송사, ‘최소실 사건’과 ‘박대통령 탄핵 방송 보도지침’ 내려 ... 경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을 ‘중복기자’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실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48~2150	(정정·손배청구) 광상도 對 인터넷 한겨레 ^(2148·2149) (정정청구) 네이버 ⁽²¹⁵⁰⁾
조 정 대 상	『박근혜의 ‘소모품들’ 민정수석 6인의 역사 총정리』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네이버 12월 1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이유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한 무능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기획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상도 전 민정수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7년 1월 13일자 정치면, 네이버 1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151~2222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한겨레 ^(2151·2152) , KBS-1TV ^(2153·2154) , 경인KBS-1TV ^(2155·2156) , SBS-TV ^(2157·2158) , MBC-TV ^(2159·2160) , MBN ^(2161·2162) , TV조선 ^(2163·2164) , YTN ^(2165·2166) , 연합뉴스 ^(2167·2168) , 뉴스1코리아 ^(2169·2170) , 뉴시스 ^(2171·2172) , e머니에스 ^(2173·2174) , 인터넷 경기북부포커스 ^(2175·2176) , 경원일보 ^(2177·2178) , 인터넷 경향신문 ^(2179·2180) , 노컷뉴스 ^(2181·2182) , 데일리팝 ^(2183·2184) , 스타뉴스 ^(2185·2186) , 인터넷 신아일보 ^(2187·2188) , 아시아경제닷컴 ^(2189·2190) , 동두천연천신문 ^(2191·2192) , 인터넷 이데일리 ^(2193·2194) , 인터넷 일간투데이 ^(2195·2196) , 전자신문 인터넷 ^(2197·2198) , 조선닷컴 ^(2199·2200) , e중앙뉴스 ^(2201·2202) , 온라인 중앙일보 ^(2203·2204) , 티브이데일리 ^(2205·2206) , 티비리포트 ^(2207·2208) , HBC한복방송 ^(2209·2210) , 인터넷 TBS ^(2211·2212) , 인터넷 연합뉴스TV ^(2213·2214) , 인터넷 JTBC ^(2215·2216) , wow한국경제TV ^(2217·2218) , KBS미디어 ^(2219·2220) , SBS 콘텐츠허브 ^(2221·222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전국면) • KBS-1TV : 뉴스12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 단속 뒷집』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경인KBS-1TV 11월 6일자 및 KBS미디어 11월 6일자 사회면) 외 4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 ... 눈 감아준 공무원』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6일자 사회면) 외 1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5천톤 불법 채석 ... 군청 직원, 보고도 묵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외 3건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 TV조선 : 3488 프로그램 『조경용 현무암 불법 채석 ... 공무원은 모른 척』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7일자) 외 29개 매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KBS-1TV, 경인KBS-1TV, KBS미디어, SBS-TV, SBS 콘텐츠허브, MBC-TV, MBN /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TV조선, YTN,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뉴시스, e머니에스, 인터넷 경기북부포커스, 경원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노컷뉴스, 데일리팝, 스타뉴스,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경제닷컴, 동두천연천신문,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일간투데이, 전자신문 인터넷, 조선닷컴, e중앙뉴스, 온라인 중앙일보, 티브이데일리, 티비리포트, HBC한북방송, 인터넷 TBS, 인터넷 연합뉴스 TV, 인터넷 JTBC, wow한국경제TV/사유 : 추후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 KBS-1TV : 7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 1월 6일자, KBS미디어 1월 6일자 뉴스면) • SBS-TV : 12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MBN : 프로그램 『현무암 무단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1일자) • TV조선 : 뉴스특급 프로그램 『‘불법 채석 ... 공무원 모른 척’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7일자)

2016서울조정 2223, 2224	(각 정정청구) 박○○ 對 MBC-TV ⁽²²²³⁾ , iMBC ⁽²²²⁴⁾
조정 대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맘카페의 두 얼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9월 25일자, iMBC 9월 2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맘카페의 상업화 권력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맘카페 배너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25, 2226	(각 정정청구) (학) ○○○신학원 對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²²²⁵⁾ , 당당뉴스 ⁽²²²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 『○○대 김○○ 이사장 불신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교회면) • 당당뉴스 : 『○○교 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최○○ 명의의 이사회 담화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에 이사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 『○○대 최○○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감리회종합면) • 당당뉴스 : 『이사장 담화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2232·223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박○○ 후보, 노골적 동창회 선거 드러내 빈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치과계는 지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동창회를 동원하여 모 협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합의보도문] “박○○ 후보, 노골적 동창회 선거 드러내 빈축” 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1일자 치과계는 지금면)
2016서울조정 2234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조 정 대 상	(1) 7시뉴스 프로그램 『박태환 주사, 최순실 연관성 조사』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4일자) (2) 7시뉴스 프로그램 『병원 소개한 VIP 브로커가 열쇠』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명 선수에게 남성 호르몬제를 주사하면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뉴스 프로그램 『「박태환 주사, 최순실 연관성 조사」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5일자)

2016서울조정 2235·223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병든 새우가 팔린다 II』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새우를 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든 새우가 팔린다 II”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0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2237~2240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CBS-TV ^(2237·2238) , 노컷뉴스 ^(2239·2240)
조 정 대 상	교계뉴스 프로그램 『세월호 유병언 일가 계열사 ‘○○○○○’ 진 이유 ... “청와대 있다” 폭로』 제하의 보도 (CBS-TV 2016년 12월 22일자, 노컷뉴스 12월 22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핵폐기물처리 설비 사업을 따낸 것이 청와대의 영향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41·2242	(정정·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삭제’ 조항 확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5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전직 포털사 직원인 신청인이 포털 검색어 순위에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삭제’ 조항 확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7년 1월 13일자 최신기사면)

<p>2016서울조정 2243~2252</p>	<p>(각 추후·손배청구) 나○○ 對 스포츠동아^(2243·2244), 스포츠한국미디어^(2245·2246), 인터넷 한겨레^(2247·2248), 인터넷 한국일보^(2249·2250), MBC-TV^(2251·2252)</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동아 : 『KBA 나○○ 국장·김○○ 차장 대기 발령』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야구면) • 스포츠 한국미디어 : 『연세대 압수 수색 ... 아마 야구 진학 비리 이번에는 밝혀질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스포츠야구면) • 인터넷 한겨레 : 『회장 선거마저 고성·몸싸움으로 얼룩 ... 야구협회 ‘진흙탕 내홍’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4일자 스포츠야구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입시비리 의혹 침묵하던 박상희 대한야구협회장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스포츠면)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누가 정유라를 승마공주로 만들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9일자)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고교선수들의 경기실적 증명서 조작을 지시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스포츠동아, 스포츠 한국미디어,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MBC-TV/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미이행)</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동아 : 『‘대한○○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야구면) • 스포츠 한국미디어 :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야구면) • 인터넷 한겨레 : 『‘대한야구협회 나진균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0일자 스포츠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스포츠면)
<p>2016서울조정 2254</p>	<p>(정정청구) (주) ○○○○○○○○○○○○ 對 시사위크</p>
<p>조 정 대 상</p>	<p>『○○국내 홍보사 대표,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 재단’서 한솔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p>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회사가 서울시 관련 사업 홍보를 맡은 것이 회사 대표와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6서울조정 2255·2256	(각 정정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²²⁵⁵⁾ , 미디어펜 ⁽²²⁵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하태경 의원, 황교안과 격한 감정 싸움에 샷대질까지 ... “촛불에 타죽고 싶냐” vs “함부로 말하지 마”』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법&이슈면) • 미디어펜 : 『하태경의 험박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샷대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법&이슈면) • 미디어펜 :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257·2258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석연찮은 ○○○○ 학원 분리 과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가 이전 대표의 성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보습학원을 인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석연찮은 ○○○○ 학원 분리 과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26일자 교계면)
2016서울조정 2259	(반론청구) (주) ○○○○○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저녁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의 밥상 급식!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량 식자재로 만든 식품을 학교에 공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60·2261	(정정·손배청구) 김미화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연합뉴스,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청인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미화 씨 논문 표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4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2262	(정정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대한변협 사법부 견제 미온적 ... 국민 사법정책 참여 기회 잃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소액사건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대법원 규칙 개정 과정에서 신청인 협회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대한 변협 “소액사건 심판 개정 대응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264, 2265	(각 정정청구) 안○○ 對 TV조선 ⁽²²⁶⁴⁾ , 인터넷 TV조선 ⁽²²⁶⁵⁾
조 정 대 상	3488오늘! 프로그램 『가짜를 진짜처럼 ... 고가 외제차, 폐차로 둔갑시켜 밀수출』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9월 30일자, 인터넷 TV조선 9월 3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도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로 입건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부산중재부

2016부산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주) ○○○○○ 對 국제신문 ^(1·2) , 인터넷 국제신문 ^(3·4)
조 정 대 상	『○○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5년 9월 15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산 모 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의 옹벽 디자인이 표절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4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문○○ 외 1인 對 부산일보 ^(5~7) , 인터넷 부산일보 ^(8~10) , 국제신문 ^(11~13) , 인터넷 국제신문 ^(14~16) , KNN ^(21~23) , iKNN ^(24~26) , 부산MBC-TV ^(27~29)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34~36) , 부산KBS-1TV ^(37~39) , KBS미디어 ^(40~42) (각 정정·반론청구) 국제신문 ^(17·18) , 인터넷 국제신문 ^(19·20) , KNN ^(30·31) , iKNN ^(32·3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 『아내 교습소에 시험지 유출 의혹 ‘간 큰 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10월 28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1) 『시험 출제하는 교사, 학원 하는 아내 … 법은 양심에 맡기라 하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28일자 사회면) (2) 『부산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의혹 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4일자 사회면) 외 2건 • KNN : (1) 뉴스아이 프로그램 『사립고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수사까지 의뢰』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iKNN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1건 (2) 뉴스와생활경제 프로그램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재시험, “부산 교육청, 사립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수사 의뢰”』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일자, iKNN 11월 2일자 뉴스면) • 부산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시험문제 유출 의혹, 진상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뉴스 프로그램 『고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일자) • 부산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진상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KBS미디어 10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시험문제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KNN, iKNN^(2·33), 부산MBC-TV,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iKNN^(21~23), KBS미디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3	(정정청구) 김상민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박대동·이목희 이어 김상민 의원도 비서관 월급 ‘갑질 논란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4	(정정청구) 이○○ 對 iKNN
조 정 대 상	(1) 『가짜 단백질 “몸짱 되려다 몸 망치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뉴스면) (2) 『가짜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근육 안 생기고 살만 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백질 함량이 10%도 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45·4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아이 진정시키려다 팔 탈골시킨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원아의 팔꿈치를 탈구시켰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7~49	(각 반론청구) 안○○ 외 1인 對 KBS-1TV ⁽⁴⁷⁾ , 부산KBS-1TV ⁽⁴⁸⁾ , KNN ⁽⁴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부산KBS-1TV : 뉴스5 및 뉴스7 프로그램 『급식비 21억원 빼돌린 업체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일자) • KNN : 경남투데이 프로그램 『급식비리, 업체와 이사장 짜고 급식비 빼돌려』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일자) 외 1건
신청인 주장	급식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학교와 짜고 거액의 급식비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부산조정 50	(반론청구) (주) ○○○ ○○○○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폐선 부지 공원화시민추진단 출범』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일부 폐선 부지 구간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부산시 고위직과 결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4월 5일자 2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4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51·52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조 정 대 상	『주한 ○○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9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모 국가 문화원장인 신청인이 해당 국가 공식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3~56	(각 추후·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경상일보 ^(53·54) , K신문 ^(55·5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상일보 : 『‘학점은행 뒷돈’ ○○○○진흥원 감사실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0일자 사회면) • K신문 : 『檢, ‘학점은행 비리의혹’ ○○○○진흥원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흥원장 재임 당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최○○ 對 뉴스코리아
조 정 대 상	『‘사고뭉치’ 일진이 ‘모범생’으로 변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9~66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국제신문 ^(59·60) , 인터넷 국제신문 ^(61·62) , 부산일보 ^(63·64) , 인터넷 부산일보 ^(65·6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문 : 『○○ 장애인복지관 오늘부터 정상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6일자 지역면) • 부산일보 : 『○○○ 장애인복지관 파행운영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1월 26일자 서부경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탁 운영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자 고용승계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새 수탁법인이 해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장애인복지관 오늘부터 정상 운영」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5월 19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5월 18일자 지역면)

2016부산조정 67~70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국제신문 ^(67·68) , 인터넷 국제신문 ^(69·70)
조 정 대 상	(1) 『‘시민 자산’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하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 『해운대 철길은 돈벌이 수단 아닌 후대 유산이다』 제하의 사설 (2016년 3월 1일자 27면) (3) 『해운대 폐선부지 일대 벌써 투기 조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1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해운대 폐선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6월 8일자 2면, 인터넷 국제신문 6월 8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71~74	(각 정정·손배청구) (주) 울산저널 對 울산신문 ^(71·72) , 인터넷 울산신문 ^(73·74)
조 정 대 상	『現重노조, 유인물 발행업체 불공정 낙찰』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현대중공업 노조의 유인물 발행 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입찰서에 사업장 주소지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現重노조, 유인물 발행업체 불공정 낙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2면 인터넷 울산신문 6월 9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75·76	(반론·손배청구) 박○○ 對 UBC
조 정 대 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불륜 의심해 아내와 주점 종업원 흥기로 찢러』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륜을 저지르다 흥기에 찢린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77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와글와글 ○○○○○○ - 분란에 ‘해피아’도 가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의 상임감사인 신청인이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원내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78, 79	(각 반론청구) (의) ○○의료재단 ○병원 對 KNN⁽⁷⁸⁾, iKNN⁽⁷⁹⁾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50대 여성 수면 마취 내시경 사고 조작 의혹 제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사망사고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80, 81, 85, 86	(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국제신문⁽⁸⁰⁾, 뉴스1코리아⁽⁸¹⁾, iKNN^(85,86)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제신문 : 『짚라인 등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강화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안전사고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 iKNN : 『짚라인 이용객 - 해수욕객 충돌 사고는 만조 탓?』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사고가 난 레포츠 시설을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국제신문, 뉴스1코리아/사유 : 기사수정) • 취하 (iKN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제신문 : 『짚라인 등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강화해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명칭 수정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안전사고 잇따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명칭 수정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82·83	(반론·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 고용 반대하던 ○○노조 간부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 고용 반대 ○○노조 간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84	(손배청구) 이○○ 對 KNN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재활치료, 로봇이 도와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루마티스 환자인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액지급)
2016부산조정 87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 출시한 화장품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88~91	(각 정정·반론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부산일보 ^(88·89) , 인터넷 부산일보 ^(90·91)
조 정 대 상	『‘템플스테이 건립’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6년 8월 25일자 9면, 인터넷 부산일보 8월 24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이 템플스테이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템플스테이 건립 의혹투성이’ 기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2면)

2016부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문○○, 성희롱 가해자 불쌍하다 ...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강사인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정치면)

2016부산조정 94, 95	(각 추후청구) 정○○ 對 KNN ⁽⁹⁴⁾ , iKNN ⁽⁹⁵⁾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태권도협회 유명선수 출전』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태권도 대회 허위 선수 등록을 이유로 사기 혐의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부산 ○○구 태권도협회 회장 정모 씨 승부 조작 및 사기 혐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iKNN 2016년 10월 11일자 뉴스면)

2016부산조정 96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소비자원, 일반 세균 검출 ○○○ 물티슈 시정 권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제품 리콜 사고와 무관한 전직 대표의 마약복용 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소비자원, 일반 세균 검출 ○○○ 물티슈 시정 권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9월 8일자 정치면)
2016부산조정 97, 98	(각 추후) 김○○ 對 울산MBC-TV ⁽⁹⁷⁾ , 인터넷 울산MBC-TV ⁽⁹⁸⁾
조 정 대 상	탐사기획 돌직구40 프로그램 『아파트 비리 연속기획 공동 구매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99~10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권윤자 ^(99~101) , 기독교복음침례회 ^(102~104) 對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조 정 대 상	『구원파(救援派)는 왜 이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강연/특강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 회장이 구원파 교주이며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5일자 강연/특강면)

2016부산조정 105, 106	(각 반론청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對 경상일보 ⁽¹⁰⁵⁾ , 인터넷 경상일보 ⁽¹⁰⁶⁾
조 정 대 상	『“발전적 정의 지향” ○○○○○ 복수 노조 설립』 제하의 기사 (경상일보 2016년 9월 27일자 7면, 인터넷 경상일보 9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모 지부가 파업과 반정부 시위만을 일삼는 조직이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발전적 정의 지향” ○○○○○ 복수 노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6면, 인터넷 경상일보 12월 1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107·108	(반론·손배청구) 김○○ 對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전,현직 친환경 급식센터장 진흙탕 싸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6일자 5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친환경 급식센터의 전직 센터장이었던 신청인이 재직 당시 특정업체에 납품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현직 친환경 급식센터장 진흙탕 싸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인터넷 울산신문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109·110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주상절리 현무암 불법채취 ... 담당 공무원까지 연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목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대구중재부

2016대구조정 1·2	(정정·손배청구) 대구○○○○○협회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강○○ ○○건설 대표 대구역서 김장 나누기 ‘김치파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2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한 나눔 행사를 타인이 주최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이 행 결 과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6일자 18면)
2016대구조정 3·4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나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림] 의성군 ○○면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9면)
2016대구조정 5~8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매일신문 ^(5·6) , 인터넷 매일신문 ^(7·8)
조 정 대 상	『車와 부딪치면 車 VS 車 사고』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월 29일자 1면, 인터넷 매일신문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친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구조정 9·10	(정정·손배청구) (주) 대가야신문 對 경서신문
조 정 대 상	『문화원 관련 보도 대부분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의 모 문화원 관련 기사를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11~14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경북일보 ^(11·12) , 인터넷 경북일보 ^(13·14)
조 정 대 상	『다세대 주택 편법 준공 논란』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6년 2월 25일자 10면, 인터넷 경북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과 유착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 다세대 주택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양군 다세대 주택 편법 준공’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0면, 인터넷 경북일보 3월 17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15	(정정청구) (의) ○○의료재단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매입액 등 서로 불만 ... 물거품 위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재단과 모 재단과의 인수합병 각서 체결이 잠정 연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대구조정 16·17	(정정·반론청구) 방○○ 對 뉴스물
조 정 대 상	『사립중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초 기화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사과문까지 제출했다고 허위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구조정 18, 19	(각 반론청구) 권○○ 對 경상매일신문 ⁽¹⁸⁾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¹⁹⁾
조 정 대 상	『소나무 불법 굴취 의혹 ... 수사 중』 제하의 기사 (경상매일신문 2016년 3월 25 일자 4면,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3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나무를 불법 굴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영양군 소나무 불법 굴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상매일신문 2016년 4월 8일자 4면,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4월 8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20·21	(추후·손배청구) 백○○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안티MB 광우 난동의 구조적 위선과 패륜』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 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안티 MB카페 백○○ 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초기화면)

2016대구조정 22, 23	(각 손해청구) 우○○ 對 인터넷 대구신문 ⁽²²⁾ , 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 ⁽²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대구신문 : (1) 『○○시 육성 사업단장 도덕성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2) 『성매매 이력자 채용 왜 못 걸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 : 『○○시 사업단장 논란에 시민단체 가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과거 성매매 입건 사실을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대구조정 24~39	(각 정정·손배청구) (재) ○○○○○○○센터 對 경안일보 ^(24·25,28·29) , 인터넷 경안일보 ^(26·27,30·31) , 경상투데이 ^(32·33,36·37) , 인터넷 경상투데이 ^(34·35,38·3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안일보 : (1) 『○○○○○○○○센터 ○○○ 하다하다 갑질까지 ‘최악’』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4월 18일자 사회면) (2) 『경주 ○○○ ‘슈퍼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5월 10일자 사회면) • 경상투데이 : (1) 『경주 ○○○, 갑질 논란 시비 분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상투데이 4월 18일자 사회면) (2) 『경주 ○○○, 외부업체에 경비 요구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1면, 인터넷 경상투데이 5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입점업체에 대해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구조정 40	(정정청구) 영양고추유통공사 對 안동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고추유통공사 경영부실 심각』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대구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41·42) , 인터넷 한국일보 ^(43·44)
조 정 대 상	『안동 ○○학원, 학교장이 조카 교사 합격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5월 1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5월 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조카를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경쟁자의 서류 제출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45	(손배청구) 최○○ 對 양파티브이뉴스
조 정 대 상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봉’...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신청인 주장	웨딩컨설팅 업체들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의 대화장면을 몰래 촬영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8월 21일자 사회면) (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봉’...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2016대구조정 46·47	(정정·손배청구) 이○○ 對 경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중학교 사제간 고소·고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대구지역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중학교 사제간 고소·고발 ‘물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5면)

2016대구조정 48~51	(각 정정·반론청구) 예천군^(48·49), 이현준^(50·51) 對 대경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심 거스르는 예천군 초대형 군청사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1면) (2) 『예천군수 소유 땅 인접지 신청사 결정 의문투성』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1면) (3) 『곤충엑스포 갑질 판매 입장권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1면) (4) 『예천군 신청사 건립 인접지 이현준 군수 소유 땅 밀집』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1면) (5) 『이현준 예천군수 소유 땅 농지 전용 않고 무단사용』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일자 1면) (6) 『이현준 예천군수 관련 의혹 道 감사관실, 전면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1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예천군이 호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곤충엑스포 입장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천군 신청사 및 곤충엑스포 입장권” 관련 예천군의 반론』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6년 9월 30일자 2면, 인터넷 대경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2) 『“예천 신청사 인근 군수 소유 땅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6년 10월 7일자 2면, 인터넷 대경일보 10월 6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52·53	(정정·손배청구) (주) 시사뉴스피플 對 로컬상주
조 정 대 상	『상주시 의회, 동료도 모르는 ‘의정부문 대상 수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혁신 인물대상이 공신력도 없고 검증도 안된 시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구조정 54	(정정청구) 최○○ 외 3인 對 양파티브이뉴스
조 정 대 상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 『대구 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붕’...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신혼부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구 ○○○○○ 담합 및 갑질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55	(정정청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역지부 ○○대병원 분회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술자리·골프, 공식사회 “NO”... 김영란법 시행 몸조심 분위기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1면, 2면)
신청인 주장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모 대학병원 병원 노조가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밀착 감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2면)

2016대구조정 56	(정정청구) 강○○ 對 주간고향신문
조 정 대 상	『기초의원 왜 이러나! ... 불·탈법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이 특정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을 게재해 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1면)

2016대구조정 57~62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서울일보닷컴 ^(57·58)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59·60) ,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61·6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일보닷컴 : 『영주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 『영주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 『영주시 공무원들 ‘부적절한 외유’ 입방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일보닷컴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여행” 관련 L씨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 여행” 관련 L씨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경북연합일보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여행” L씨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4면)

2016대구조정 63~65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사전답사 뒤틀어 중헌디? ...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수학여행 담당교사인 신청인이 사전 답사를 소홀히 하고 안전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여행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초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담당 교사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66·67	(정정·손배청구) 흥○○ 對 군위일보
조 정 대 상	(1) 『A도의원 등장으로 지방 선거 전초전 ‘소보 한마음 음악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5일자 1면) (2) 『군위 소방서 신설도 무산! 부계 ‘119지역대’ 이전 신축도 불허 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1면) (3) 『군위 군민에게 고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개석상에서 군위군수를 인신공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68, 69	(각 정정청구) 김영춘 對 매일신문⁽⁶⁸⁾, 인터넷 매일신문⁽⁶⁹⁾
조 정 대 상	(1) 『부산 국회의원, ‘포항~울릉 여객선 공모 편의 요구’ 의혹』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3일자 14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3일자 사회면) (2) 『김영춘 의원 “울릉 뱃길 면허 문제점 지적” 해운업계 “포항 해수청 반대에도 공모 강행”』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25일자 12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3) 『포항 ~ 울릉 뱃길 공모 심사위원 7명 모두 사퇴』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29일자 12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 위원장인 신청인이 특정 해운사의 면허 취득 편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김영춘 의원 밝혀와』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2월 19일자 11면, 인터넷 매일신문 12월 19일자 경북면)

2016대구조정 70~73	(각 정정·손배청구) (주) 대구한국일보 對 경북도민일보 ^(70·71) , 영남타임즈 ^(72·7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민일보 : 『풍기 인삼축제 문제점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9면) • 영남타임즈 : 『2016영주풍기 인삼축제 조직위 평가보고회 허무맹랑한 개선 방안 제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풍기인삼 아가씨 선발대회를 주관한 신청인 언론사에 대한 영주시의 지원이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민일보 : 『“풍기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 보조금 지원 사실과 다르다” 주최 측 해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9면,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12월 16일자 사회면) • 영남타임즈 :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보조금 지원, 사실과 다르다” 주최 측 해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초기화면)

광주중재부

2016광주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재) ○○○○기념재단 對 광주드림 ^(1·2) , 인터넷 광주드림 ^(3·4)
조 정 대 상	『○○○○재단 고위 관계자 자녀들 채용 뒷말』 제하의 기사 (광주드림 2015년 12월 18일자 2면, 인터넷 광주드림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단기 계약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재단 고위 관계자 자녀들 채용 뒷말’ 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광주드림 2016년 1월 18일자 2면, 인터넷 광주드림 1월 18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5~8	(각 정정·반론청구) 함평군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1) 『민선5·6기 군유 재산 251건(51억) 팔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3면) (2) 『동함평 산단 결국 빛잔치로 끝낼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함평군이 무분별하게 군유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평군, 군유재산 취급 소홀’ 및 ‘동함평 산단 빛잔치’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31일자 3면)
2016광주조정 9	(반론청구) 안○○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함평천지가 좁았나? 서울 관악구까지 뻗친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접견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악구와 자매결연 중지로 직거래 장터 타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31일자 8면)

2016광주조정 10·11	(정정·반론청구) 김○○ 對 목포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인사 두고 전문성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6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안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인사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전문성 무시한 신안군 인사’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7면)
2016광주조정 12·13, 20~23	(각 정정·반론청구) 신안군 對 뉴스웨이 ^(12·13) , 전남저널 ^(20·21) , 인터넷 전남저널 ^(2·2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웨이 : 『신안군, 기획홍보실 군수 직인 무단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0일자 사회면) • 전남저널 : 『방조제 개보수 공사 입찰 담합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1면, 인터넷 전남저널 2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안군 기획홍보실이 군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뉴스웨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전남저널, 인터넷 전남저널/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웨이 : 『신안군 군수 직인 무단사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사회면) • 전남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전남저널 2월 23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4~17	(각 정정·반론청구) 한○○ 對 여수MBC-TV ^(14·15) , 인터넷 여수MBC ^(16·17)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지휘자 자질 논란』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3일자, 인터넷 여수MBC 11월 3일자 뉴스면) (2)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지휘자 명확한 감사 요구』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4일자, 인터넷 여수MBC 11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지휘자인 신청인이 합창단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여자 단원들에게는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여성 단원 성추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2일자)

2016광주조정 18·19	(정정·반론청구) 문○○ 외 4인 對 상애신문
조 정 대 상	(1) 『강진군에는 이런 일도 ...』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2면) (2) 『상임이사 9년 조합장 10년 도합 19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농협의 대출금 결손처분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1면)

2016광주조정 24~2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고등학교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고 “학생 자해 소동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사회면) (2) 『○○○○고 자해 학생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자해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광주조정 30~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30~32) , 정○○ ^(33~35)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근무시간에 골프 친 철없는 ○○○○고등학교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사회면) (2) 『○○○○고 교장 ‘근무시간 골프 매주 2~3회 추가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사회면) (3) 『○○○○고 교장 ‘해외 전지훈련에서 향응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광주조정 36·37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對 순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순천 덕월동 A아파트의 관리비 “관리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덕월동 A아파트 관리비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38·39	(정정·반론청구) 함평군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나비축제 생각하면 ... ‘속이 까맣게 탄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민선5기가 들어선 이후부터 함평나비축제의 위상과 명성이 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함평군, “2013년 나비엑스포 취소는 불가피한 선택”』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5일자 1면)

2016광주조정 40~45	(각 정정·반론청구) 박○○ 對 인터넷 도민일보 ^(40·41) , 서울일보닷컴 ^(42·43) , KNS 뉴스통신 ^(44·4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도민일보 : 『○○○○조합 이사장, 공무원 음해성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서울일보닷컴 : 『낙선시킬 목적의 음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KNS뉴스통신 : 『○○○○조합 이사장 선거 앞두고 신안군청 공무원 음해성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모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신청인이 현 이사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음해성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KNS뉴스통신/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도민일보, 서울일보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신안군청 공무원, “○○○○조합 이사장 음해 발언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KNS뉴스통신 2016년 3월 14일자 광주/전남면)

2016광주조정 46~49	(각 정정·반론청구) (사)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對 여수MBC-TV ^(46·47) , 인터넷 여수MBC ^(48·49)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부정수급 알고도 봐주기』 제하의 보도 (여수MBC-TV 2016년 1월 8일자, 인터넷 여수MBC 1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수급 '무혐의'』 제하의 보도 (여수MBC-TV 2016년 3월 21일자, 인터넷 여수MBC 3월 21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50	(정정청구) 함평신문 (유)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이○○ 의원 풀뿌리 의정 대상 수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함평신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

2016광주조정 51~57	(각 추후청구) (사)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對 인터넷 광주드림 ⁽⁵¹⁾ , 더한국타임즈 ⁽⁵²⁾ , 미디어전남 ⁽⁵³⁾ , 전라닷컴 ⁽⁵⁴⁾ , 데일리저널 ⁽⁵⁵⁾ , 인터넷 동부매일 ⁽⁵⁶⁾ , 호남타임즈 ⁽⁵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광주드림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자치면) • 더한국타임즈 : 『전남도, '○○○○장애인협회 여수지부' 형사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사회면) • 미디어전남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전남동부면) • 전라닷컴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사회면) • 데일리저널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 엄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자치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더한국타임즈/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호남타임즈/내용 : PR·후속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사유 : 중재결정,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6광주중재5~9 참조))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한국타임즈 :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수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사회면) • 호남타임즈 : 『○○장애인협회 ○○지부, “소중한 후원자 모십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58~60	(정정·반론·손배청구) ○○ (주) 對 인터넷 진도투데이
조 정 대 상	『동의서에 서명 안했다. ○○면 ○○마을 어촌 계원의 분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집중취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양식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등 수산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면 ○○마을 어촌 계원 동의서 조작’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7일자 정치면)

2016광주조정 61·62, 80·81	(각 반론·손배청구) 맹○○ 對 뉴스투데이한국 ^(61·62) , 파인뉴스 ^(80·8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투데이한국 : 『한약재 유통 간부 A씨 손배청구 기각』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사람사는세상면) • 파인뉴스 : 『A씨, 계속 언론사 기사를 트집, 메시지 행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탐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피신청인의 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 (뉴스투데이한국/사유 : 진실한 사실보도에 해당) • 각하 (파인뉴스/사유 : 송달 불능)

2016광주조정 63~6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공업 (주) 對 The대한일보 ^(63~65) , 인터넷 The대한일보 ^(66~68)
조정대상	『광양제철소 ‘○○○○’ 환경 오염 수년째 방조』 제하의 기사 (The대한일보 2016년 3월 14일자 1면, 인터넷 The대한일보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이 분진과 소음 등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 환경 오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The대한일보 2016년 4월 27일자 2면, 인터넷 The대한일보 4월 26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69~76, 78·79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BBS-R ^(69·70) , 인터넷 광주BBS불교방송 ^(71·72) , 연합뉴스 ^(73·74) , 호남매일 ^(75·76) , 인터넷 호남매일 ^(78·79)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BBS-R : 빛고을아침저널 프로그램 『○○산단내 승마장 내년부터 문 닫을 듯』 (2015년 11월 19일자, 인터넷 광주BBS불교방송 11월 19일자 홈페이지면) 연합뉴스 : 『○○산단내 승마장 내년부터 문 닫을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사회면) 호남매일 : 『○○산단내 승마장 개장 7년만에 문 닫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승마연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BBS-R : 빛고을아침저널 프로그램 (2016년 5월 16일자, 인터넷 광주BBS 불교방송 5월 16일자 다시듣기면) 연합뉴스 : 『○○산단내 승마장 12월까지 영업 계속』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8일자 사회면) 호남매일 : 『○○승마장 올 말까지 영업 계속』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5면, 인터넷 호남매일 5월 20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77	(반론청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對 전남매일
조정대상	『○○주택 재개발조합 내홍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5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주택 재개발조합 내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8면)

2016광주조정 82·83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깁
조 정 대 상	『○○구 장애인협회 부당 이득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신청인에게 불법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는 협회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협 회장, 부당이득 논란에 “몰랐다” 주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84~87	(각 반론·손배청구) 박○○ 對 무등일보 ^(84·85) , 인터넷 무등일보 ^(86·87)
조 정 대 상	『손님 휴대전화 되팔려 한 택시기사 ‘잡고보니 전과 35범’』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6년 5월 26일자 5면, 인터넷 무등일보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범죄 전력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이행)

2016광주조정 88·89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對 NPS통신
조 정 대 상	『광주의 한 요양병원, 노약자 감염병 예방 ‘허술’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결핵환자를 노약자들과 함께 입원시키거나, 치매환자의 강제 입원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약자 감염병 예방에 허술한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정치사회면)

2016광주조정 90~97	(각 정정·반론청구) 안○○ ^(90~93) , 정○○ ^(94~97) 對 전남희망신문 ^(90·91,94·95)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92·93,96·97)
조 정 대 상	『권력자와 그 측근들, 돈의 노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하의 기사 (전남희망신문 2016년 6월 27일자 7면,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6월 2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함평군수인 신청인이 함평산업단지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권력자와 그 측근들 ...’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희망신문 2016년 7월 25일자 7면,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7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016광주조정 98, 113	(각 반론청구) ○○○○○○ ○○축산물공판장 對 호남투데이뉴스
조 정 대 상	(1) 『○○축산물 공판장 판매 ‘갑질’ ... 매입 강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면) (2)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 ‘생존권 위협’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7일자 나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매인업자에게 매출목표액 할당 등 부당한 밀어내기와 매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축산물 공판장 매입 강요 끼워팔기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나주면) (2)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 생존권 위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나주면)
2016광주조정 99·100	(정정·반론청구) ○○노인복지관 對 예향진도신문
조 정 대 상	『○○노인복지관 부지 제공 어린이집 설치 ‘위법·부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인복지관 부지제공 어린이집 설치〉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1면)

2016광주조정 101	(반론청구) 장흥군 對 호남뉴스24
조 정 대 상	『장흥군 2016 상반기 44억 상당 산림사업,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장흥군이 지역 산림조합에 발주한 산림사업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송달 불능)
2016광주조정 102, 103	(각 정정청구) 박○○ 對 노컷뉴스 ⁽¹⁰²⁾ , 아시아경제닷컴 ⁽¹⁰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낭만포차” 고발한 ○○시민협 간부 공모 문의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지역면) • 아시아경제닷컴 : 『○○시민協 낭만포차 공익신고, 의도적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수시의 한 사업을 고발한 것이 해당사업에 지원했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낭만포차 고발한 ○○시민협 간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여수시민협 낭만포차 공익신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04~11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임○○ 對 목포시민신문 ^(104~106)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107~109) , 와이드뉴스 ^(110~112)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민신문 : 『의원님 가게앞 중앙선 끊어!』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6년 8월 24일자 3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8월 24일자 목포시면) • 와이드뉴스 : 『목포, 23년 존치된 중앙선 경찰서 前 교통 심의위원 상가 들어서자 사라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포시 의원인 신청인이 상가 앞 도로의 중앙선 절선 민원을 제기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민신문 : 『〈삼향천로 중앙선 절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6년 9월 14일자 3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9월 19일자 목포시면) • 와이드뉴스 : 『‘23년 존치된 중앙선 사라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14~116	(각 반론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무등일보 ⁽¹¹⁴⁾ , 인터넷 무등일보 ⁽¹¹⁵⁾ , 연합뉴스 ⁽¹¹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일보 : 『“아파트 방충망 160개 찢어졌어요” 주민신고 들어와 한바탕 소동』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6면, 인터넷 무등일보 9월 7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1) 『아파트 방충망 160개 구멍 ‘송송’ …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최신기사면) (2) 『‘방충망 160개 훼손’… 아파트 입주민 허위 고소 판명』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의 방충망 제거 작업을 두고 방충망이 고의로 훼손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일보 : 『‘아파트 방충망 훼손, 주민신고’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6면, 10월 5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아파트 방충망 160개 훼손? … 알고 보니 주민 오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전국면)
2016광주조정 117~124	(각 반론·손배청구) 민○○ 對 남도일보 ^(117·118) , 인터넷 남도일보 ^(119·120) , 여수 MBC-TV ^(121·122) , 인터넷 여수MBC ^(123·124)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일보 : (1) 『전남 고흥군 중국도자기 전시 ‘우려의 시선’』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9면, 인터넷 남도일보 7월 26일자 사회면) (2) 『고흥 ‘중국 도자기 감정’ 논란 파장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남도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외 2건 • 여수MBC-TV :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자기 수백점, 황실용 진품?』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7일자, 인터넷 여수MBC 7월 27일자 뉴스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지자체에 기탁한 중국도자기 3천여 점이 진품이 아니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및 진실된 사실에 해당)

2016광주조정 125~128	(각 반론·손배청구) 광주광역시 對 시민의 소리 ^(125·126) , 인터넷 시민의 소리 ^(127·128)
조 정 대 상	『“윤 시장 최측근 녹취 청부 의혹” ○○빌딩 리모델링 관련 금품수수 감사 배후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3면)
신청인 주장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시장 최측근의 청부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장 측근 녹취 청부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3면)
2016광주조정 129~132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KBC-TV ^(129·130) , 인터넷 KBC-TV ^(131·132)
조 정 대 상	탐사in 프로그램 『표절 논문으로 ○○대교수 채용』 제하의 보도 (KBC-TV 2016년 4월 24일자, 인터넷 KBC-TV 4월 2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표절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표절논문으로 채용된 교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6년 11월 4일자, 인터넷 KBC-TV 11월 4일자 다시보기면)
2016광주조정 133, 134	(각 반론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 ⁽¹³³⁾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¹³⁴⁾
조 정 대 상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 몸 사리며 긴장하나 - 한 식당서 여직원들 동행해 술판, 여흥 즐겨』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4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4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군수인 신청인이 지역 노인회 행사에 군청 여직원들과 동행해 술판을 벌이고 여흥을 즐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성군수 식당서 여직원들 동행해 술판·여흥 즐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1월 7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7일자 행정면)

2016광주조정 135~140	(각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對 뉴시스 ^(135·136) , 전남일보 ^(137·138) , 인터넷 전남일보 ^(139·140)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광주 ○○○○ 재건축 전 조합장 해임 무효 내부 갈등 예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전국면) • 전남일보 : 『광주 ○○○○ 재건축 전 조합장 해임 무효 ‘갈등 예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5면, 인터넷 전남일보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에 두 개의 집행부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광주○○○○ 재건축조합 ‘전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항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전남일보 : 『전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5면, 인터넷 전남일보 11월 11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41~14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우리군민신문 ^(141~143)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44~146)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선임 말썽』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9월 26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9월 26일자 탐뉴스면) (2) 『장애인 복지관 관장, “군수 측근 보단 장애인 잘 아는 분이 돼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4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4일자 탐뉴스면) (3) 『본인이 의사봉 잡고 관장 자격 ‘셀프 통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10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10일자 사회면) (4) 『○○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선임 논란 … 정치권에서도 관심』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17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인 신청인이 복지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임명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 장애인복지관장 자격 미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1월 28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28일자 탐뉴스면)

<p>2016광주조정 147~153</p>	<p>(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광남일보⁽¹⁴⁷⁾, 인터넷 남도일보⁽¹⁴⁸⁾, NGTV⁽¹⁴⁹⁾, 인터넷 여수신문⁽¹⁵⁰⁾, 통합뉴스⁽¹⁵¹⁾, 호남타임즈⁽¹⁵²⁾, 인터넷 KBC⁽¹⁵³⁾</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광남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재난관리 시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도청면) • 인터넷 남도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정치행정면) • NGTV : 『전라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재난관리 시설로 신규 지정!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포토뉴스면) • 인터넷 여수신문 : 『전남도 내 하강레포츠시설 특별 안전관리도,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 관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정치자치면) • 통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외 2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 레포츠 시설이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광남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재난관리 시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3일자 도청면) • 인터넷 남도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3일자 정치행정면) • NGTV : 『전라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재난관리 시설로 신규 지정!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2일자 포토뉴스면) • 인터넷 여수신문 : 『전남도 내 하강 레포츠시설 특별 안전관리도,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 관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4일자 정치자치면) • 통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외 2건

2016광주조정 154~15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목포투데이 ^(154~156) , 인터넷 목포투데이 ^(157~159)
조정 대상	(1) 『박홍률 시장 측, 시의원들에 상품권 조직적 배포』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0월 26일자 1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0월 27일자 사회면) (2) 『상품권 한달 전 배포, 치밀한 계획』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1월 2일자 3면) (3) 『[기자수첩]체육회 단복 사건과 꼬리자르기』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1월 9일자 4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포시 체육회 사무처장인 신청인이 주도해 목포시의원 전원에게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목포시체육회, 시의원들에 상품권 배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2월 28일자 3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2월 28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60~163	(각 정정·반론청구) (주) ○○○○○ 對 우리군민신문 ^(160·161)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62·163)
조정 대상	『장성군 수의계약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31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인데도 장성군으로부터 많은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중재결정,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6광주중재10~13 참조))

대전중재부

<p>2016대전조정 1~4</p>	<p>(정정·손배청구) 박○○ 對 디트news24^(1·2) (각 정정청구) 충청뉴스⁽³⁾, 뉴시스⁽⁴⁾</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트news24 : 『충청권 광역 철도 숨은 주역 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메인면) • 충청뉴스 : 『여야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논공행상(論功行賞) 가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정치면) • 뉴시스 : 『여야,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 통과 공치사 ‘꼴불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정치면)
<p>신청인 주장</p>	<p>신청인이 최초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를 타인이 제안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디트news24/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충청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뉴시스/사유 : 자진취하)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트news24 : 『충청권 광역 철도 “숨은 주역” 박○○』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메인면) • 충청뉴스 : 『여야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논공행상(論功行賞) 가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의 반론 게재 (2016년 1월 20일자 정치면)
<p>2016대전조정 5</p>	<p>(정정청구) 제천시 對 금강일보</p>
<p>조 정 대 상</p>	<p>『총선 앞둔 제천, 전기車 유령회사 진실 공방』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충북면)</p>
<p>신청인 주장</p>	<p>제천시장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6대전조정 6, 7	(각 정정청구) 김○○ 對 중도일보 ⁽⁶⁾ , 충청투데이 ⁽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 :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지역 지방일간지 K(52)기자가, “음주운전·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14면) • 충청투데이 :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지역 지방일간지 K(52)기자가, “음주운전·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 혐의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전조정 8·9	(정정·손배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천안 ○○○고 교장, 교육감과 코드인사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천안 모 고교 이사진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유가 전교조 출신 인사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천안 ○○○고 교장, 교육감과 코드인사 구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8일자 교육면)

2016대전조정 10~12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천안·아산 택시업계 끝없는 갈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천안과 아산 택시업계가 갈등 관계이며, 협박성 금품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13·14	(정정·손배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세종in뉴스
조 정 대 상	(1)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뉴스면) (2) 『세종시 이 시장·H 부시장 불법 상태 추진 … 막가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뉴스면) (3) 『행정 부시장 전격로 진행된 375억원대 입찰 강행, 세종시는 행정 부시장이 최종 결재권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뉴스면) (4) 『세종 이 시장·H 부시장 문제성 심사 “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하수처리시설 위탁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세종시 하수처리시설 위탁 특혜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뉴스면)
2016대전조정 15·16	(정정·손배청구) ○○○○ 對 뉴스스토리
조 정 대 상	『○○○ “어버이연합 동원, 충북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모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정치면)
2016대전조정 17	(손배청구) 진○○ 對 TJB-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부석사』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약탈문화재 관련 한일 스님들의 비공개 대화를 통역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18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남일보
조정 대상	(1) 『천안○○○○○○○○문화재단, 교장 직무대행 선임 놓고 ‘합법 vs 무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5면) (2) 『천안○○○○고 ‘임시 이사회 파행 운영’ 절차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5면) (3) 『천안○○○○고 신입 교장 G씨 자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5면) (4) 『천안○○○○고, 관선 이사 파견으로 학교 정상화 이뤄질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의 임시 이사들이 비교육전문가이며, 천안 모고고 신입 교장 인선과 관련해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뉴스기획 천안○○○○고 1, 2, 3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남일보 2016년 7월 5일자 정치면)

2016대전조정 19~22, 27~30	(각 정정·손배청구) 홍○○ 對 세종매일 ^(19·20) , TJB-TV ^(21·22) , 연합뉴스 ^(27·28) , 인터넷 충청투데이 ^(29·30)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매일 : 『조치원 J아파트 입주자 대표 홍 회장 ‘폭주’ 막아야 산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1면) 외 1건 •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경로당엔 자물쇠, 관리비는 수상’ 이상한 아파트』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0일자) • 연합뉴스 : 『35일간 쇠줄로 공공 세종시 아파트 경로당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4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관리비 조사해주오 ... 세종시에 첫 감사청구, 주민 500여명 7000만원 차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박○○ 對 세종의소리
조 정 대 상	『박○○ 전 교장 원직 복귀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모 학교 교장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신청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전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전○○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 대전지부, 자중지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역 군인인 신청인이 모 단체 임원으로 선발된 과정에 불법과 하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전지부, 자중지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1~34	(각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인터넷 금강일보 ^(31·32) , 인터넷 충청투데이 ^(33·3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금강일보 : 『농산물 원산지 속여 학교 납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 『수입산콩 제주산 친환경 콩나물로 둔갑시켜 대전지역 학교납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내산과 수입산 콩을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금강일보 : 『‘농산물 원산지 속여 학교 납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 『수입산콩 제주산 친환경 콩나물로 둔갑시켜 대전지역 학교납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5	(정정청구) 최○○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초등 여교사 제자에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여교사인 신청인이 제자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초등 여교사 막말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6	(반론청구) 장○○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회 대전 간부 대규모 해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해임이 확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대전조정 37	(정정청구) ○○종합식품 對 충남신문
조 정 대 상	『기업하기 힘든 도시 천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유통대리점들이 불법을 일삼고 영양사와 유착 의혹도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업하기 힘든 도시 천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1면)

2016대전조정 38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세종시 이상한 시영버스 선택 ... 청정도시 표방하며 매연 심한 경유버스 구입』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시영버스로 경유 차량을 구입한 것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청정도시 표방하며 매연 심한 경유버스 구입”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지역면)

2016대전조정 39, 40	(각 반론청구) 서○○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1) 『저가 흥삼세트 고가구입 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사회면) (2) 『○○○○○, 감사 결과 뭉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단체 대전시지부 회장인 신청인이 저가의 선물세트를 터무니없는 고가에 매입하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⁴⁰⁾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³⁹⁾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1) 『서○○ 전 회장, 흥삼 구입 금액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2) 『‘○○○○○ 감사 결과 뭉개기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41, 42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금강일보⁽⁴¹⁾, 인터넷 충청투데이⁽⁴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금강일보 : 『○○○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 등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시중유통 물티슈 3개중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43	(정정청구) 윤○○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1) 『천안시의회 도덕성 논란 ... 지탄받아 마땅』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5면) (2) 『직무유기 고위 공직자 덕분에 부의장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기소사실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직무유기 고위 공직자 덕분에 부의장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15면)

2016대전조정 44·45	(정정·손배청구) ○○화학 (주)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화학 화재로 악행 들통 ... 사면초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폐수를 방류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화학 화재로 악행 들통 ... 사면초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46	(정정청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對 인터넷 굿모닝충청
조 정 대 상	『행복청 투자유치 왜 저조한가 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커버스토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산학 융합지구 사업 참여 자격에 미달하고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행복청 세종 산학 융합지구 및 세종 테크밸리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커버스토리면)

2016대전조정 47·48	(정정·손배청구) 문○○ 對 뉴스아이즈
조 정 대 상	『박지원,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논란 사과 “이유 여하 막론하고 심려 끼쳐 송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49	(정정청구) ○○○○○○○○학교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1) 『○○○○학교 이번엔 부정 선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7면) (2) 『“○○○○학교 女 비율 ‘경총’ 이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2017년 신입생 선발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이 여학생 기숙사의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6대전조정 50~53	(각 정정·손배청구) ○○○○○○○○협회 對 특급뉴스 ^(50·51) , 충청신문 ^(52·53)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뉴스 : 『베트남 체육국 공무원” 25일 공주시 방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5일자 사회면) • 충청신문 : 『공주경찰-베트남公安부, 양국 경찰 우의 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54	(정정청구) (주) ○○○○○의료기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황당 광고 의료기 17배 폭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0일자) (2) 뉴스7 프로그램 『황당 광고 의료기 17배 폭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의료기를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6대전조정 55	(정정청구) 충청북도 옥천군 對 뉴스피플아이
조 정 대 상	(1) 『옥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2) 『충북 옥천군 종합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옥천군수 등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옥천군이 상수도보호지역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했고, 장기간 불법폐기물을 매립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6	(정정청구) 충청남도 예산군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예산군 신청사 창호 설계 뒤늦게 변경 '빈축'』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9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예산군의 신청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7·58	(정정·반론청구) 충청남도 부여군 對 사비신문
조 정 대 상	(1) 『훼손당하는 세계유산 부소산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1면) (2) 『백제대종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6면,7면)
신청인 주장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공사로 부여의 부소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9	(정정청구) ○○○○○○ (주) 對 코리아플러스
조 정 대 상	『전남도, 하강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레포츠시설을 짚라인이라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남도, 하강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60, 61	(각 정정청구) ○○○○ 對 대전투데이 ⁽⁶⁰⁾ , 백제뉴스 ⁽⁶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투데이 : 『충남 청양군 ‘S’ 광산, 골재 불법 반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종합뉴스면) 백제뉴스 : 『청양군 ‘S’ 광산, 골재 불법 반출 의혹 사실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광산이 토목용 골재를 생산 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투데이 : 『청양군 ○○리 불법 골재 반출, (주) ○골재산업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2일자 종합뉴스면) 백제뉴스 : 『청양군 ○○리 불법 골재 반출, (주) ○골재산업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지역면)

2016대전조정 62·63	(정정·손배청구) 임○○ 對 뉴스세종
조 정 대 상	(1) 『임○○ ○○○문화원장 판소리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단순 실수 아닌 의도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 확산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5일자 문화면) (2) 『임○○ ○○○문화원장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문화면) (3) 『세종시, 꿀불건 무형문화재 지정 행정 … 임○○ 문화원장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판소리 명창인 신청인이 홍보가 공연에서 완창을 하지 않았고 사사 이력이 불명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64, 65	(각 정정청구) ○○○○○○○연구소 對 충청투데이 ⁽⁶⁴⁾ , 인터넷 충청투데이 ⁽⁶⁵⁾
조 정 대 상	『관피아 닷 내린 ○○○○○○○연구소』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6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2월 31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정부 부처 출신의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관피아 닷 내린 ○○○○○○○연구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7년 1월 1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월 13일자 뉴스종합면)
2016대전조정 66	(정정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하태경, 황교안 대행과 ‘고성 샷대질’… 청문회 청와대 조사 무산 강력 항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샷대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21면)

경기중재부

2016경기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기일보 ^(1·2) , 인터넷 경기일보 ^(3·4)
조 정 대 상	『음주 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 ... 나사 풀린 경찰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측정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음주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 ... 나사풀린 경찰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1월 22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5~7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 對 인터넷 한국복지뉴스
조 정 대 상	『사회적 물의 빛은 사회복지법인 ○○○ 정상화 위해 노력키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종합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8	(반론청구) 광명시 對 시사광명
조 정 대 상	『광명동굴 개발 사업비 약 1천 40억 + 알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광명동굴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투입한 예산이 1천 41억 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명시, 광명동굴 개발에 2011년부터 5년간 시 예산 198억원 사용 밝혀, 김○○ 시의원 1천 41억원 소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9	(추후청구) 광명시 외 1인 對 광명지역신문
조 정 대 상	『특혜 의혹 밝혀질까 ... 검찰 고발당한 광명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이 모 서원 민간 위탁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검찰, 양기대 시장 ○○서원 위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없음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016경기조정 10~13	(각 정정·손배청구) 정○○ 외 1인 對 티브로드경기뉴스 ⁽¹⁰⁻¹¹⁾ , 인터넷 티브로드 경기뉴스 ⁽¹²⁻¹³⁾
조 정 대 상	(1) 『○○○○ 노점 상인회 ... ‘자릿세’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경기뉴스면) (2) 『노점 상인 간의 갈등 ... 합의점도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4일자 경기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시장 상인회가 새로 들어온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장사를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4	(반론청구) 안덕수 對 강화섬소식
조 정 대 상	『안덕수 전 국회의원 ... 강화군 예비 후보 사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인적 욕심으로 강화군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계양구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5, 16	(각 반론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경기일보 ⁽¹⁵⁾ , 인터넷 경기일보 ⁽¹⁶⁾
조 정 대 상	(1) 『100년 간다더니 ... 녹물 흐르고 균열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면) (2) 『케이블과 상판 고정 댐퍼 104개 중 56개 기름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서해대교 기초 구조물에 이격이 발생하고,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서해대교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7	(정정청구) 김상민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與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8	(정정청구) 원○○ 외 10인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도의회 복지위 소속 의원 자율 예산 31억 나눠먹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도의회 자율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3면)

2016경기조정 19~22	(각 정정·손배청구) 가○○ 對 중부일보 ^(19·20) , 인터넷 중부일보 ^(21·22)
조 정 대 상	(1) 『‘XX꼴값·건방진 XX들·XX하고·’○○대 여교수 욕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1면) (2) 『욕설 女교수, 7시간 27분간 문자 폭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 여교수 욕설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3월 18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3월 1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3, 24	(각 정정청구) 김○○ 對 인천일보 ⁽²³⁾ , 인터넷 인천일보 ⁽²⁴⁾
조 정 대 상	『○○병원장, 승진 인사자 금품 요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2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인 신청인이 승진 대상자들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25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화성시 ○○출장소 공무원 - 용역사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도로시설 유지보수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지자체 입찰 및 집행기준을 어기고 수 천만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6	(추후청구) 이○○ 외 1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1)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사회면) (2) 『후원금 빼돌리고 ...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 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횡령의혹’ 남양주 S 장애인 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7~30	(각 정정·추후청구) 김○○ 외 1인 對 기호일보^(27·28), 인터넷 기호일보^(29·30)
조 정 대 상	(1) 『전무이사 인준 정관 각 주체별 해석 달라』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16일자 사회면) (2) 『고성난무 ○○시 개인택시조합 공청회 결국 파행』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17일자 사회면) (3) 『정관 개정안, 현 임원진 장기집권 위한 꼼수』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0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0월 16일자 사회면) (4) 『○○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대의원들에 금품 지급 혐의』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 이사장이 현 임원진에게 유리한 정관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공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개인택시조합, 김○○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3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31, 32	(각 정정청구) 홍일표 對 인천일보⁽³¹⁾, 인터넷 인천일보⁽³²⁾
조 정 대 상	『인천 與 국회의원 차명계좌 의혹 ... 市선관위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2월 19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 통장을 만들어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33, 34	(각 손해청구) (사) ○○○○환경운동본부 對 인터넷 기호일보 ⁽³³⁾ , 인터넷 일간경기 ⁽³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호일보 : 『환경단체 대표에 행정 특혜 ‘○○ ○○면 이장단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지역면) • 인터넷 일간경기 : 『산업쓰레기 소각장 인·허가 무효 투쟁』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35, 36	(각 정정청구) 임○○ 對 김포저널 ⁽³⁵⁾ , 인터넷 김포저널 ⁽³⁶⁾
조 정 대 상	『○○○○ 환경 역학조사 ‘오염 분석’ 일부 조작』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18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행한 모 지자체 환경 역학조사의 최종 보고서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 환경 역학조사 ‘오염분석’ 일부 조작』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5월 16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37~40	(각 정정·손배청구)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對 안산신문 ^(37·38) , 우리안산넷 ^(39·40)
조 정 대 상	『○○○○○ 재건축 추진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안산신문 2016년 3월 16일자 1면, 안산우리넷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신청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재건축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안산신문 2016년 4월 20일자 1면, 우리안산넷 4월 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41·42	(추후·손배청구) 최○○ 對 케이에스피뉴스
조 정 대 상	『배재정 의원, 비리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임 당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43·44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등잔일보
조 정 대 상	『광명시, 민간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노릇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기획취재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특정 기업의 아파트 분양 광고성 기사를 시정 홍보지에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명시, 민간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노릇’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45, 46	(각 정정청구) (사) ○○○○ 對 김포저널 ⁽⁴⁵⁾ , 인터넷 김포저널 ⁽⁴⁶⁾
조 정 대 상	(1) 『‘환경정의, 김포농민 몰살시키고 떠날 것인가’』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12월 14일자 사회면) (2) 『‘거물대리 토양오염 우려기준 크게 밀돌아’』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4일자 2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4일자 사회면) (3) 『‘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에 조직적 개입’』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4일자 3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김포시의 환경문제를 조작,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47~50	(각 정정·손배청구) 신○○ 외 1인 對 OBS경인TV ^(47·48) , 인터넷 OBS경인TV ^(49·50)
조 정 대 상	(1) OBS 뉴스740 프로그램 『인천시 설립 법인 운영 호텔 ‘갑질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1일자) (2) OBS 뉴스740 프로그램 『강제 추행·방뇨에 호텔 여직원 사직』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호텔 경영자인 신청인이 호텔 편의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직원들을 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51~54	(각 정정·손배청구) ○○병원 외 1인 對 경기일보 ^(51·52) , 인터넷 경기일보 ^(53·54)
조 정 대 상	『우리 아들 수술실에 원무과장이?』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6년 3월 31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 원무과장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의 반론이 해당 기사에 보도되어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요구하는 정정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6경기조정 55, 56	(각 정정청구) 김○○ 對 인천일보 ⁽⁵⁵⁾ , 인터넷 인천일보 ⁽⁵⁶⁾
조 정 대 상	(1) 『안양공고 ‘통유리 감옥’... 고3생 더위·악취 고통』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18일자 사회면) (2) 『도교육청, 안양공고 무책임 행정 해결하라』 제하의 사설 (인천일보 2016년 3월 21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안양공고 학생들이 통유리 감옥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경기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불법단체 연계 ○○○ 이사 선임 사실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뉴스사람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단체 소속이며, 불법적으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법단체 연계 향림원 이사 선임 사실 밝혀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59·60	(정정·손배청구) ○○○○○ 對 인터넷 수원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연합으로 ○○○에 재갈 물리려다 딱 걸린 청와대의 자총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모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61, 62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중부일보 ⁽⁶¹⁾ , 인터넷 중부일보 ⁽⁶²⁾
조 정 대 상	『성남시 GTX 분담금 버티기 ... 道 ‘성남역 제외’ 강경 카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GTX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성남시 사이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63	(반론청구) 속초시 對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1)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2)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3)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64·65	(정정·손배청구) 심○○ 對 경기매일
조 정 대 상	『안양시 의원 한마디에 동장 보직 해임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순회 신년 인사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동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1면)
2016경기조정 66, 67	(각 정정청구) 정○○ 對 콩나물신문⁽⁶⁶⁾, 인터넷 콩나물신문⁽⁶⁷⁾
조 정 대 상	『뒷걸음질 치는 부천시 체육 진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콩나물신문 2015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콩나물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천시청 전 수영부 감독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 기간 도과)

2016경기조정 68	(정정청구) 정○○ 對 부천미래신문
조 정 대 상	『○○시 의원, 지역 언론 폄하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지역 신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의원, 지역 언론 폄하 ‘말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69, 70	(각 정정청구) 계양구 對 경기신문⁽⁶⁹⁾, 인터넷 경기신문⁽⁷⁰⁾
조 정 대 상	『계양구 청렴도 1위라는데 주민 체감은 최하』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6년 4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기신문 4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계양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 특정 제품의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반론보도문] ‘계양구 청렴도 1위라는데 주민체감은 최하’ 관련』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6년 6월 6일자 6면, 인터넷 경기신문 6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1, 74, 75	(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김포신문^(71,75) (손배청구) 김포신문⁽⁷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신문 : 『한○○ 로컬 마켓 8개월간 식품 불법 판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김포신문 : (1) 『오픈 마켓 지역 상권 침범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2) 『지역 카페들, 순수로 돌아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오픈 마켓 입점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오픈 마켓 지역 상권 침범 도 넘었다” 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6년 6월 15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6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2·73	(정정·손배청구) 지○○ 외 1인 對 기독교일보씨디엔
조 정 대 상	(1) 『○○○ 비대위 명칭과 역할 바꾸고 긴급조치 선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4일자 초기화면) (2) 『○○○ 개혁위, 사무처에 공개질의 및 제안』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초기화면) (3) 『○○○ 개혁위 “사태를 이전투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초기화면) (4) 『○○○ 개혁추진위 통해 드러나는 ○○○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초기화면) (5) 『○○○, 개혁위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9일자 초기화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날조되어 무효인 정관에 근거한 불법집단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 피신청인 이익신청/사유 :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주장)

2016경기조정 76	(정정청구) 어○○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통폐합 용역결과 인정 못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집단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예술단체 노조 부지부장인 신청인의 소속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통폐합 용역결과 인정 못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집단 반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의 소속 수정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7~80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23인 對 기호일보 ^(77·78) , 인터넷 기호일보 ^(79·80)
조 정 대 상	(1) 『인천 중구 ‘통장 vs 동장 마찰’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6월 7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7일자 사회면) (2) 『통장들 돈 각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중구 ○○동 공무원 ‘비위 의혹’ 시끌』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6월 8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소속 통장들인 신청인들이 동 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관행처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 통장들 돈 각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81~84	(각 정정·손배청구) ○○○합창단 對 평택시민신문 ^(81·82) , 인터넷 평택시민신문 ^(83·84)
조 정 대 상	『○○시 A합창단 ‘도덕적 해이’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운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85~8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對 CNN21방송
조 정 대 상	(1)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정치면) (2)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정치면) (3)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집행 절차 및 용역자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88·89	(반론·손배청구) 국기원 對 세계태권도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해외 146명의 태권도 지도자들의 고언 “국기원을 살려 주십시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 운영 및 신임 이사진 구성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 무산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146명의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의 고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태권도면)
2016경기조정 90, 91	(각 반론청구) (재) 경기도문화의전당 對 중부일보 ⁽⁹⁰⁾ , 인터넷 중부일보 ⁽⁹¹⁾
조 정 대 상	『도 문화의 전당 등 4~5곳 우선 통폐합』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공공기관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김○○ 對 성결네트워크
조 정 대 상	『긴급뉴스 ○○○대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일자 헤드라인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조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94~97	(각 추후·손배청구) 염○○ 對 인터넷 일간경기 ^(94·95) , 인터넷 중부일보 ^(96·97)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간경기 :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 불법거래 ... 공무원도 한통속』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신 청 인 주 장	신청인이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경기⁽⁹⁴⁾, 인터넷 중부일보^(96·97)/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일간경기⁽⁹⁵⁾/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간경기 :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 불법거래 ... 공무원도 한통속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98·99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화성저널
조 정 대 상	『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인터뷰면)
신 청 인 주 장	음악가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신청인의 연주실력과 애국심을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인터뷰면)
2016경기조정 100	(정정청구) (사) ○○복지회 對 인터넷 시흥저널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관, 시흥시 시설장 교체 요구 목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2) 『○○복지관 사태 제2국면 맞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 청 인 주 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노조탄압과 인사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복지관, 시흥시 시설장 교체 요구 목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1~103, 106~10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인천일보 ^(101~103) , 인터넷 인천일보 ^(106~108)
조정 대상	(1) 『○○○○생협 ‘부당노동행위’ 파장 수면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5월 13일자 13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3일자 경기면) (2) 『○○○○생협 부당노동행위 안타깝다』 제하의 사설 (인천일보 2016년 5월 16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행 결과	『○○○○생협의 ‘부당노동행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1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4, 105 115~118	(각 정정청구) 김○○ 對 시흥저널 ⁽¹⁰⁴⁾ , 인터넷 시흥저널 ⁽¹⁰⁵⁾ (각 정정·손배청구) 시흥저널 ^(115·116) , 인터넷 시흥저널 ^(117·118)
조정 대상	(1) 『시립어린이집 원장, 법규 어기고 대학원 다녀 논란』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7월 11일자 3면, 인터넷 시흥저널 7월 9일자 사회면) (2) 『시립 ○○○○ 어린이집, 건축법 위반 적발』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시흥저널 8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원 수업을 빙자해 조퇴와 휴가를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1) 『시립어린이집 원장, 법규 어기고 대학원 다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 『○○○○ 시립어린이집 원장, 조퇴 및 반일 휴가 ‘임의 사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시흥저널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9~111	(각 정정청구) 박○○ 외 2인 對 반월신문 ⁽¹⁰⁹⁾ , 인터넷 반월신문 ⁽¹¹⁰⁾ , 경인매일 ⁽¹¹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월신문 : 『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 민원인이 알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8월 17일자 사회면) • 경인매일 : 『안산시 단원구 P공무원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불법 간판 과징금 부과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 (반월신문, 인터넷 반월신문) • 취하 (경인매일/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기조정 112, 113	(각 정정청구) (유) ○○○○○ 對 경기일보 ⁽¹¹²⁾ , 인터넷 경기일보 ⁽¹¹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불에 탄 쌀 수십 만 명분, 우리 밥상에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1면, 인터넷 경기일보 8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일보 : (1) 『불에 탄 쌀 수십톤, 경기미로 포장 전국 유통』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사회면) (2) 『경기미 둔갑한 불에 탄 쌀 손해사정법인 경매가 단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에 탄 쌀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14	(정정청구) 유○○ 對 경기도민뉴스
조 정 대 상	『○○자원봉사센터 직원, 후원 물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원인 신청인이 독지가로부터 받은 기탁물품을 유용,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후원 물품 유용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19, 120	(각 정정청구) 박○○ 외 2인 對 반월신문 ⁽¹¹⁹⁾ , 인터넷 반월신문 ⁽¹²⁰⁾
조 정 대 상	『안산시 ○○구청 A과/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 민원인이 알렸다/P공무원, ○○ ○○○○협회 K국장과 함께 ... 불법 간판 과징금 협박 ‘일감 수주’』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9월 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인터넷판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하여 의혹이 있 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지면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하였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P공무원·K국장 언론중재위원회에 반월신문 제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21·122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1)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물티슈 전 대표 과거 ‘정직함’ 언급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경제면) (2)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물티슈 측, 2016년 6월 24일 제조 제품만 리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관련 정정보도 및 사과문』 제하의 기 사 (2016년 10월 7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123·124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천 지역 모 단체장 재직 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125·126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가평 80대 노인 ‘철거 명령 부당’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불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지급)
이 행 결 과	『가평 80대 노인 ‘철거 명령 부당’ 1인 시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27~130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연수신문 ^(127·128)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29·130)
조 정 대 상	(1) 『전시장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재검토 필요』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6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8월 8일자 사회면) (2) 『원인지역 A음식점 경찰수사 시작』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6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음식점의 개업과정에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31	(손배청구) 김○○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추적르포 사라진가족4 프로그램 (2016년 7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경기조정 132·133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경기방송
조 정 대 상	『“참는 게 미덕·불쌍한 가해자”…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사인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참는 게 미덕·불쌍한 가해자”…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정치면)

2016경기조정 134~141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도민일보^(134·135), 인터넷 도민일보^(136·137), 수도일보^(138·139), 인터넷 수도일보^(140·141)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일보 : 『시흥시 특혜 의혹 후폭풍 … 공무원 개입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6면, 인터넷 도민일보 10월 19일자 사회면) • 수도일보 : 『시흥시, ‘의류수거함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10면, 인터넷 수도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폭 출신이며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도민일보, 인터넷 도민일보/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수도일보, 인터넷 수도일보)
이 행 결 과	『시흥시 특혜 의혹 후폭풍 … 공무원 개입설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도민일보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도민일보 11월 11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42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인덕원선(신수원선), 호계·흥덕·동탄 3개 역 결국 무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지하철 신수원선 역사 건설 사업 계획에서 호계, 흥덕, 동탄 등 3개 역사가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경기조정 143~146	(각 정정·손배청구) ○○○○○○○○ 개원의사회 對 중부일보 ^(143·144) , 인터넷 중부일보 ^(145·146)
조 정 대 상	『병원들의 ‘결핵 상술’... 유료 예방 접종 권유』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8월 16일자 23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기도내 병원들이 결핵예방 접종시 피내주사 대신 고가인 경피주사를 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원들의 ‘결핵상술’... 유료 예방 접종 권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일보 11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47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일간경인
조 정 대 상	『광명 지역에 때아닌 중년 남녀의 섹스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동네방네면)
신청인 주장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148, 149	(각 정정청구) 이○○ 對 인천일보 ⁽¹⁴⁸⁾ , 인터넷 인천일보 ⁽¹⁴⁹⁾
조 정 대 상	『여야 시당 집안 문제로 시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0월 26일자 3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정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이 신청인이 내부 공론화 없이 정책위원을 위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1월 17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1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50, 151	(각 정정청구) 안산시 외 1인 對 반월신문 ⁽¹⁵⁰⁾ , 인터넷 반월신문 ⁽¹⁵¹⁾
조 정 대 상	(1) 『안산시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8월 17일자 기사분석면, 인터넷 반월신문 8월 17일자 기사분석면) (2) 『실시협약서가 위조되었다』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기획특집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12일자 기획특집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가 시행중인 지역 복합개발사업의 외국 투자사가 페이퍼 컴퍼니이며, 사업협약서도 위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1월 23일자 사람과사람들면, 인터넷 반월신문 11월 22일자 사람과사람들면)

2016경기조정 152	(정정청구) 서○○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시 체육회 ○○선수단 경비 부정수급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7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소속 선수단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이중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경기조정 153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 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레포츠 시설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54·155	(정정·손배청구) (주) 인천연수신문사 對 연수송도신문
조 정 대 상	『Y신문 K사주 “형사 고소” 또 당할 처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원들이 정정보도 의견을 개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56·157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광명
조 정 대 상	『본지 기자, 김○○ 시의원에게 폭행당해 고소장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기자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58~163, 166~169	(각 정정·손배청구) 양기대 對 인터넷 경인종합뉴스^(158·159), 대한투데이^(160·161), 인터넷 대한투데이^(162·163), 미디어타임즈^(166·167), 온나라타임즈^(168·16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논란, 광명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3건 • 대한투데이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농단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1면, 인터넷 대한투데이 12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 미디어타임즈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찾아 인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인 신청인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사문제를 스님과 논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인사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초기화면) • 대한투데이 : 『‘광명시장 인사 논란 및 파문’ 등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1면, 인터넷 대한투데이 12월 26일자 사회면) • 미디어타임즈 : 『[정정보도]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광명시장 인사 논란 및 파문 등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64·165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조 정 대 상	『이효선 전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공무원 신상정보 유출’ 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청탁에 의해 무속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인사 의혹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170	(정정청구) 의왕시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악취 공장 바로 옆(50m 거리) 장애아 치료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왕시가 장애인 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환경문제가 심각한 장소로 이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71~178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기일보 ^(171·172) , 인터넷 수도권일보 ^(173·174) , 인터넷 일간경기 ^(175·176) , 인터넷 중부일보 ^(177·17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경기일보 : 『연천 지역서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 『산림 훼손 6억 상당 현무암 불법 채취 연천, 일당 무더기 적발 ... 주민 신고 목살 공무원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뉴스면) 인터넷 일간경기 : 『지질 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정치면)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 불법 거래 ... 공무원도 한 통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목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일보 : 『‘연천 지역서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적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수도권일보 : 『“산림훼손 6억 상당 현무암 불법 채취 연천, 일당 무더기 적발 ... 주민 신고 목살 공무원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경기 :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79	(정정청구) 권윤자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국과수, ‘안산 동반 자살’ 부검 결과 도출 ... 사망 시점 여전히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연씨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과수, ‘안산 동반 자살’ 부검 결과 도출 ... 사망 시점 여전히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80·181	(정정·반론청구) 부천시 對 인터넷 부천매일
조 정 대 상	『이러려고 참여 예산 박수쳤나 ... 자괴감이 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부천시 참여예산 연구회 지원 예산이 담당부서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82·183	(정정·손배청구) 부○○ 외 1인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파주 ○○고 “비리 온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들이 여교사 성희롱, 방학프로그램 부실운영 등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파주 ○○고 “비리 온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사회면)

강원중재부

2016강원조정 1·2	(반론·손배청구) 박○○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장모와 아내 폭행한 60대』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을 보도했으나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
2016강원조정 3·4	(추후·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檢, ‘학점은행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9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학점은행 학사 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강원조정 5·6	(정정·손배청구) ○○○○○건설개발 외 1건 對 MBC강원영동-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조합 갈등, 조합원 불만』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동해의 모 주택조합 아파트 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조합 갈등, 조합원 불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4일자)

2016강원조정 7, 8	(각 정정청구) 안○○ 외 2인 對 시사강원신문 ⁽⁷⁾ ,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⁸⁾
조 정 대 상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이 망가졌다』 제하의 기사 (시사강원신문 2016년 6월 27일자 4면,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횡포 때문에 아파트 진입 도로가 지역과 단절된 형태로 변경 설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이 망가졌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강원신문 2016년 7월 25일자 4면,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7월 25일자 사회면)

2016강원조정 9~11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G1-TV
조 정 대 상	뉴스820 프로그램 『○○대 분규 2년 ... 정상화 안갯속』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 학내 분규의 원인이 대학과 전 이사장 측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820 프로그램 『“○○대 분규 2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9일자)

2016강원조정 12	(정정청구) 이○○ 對 흥천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 거래, 사기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신자들로부터 모은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 거래, 사기 편취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이슈면)

2016강원조정 13~15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인터넷 강원신문
조 정 대 상	『교육부,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학내 분규 매듭』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대학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교육면)

충북중재부

2016충북조정 1·2	(추후·손배청구) (사) ○○○ 對 인터넷 중부광역신문
조 정 대 상	『○○○○○○연대 “인권위, ○○학원 처벌·고발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비리를 저지르고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 비리와 학대 혐의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정치면)

2016충북조정 3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충남 지방일간지 기자 음주대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방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충북조정 4, 5	(각 정정청구) 홍성군 對 중부매일 ⁽⁴⁾ , 인터넷 중부매일 ⁽⁵⁾
조 정 대 상	『화물차 불법 행위 눈감은 지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홍성군이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2면)

2016충북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청타임즈 ^(6·7) , 인터넷 충청타임즈 ^(8·9)
조 정 대 상	『국가 재산 임차인이 주인 행세 ... 수 천만원 꿀깍』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5년 11월 27일자 3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11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충북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권○○ 對 제천뉴스저널
조 정 대 상	(1) 『시민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는 여론조사 절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뉴스포커스면) (2) 『제천, 단양 총선, 선거법 위반 중대 변수 - 본보 여론조사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뉴스포커스면) (3) 『충북경찰청, K모 예비후보 2차 출석 요구 -“출석 시기 협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뉴스포커스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후보인 신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충북조정 12, 13	(각 정정청구) ○○○○○ (주) 對 CJB-TV
조 정 대 상	(1)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개통 석 달 만에 ... 부실 시공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0일자) (2)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부실 의혹 ○○로, 긴급 현장 점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3)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상한 품질 성적서 ... “알고도 공사 맡겨”』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7일자)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부실 시공으로 도로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총복조정 14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총복일보
조 정 대 상	『청주시 ‘전통 상업보존 구역 규정 적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회사에서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이 허가 기관인 청주시의 행정을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총복조정 15	(정정청구) 충북지방경찰청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청주 무예 마스터십 참가 외국인 무더기 잠적 ...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세종충북면)
신청인 주장	청주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의 무단 이탈에 대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총복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학) ○○학원 외 1인 對 충청리뷰^(16·17), 충북인뉴스^(18·19)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리뷰 : (1) 『기숙사 맞나? 수용소 같은 시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5면) (2) 『시험 땀 “크게 써라” “눈 크게 떠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5면) (3) 『학력 우수 축구학교의 허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1면) • 충북인뉴스 : (1) 『기숙사 맞나? 수용소 같은 시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2) 『시험 땀 “크게 써라” “눈 크게 떠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3) 『학력 우수 축구학교의 허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불법개조된 기숙사를 운영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부정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총복조정 20	(추후청구) 윤석용 對 인터넷 총복일보
조 정 대 상	『20대 총선 불법 행위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20대 총선 불법 행위 잇따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1일자 정치면)

2016총복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남○○ 對 동양일보 ^(21·22) , 인터넷 동양일보 ^(23·24)
조 정 대 상	『한 지역 기사를 죽음으로 내몬 전공노의 악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살한 지역 일간지 기사를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 지역 기사를 죽음으로 내몬 ...” 성명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1월 1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31일자 사회면)

2016총복조정 25~3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동양일보 ^(25~27) , 인터넷 동양일보 ^(28~30)
조 정 대 상	(1) 『○○○영농조합 ‘편가르기’ 운영』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5월 3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5월 2일자 사회면) (2) 『○○○영농조합 잇단 내홍 ‘눈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8월 9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3) 『“○○○영농조합 대표 퇴진해야”』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9월 8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9월 7일자 사회면) (4) 『“○○○조합 불·탈법 고발 ... 철저 조사해달라”』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4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3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에 직원간 편가르기와 부당해고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영농조합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1월 2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1월 1일자 사회면)

2016총복조정 31, 32	(각 손해청구) 이○○ 對 현대HCN총복방송 ⁽³¹⁾ , 인터넷 현대HCN총복방송 ⁽³²⁾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학교 운동장이 돈벌이?』 제하의 보도 (현대HCN총복방송 2016년 10월 12일자, 인터넷 현대HCN총복방송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총복조정 33~36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對 동양일보 ^(33·34) , 인터넷 동양일보 ^(35·36)
조 정 대 상	『한 지역기자를 죽음으로 내몬 전공노의 악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뇌물 브로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해당 기사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총복조정 37, 38	(각 추후청구) 박○○ 對 옥천신문 ⁽³⁷⁾ , 인터넷 옥천신문 ⁽³⁸⁾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성희롱-성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2월 26일자 3면, 인터넷 옥천신문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교사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총복조정 39, 40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옥천신문 ⁽³⁹⁾ , 인터넷 옥천신문 ⁽⁴⁰⁾
조 정 대 상	『1353호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9월 9일자 23면, 인터넷 옥천신문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의 휴일 근무수당이 10만원임에도 5만원 수준이라고 잘못 보도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처럼 오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1353호 알려왔습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12월 16일자 19면, 인터넷 옥천신문 12월 16일자 사회면)
2016총복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임○○ 對 현대HCN총복방송 ^(41·42) , 인터넷 현대HCN총복방송 ^(43·44)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장애인 지원센터, 부정 수급 사실 알고도 ‘쉬쉬’』 제하의 보도 (현대HCN총복방송 2016년 10월 26일자, 인터넷 현대HCN총복방송 10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이 없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7시저녁뉴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현대HCN총복방송2016년 12월 13일자, 인터넷 현대HCN총복방송 12월 13일자 뉴스면)
2016총복조정 45·46	(정정·손배청구) ○○○○○보호센터 외 1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괴산군, 텃밭 건물을 노인 요양기관 지정 ...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 『괴산군, ‘텃밭 건물 요양시설 지정’ 관련 행정 지도 나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시설이 전기와 난방 등 기본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총복조정 47~50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동양일보 ^(47·48) , 인터넷 동양일보 ^(49·50)
조 정 대 상	『이○○씨, 범법 숨기고 11년 근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8월 12일자 1면, 인터넷 동양일보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로 인한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1월 12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월 11일자 사회면)

전북중재부

2016전북조정 1~3	(각 정정청구) 최○○ 외 1인 對 전북매일신문 ⁽¹⁾ , 전주일보 ⁽²⁾ , 전라일보 ⁽²⁾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매일신문 : 『○○농협, 노조의 억지 주장 강력 대처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6면) • 전주일보 : 『○○농협 ‘손배 청구 등 책임 묻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7면) • 전라일보 : 『○○농협 ‘노조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전주 모 농협 노조가 법외 노조이고 벌금형이 확정된 농협 인사를 구명하기 위해 조합장을 감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매일신문 : 『농협 노조, 사측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6면) • 전주일보 : 『‘○○농협 손배 청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7면) • 전라일보 : 『○○농협 노조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6면)
2016전북조정 4·5	(정정·손배청구) 임○○ 외 1인 對 전북연합신문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총체적 부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면) (2)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전주 모 시장의 도로 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전북조정 6·7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주한 ○○ 문화원장을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시아 국가의 주한 문화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식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문화원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1일자 2면)

2016전북조정 8·9	(정정·손배청구) 익산시 對 익산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익산시 의회 언론 조례 무시하고 부당 혈세(광고비) 집행』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및 22일자 탐사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초기 화면)

2016전북조정 10·11, 14·15	(각 정정·손배청구) ○○○○위원회 ^(10·11) , 남원시 ^(14·15) 對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제86회 춘향제 시작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16면)
신청인 주장	남원시가 춘향제 주관 방송사를 멋대로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남원 춘향제 방송사 선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17면)

2016전북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사) ○○○○선양회 對 남원뉴스PAPER
조 정 대 상	『춘향제 주관 방송사 선정두고 잡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상적인 춘향제 주관 방송사 선정을 방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선양회 “전국적 흥보 예산 절감 위해 방송사 추천한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2면)

2016전북조정 16·17	(정정·손배청구) ○○○산림조합 외 1인 對 전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산림조합장-이사진 ‘내홍 격화’』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산림조합장이 방만하고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18·19	(정정·손배청구) 부안군 對 부안저널
조 정 대 상	『부안군 민선 6기 공약 10건 중 9건 ‘완료’, ‘정상 추진’이라고 발표』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부안군수가 민선 6기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안군 공약 이행평가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2일자 1면)

2016전북조정 20	(정정청구) 양○○ 對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환복위 ‘웃고’ 교육위 ‘울고’』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유력했던 후보가 패한 원인이 신청인의 리더십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1·22	(정정·손배청구) 정○○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복마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출전한 신청인 동생의 수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6일자 전국면)
2016전북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협동조합 외 1인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걸다르고 속다른 아울렛 반대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7면) (2) 『360만원 출자한 패션조합 300억 대 뒷거래 이해 못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모 매장 입점을 반대하면서 뒤로는 상인회관 건설을 요구하는 등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유) ○○○푸드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 자격 미달업체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전주 모 산업 단지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업체가 입찰자격 미달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7~3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북중앙신문 ^(27·28) , 전북도민일보 ^(29·30) , 전북일보 ^(31·32) , 전라일보 ^(33·3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중앙신문 : 『‘갑질’ ○○대 교수, 이번엔 강사 해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4면) • 전북도민일보 : 『학생 폭언 등 갑질 해임 후 복직한 ○○대 교수 이번엔 통보없이 ‘시간 강사 교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 전북일보 : 『갑질 논란 ○○대 ○○과 교수 이번엔 시간 강사 무더기 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 전라일보 : 『○○대 ○○학과 A 교수 ‘또 갈등’- 복직 후 시간 강사 4명 모두 해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강의 예정이던 시간 강사들을 무더기로 교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전북조정 35	(정정청구) 질병관리본부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순창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에서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임)

2016전북조정 36	(정정청구) 익산시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익산시 인사 청탁 대가 돈거래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에서 인사 청탁 대가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37·38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전북도 ○○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8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전북도 ○○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전북도청에 근무한 신청인이 기업체에 접대 및 일자리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보도)
2016전북조정 39·40	(정정·손배청구) 부안군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1)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11면) (2) 『도 넘은 불법 토석채취 눈감은 부안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6면) (3) 『부안군 도 넘은 불법 석산개발 왜 눈감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10면) (4) 『부안군 불법논란 석산 철저한 조사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0면) (5) 『불법 석산개발 의혹에도 부안군은 미적 미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부안군이 석산의 불법 개발을 묵인하고 언론의 취재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순창신문 ^(41·42) , 인터넷 순창신문 ^(43·44)
조 정 대 상	『군, “당나귀는 가족이 아니다?”며 또 신축 허가』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6년 8월 10일자 1면, 인터넷 순창신문 8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순창군 모 축사 주인이 면장과 친인척 관계여서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사 허가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아파트 옆 축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6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순창신문 11월 28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45~4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전북도민일보 ^(45·46)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47·48)
조 정 대 상	『○○군 인재육성 스쿨 사업, 부실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8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1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수탁 운영중인 ○○군 인재육성 스쿨이 학생의 참여 저조 및 수업의 질 문제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인재육성 스쿨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6년 12월 16일자 9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2월 16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49~52	(각 정정·손배청구) 김 ○ 외 2인 對 새전북신문 ^(49·50) , 인터넷 새전북신문 ^(51·52)
조 정 대 상	<p>(1) 『공중 보건의 제멋대로, ○○ 주민 화났다』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6년 12월 13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2월 12일자 지역면)</p> <p>(2) 『○○ ○○ 공중 보건의 근무 일탈 보건복지부 진상 파악 나서』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6년 12월 15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2월 14일자 지역면)</p>
신청인 주장	공중 보건의인 신청인들이 근무 위치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 공중 보건의,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중”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7년 1월 6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월 5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53	(정정청구) 김관영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2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3일자)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새만금 카지노 청와대 개입의혹 수사촉구』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3일자) (4)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내국인 카지노 청와대만 믿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4일자) (5)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의당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검찰 수사 촉구』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4일자)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정을 추진중인 새만금 개발특별법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청와대의 주문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김관영 의원 ‘새만금 리조트 청와대와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9일자)

2016전북조정 54·55	(정정·손배청구) ○○○ 협동조합 對 전북중앙신문
조 정 대 상	『마을 기업 예산지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정상적인 예산 지원을 유력 정치인의 영향에 의한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익산 마을기업 예산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3일자 14면)

경남중재부

2016경남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 (유) 對 창원KBS-1TV ^(1·2) , KBS미디어 ^(3·4)
조 정 대 상	뉴스인사이드 프로그램 『현장 -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인가』 제하의 보도 (창원 KBS-1TV 2016년 12월 13일자, KBS미디어 12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일부 지역의 연령별 목표 할당을 채우지 못했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 요청 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5~8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함양신문 ^(5·6) , 인터넷 함양신문 ^(7·8)
조 정 대 상	『함양읍 ‘G모델’ 세입자의 억울한 사연 호소』 제하의 기사 (함양신문 2016년 1월 18일자 3면, 인터넷 함양신문 1월 18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와 소유건물 임차인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임차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9, 10	(각 정정청구) 박○○ 對 뉴스경남 ⁽⁹⁾ , 인터넷 뉴스경남 ⁽¹⁰⁾
조 정 대 상	『거창군수 박○○ 예비 후보자 아들 잘봐 달라 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뉴스경남 2016년 1월 13일자 5면, 인터넷 뉴스경남 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병원에 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 거창군수 예비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경남 2016년 3월 11일자 5면, 인터넷 뉴스경남 3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박○○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거제시도, 면사무소도, 경찰서도 두 손 든 막무가내식 ‘불법 횡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웃집 주 출입구 앞에 돌덩어리를 부어놓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거제시도, 면사무소도, 경찰도 두 손 든 막무가내식 ‘불법횡포’ 관련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종합면)
2016경남조정 13~16	(각 정정·손배청구) ○○○추진위원회 對 경남일보 ^(13·14) , 인터넷 경남일보 ^(15·16)
조 정 대 상	『함안 ○○초교 과밀학급 해소』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6년 1월 11일자 7면, 인터넷 경남일보 1월 10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함안 모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수직 증축을 통해 해소하기로 교육청과 최종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 ○○초교 과밀학급 해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인터넷 경남일보 2016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7	(반론청구) 밀양시 외 1인 對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기자의 시각 - 베일 속의 특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밀양시가 밀양 국제멀티미디어쇼의 기획·진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전권을 주었으며, 예산 집행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베일 속의 특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19면)

2016경남조정 18~21	(각 정정·손배청구) 안○○ 對 함안뉴스 ^(18·19) , 인터넷 함안뉴스 ^(20·21)
조 정 대 상	『함안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의원 징계 심사 착수』 제하의 기사 (함안뉴스 2016년 2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함안뉴스 2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의원인 신청인이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22	(정정청구) 송○○ 외 6인 對 인터넷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더민주, 공○○ 김해시장 후보 교체 검토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해시 의원이 김해시장 보궐선거 교체 논란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인터뷰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23~26	(각 정정·손배청구) 송인배 對 경남도민신문 ^(23·24)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5·26)
조 정 대 상	『양산갑 송인배 후보 시의원에 결의서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6년 3월 25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3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무위원들에게 본인이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27~30	(각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외 1인 對 경남매일 ^(27·28) , 인터넷 경남매일 ^(29·30)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전횡·비리 말썽』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6년 3월 21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이 각종 전횡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농업협동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6년 4월 2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26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31~58	(각 정정·손배청구) (사) ○○○○○○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 ^(31·32)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33·34) , 경남신문 ^(35·36) , 인터넷 경남신문 ^(37·38) , 경남매일 ^(39·40) , 인터넷 경남매일 ^(41·42) , 경남일보 ^(43·44) , 인터넷 경남일보 ^(45·46) , 아시아투데이닷컴 ^(47·48) , KNS뉴스통신 ^(49·50) , 아시아뉴스통신 ^(51·52) , 뉴스웨이경남 ^(53·54) , 인터넷 포커스뉴스 ^(55·56) , 뉴시스 ^(57·5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일보 : 『‘파행’ ○○시 장애인 복지관 정상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월 27일자 진주면) 외 1건 경남신문 :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늘부터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9면, 인터넷 경남신문 1월 27일자 사회면) 경남매일 : 『○○ 장애인 복지관, 오늘부터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7면, 인터넷 경남매일 1월 26일자 지방자치면) 경남일보 : 『○○ 장애인 복지관 오늘부터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1월 27일자 사회면) 아시아투데이닷컴 : (1) 『○○○○○○○, ○○시 장애인 복지관 수탁·심의 결과 ‘의의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4일자 사회면) (2)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7일부터 ‘정상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탁 운영하던 모 지자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관리자 고용 승계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새 수탁법인이 해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일보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2일자 사회면) 경남신문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9면, 인터넷 경남신문 5월 12일자 사회면) 경남매일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7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24일자 지방자치면) 경남일보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5월 24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2016경남조정 59~62	(각 정정청구) ○○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對 창원KBS-1TV ⁽⁵⁹⁾ , KBS미디어 ⁽⁶⁰⁾ , MBC경남-TV ⁽⁶¹⁾ , 인터넷 MBC경남 ⁽⁶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허가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0일자, KBS미디어 5월 10일자 뉴스면) MBC경남-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4일자, 인터넷 MBC경남 5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63~66	(각 손배청구) 금○○ 對 거제타임즈 ⁽⁶³⁾ , 거제여성신문 ⁽⁶⁴⁾ , 거제중앙신문 ⁽⁶⁵⁾ , 인터넷 거제중앙신문 ⁽⁶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제타임즈 : 『의사 - 여교수 - 의사 부인 '모텔앞 난투극? - 사회지도층 인사 모럴헤저드 극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사회면) 거제여성신문 : 『의사 - 여교수 - 의사 부인 '모텔앞 난투극? - 사회지도층 인사 모럴헤저드 극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사회면) 거제중앙신문 : 『사회지도층 일탈 '의사와 부인, 법정 공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종합면, 인터넷 거제중앙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분쟁 대상인 신청인의 사적 사안과 관련 분쟁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거제타임즈, 거제여성신문/내용 : 손해배상 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거제중앙신문, 인터넷 거제중앙신문/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경남조정 67·68	(반론·손배청구) 김○○ 對 거창신보
조 정 대 상	『제7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종두 의원, 부의장 표주숙 의원 선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거창군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금품매수 및 성적 모욕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두고 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저질 행동이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보도문 [반론보도] 김○○ 의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2면)

2016경남조정 69~7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 對 경남도민신문 ^(69~71)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2~74)
조 정 대 상	『산청 ○○ 농공단지 석탄재 매립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6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적법하게 진행중인 석탄재 매립공사가 토양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75·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김해 청소 용역업체 구린 냄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1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해시 청소 용역업체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김모 씨 “김해 청소 용역업체 비리와 무관” 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18면)

2016경남조정 77~80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남해시대 ^(77·78) , 남해타임즈 ^(79·80)
조 정 대 상	『삼동 봉화산 산정 분지 파헤쳐야 하나』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8월 16일자 3면, 남해타임즈 8월 16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삼동 봉화 산정분지 개발 관련』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9월 6일자 5면, 인터넷 남해시대 9월 1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81~89, 98	(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⁸¹⁾ , 인터넷 경남일보 ⁽⁸²⁾ , 인터넷 서경방송 ⁽⁸³⁾ , 연합뉴스 ^(84,98) , 인터넷 포커스뉴스 ⁽⁸⁵⁾ , 뉴시스 ^(86~88) , 쿠키뉴스 ⁽⁸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하동군 운영 자연 휴양림 내 짚라인 사고 발생』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일보 : 『하동 구재봉 ‘명물’ 놀이기구 짚라인서 사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경방송 : 『하동 구재봉 하강레포츠 사고 … 예견된 ‘인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뉴스인타임면) • 연합뉴스 : 『하동 구재봉 짚라인 잇단 사고 … 운행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최신기사면) 외 1건 • 인터넷 포커스뉴스 : 『하동소방서, 자연 휴양림 짚라인 타던 2명 구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전국면) • 뉴시스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타던 40대 중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전국면) 외 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취하 (인터넷 경남일보, 인터넷 서경방송, 연합뉴스, 인터넷 포커스뉴스, 뉴시스, 쿠키뉴스/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일간뉴스경남/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일보 : 『하동 구재봉 ‘명물’ 놀이기구 ○○○서 사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경방송 : 『하동 구재봉 하강 레포츠 사고 … 예견된 ‘인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뉴스인타임면) • 연합뉴스 : 『하동 구재봉 ○○○ 잇단 사고 … 운행 중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포커스뉴스 : 『하동소방서, 자연 휴양림 ○○○ 타던 2명 구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4일자 전국면) • 뉴시스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 타던 40대 중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8일자 전국면) • 쿠키뉴스 : 『하동 자연 휴양림 활강시설 안전사고 발생 … 2명 부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4일자 전국면)

2016경남조정 90~9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 콘텐츠사업단 對 밀양시민신문 ^(90~92) , 인터넷 밀양시민신문 ^(93~95)
조 정 대 상	『밀양아리랑 사업 순수해야 대중화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밀양시민신문 2016년 7월 29일자 15면, 인터넷 밀양시민신문 7월 29일자 사설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밀양 아리랑의 대중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폄하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96~97	(정정·손배청구) 오영호 對 의령신문
조 정 대 상	『○○면 ○○주민 돈사 확장 반대, 의회에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의령군수인 신청인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돼지 축사를 불법 증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99~10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영남매일 ^(99·100) , YN뉴스 ^(101·102)
조 정 대 상	『조유식의 허튼소리 - 김해시 ○○협회장들 지원금 횡령 질주』 제하의 기사 (영남매일 2016년 7월 19일자 사회면, YN뉴스 7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해시 모 협회장 재직 시 선수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103~106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남해시대 ^(103·104) , 남해타임즈 ^(105·106)
조 정 대 상	(1) 『왜 하필 남해관광 1번지 산지를 파헤치려 합니까?』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8월 30일자 3면, 남해타임즈 8월 30일자 종합면) (2) 『영산강 유역환경청, “과도한 자연 생태계 훼손 우려”』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9월 19일자 3면, 남해타임즈 9월 1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매우 부실하며, 환경청이 사실상 건립 불가를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07~110	(각 정정·반론청구) 이○○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 ^(107·108)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09·110)
조 정 대 상	『함안지방공사 인사전횡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28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2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함안지방공사가 표적 징계, 특혜 승진 등 인사 전횡을 휘두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111~114	(각 정정·손배청구) 안○○ 對 경남신문 ^(111·112) , 함안뉴스 ^(113·114)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내년 경남 보궐선거 역대 최대규모 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2면) • 함안뉴스 : 『안○○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함안군 의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중임에도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남신문/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기각 (함안뉴스/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기울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함안군 안○○ 의원 제명처분 관련』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6년 10월 19일자 4면)

2016경남조정 115, 116	(각 정정청구) 함양신문 (주) 對 주간함양 ⁽¹¹⁵⁾ , 함양뉴스 ⁽¹¹⁶⁾
조 정 대 상	『선거법 위반 재판 어디까지일까』 제하의 기사 (주간함양 2016년 10월 24일자 2면, 함양뉴스 10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지난 총선때 특정 후보가 실린 신문을 평소에 비해 많이 발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임)

2016경남조정 117~120	(각 정정·손배청구) ○○○○ 미용학원 對 MBC경남-TV ^(117·118) , 인터넷 MBC경남 ^(119·120)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막무가내식 학원 운영 ... 멍드는 미래』 제하의 보도 (MBC경남-TV 2016년 10월 26일자, 인터넷 MBC경남 10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고, 학원장은 잠적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21	(정정청구) 오○○ 외 1인 對 인터넷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1) 『김해 ○○○○○ 단지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2) 『김해 ○○○○○ 단지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3) 『김해중부서, ○○○○○ 단지 입찰 비리 의혹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낙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122·123, 127~134	(각 정정·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정대상	(1) 『산청 ○○○○ 수탁자 전채시설 재위탁 추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2) 『산청 ○○○○ 위탁업체 선정 특혜 의혹 - ○○○○협동조합 부실 알고도 선정 '화 자초' 지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종합면) (3) 『산청 ○○○○ 수탁자 조세 포탈·횡령 의혹 - 본점·지점 회계 분리 투명성 결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종합면) (4) 『산청 ○○○○ 수탁자 숙박료 횡령·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5) 『산청군 ○○○○ 파행 운영 끝이 안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4일자 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청군에서 수탁계약한 한방 체험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24, 135	(각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²⁴⁾ , 인터넷 창원일보 ⁽¹³⁵⁾
조정대상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소방서 직원, 청사 화장실서 목매 숨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지역면) • 인터넷 창원일보 : 『○○소방서 직원, 청사내 화장실서 숨진 채로 발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이 빗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남조정 125, 126	(각 정정청구) 전○○ 對 하동군민신문 ⁽¹²⁵⁾ ,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¹²⁶⁾
조정대상	(1) 『국도 19호선 “○○면 ○○마을 앞” 구간에 숨겨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6년 10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0월 17일자 뉴스면) (2) 『〈발행인 칼럼〉 나의 오늘이 있음에는 곧 어제의 너가 있음은 알아야』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6년 10월 27일자 칼럼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0월 26일자 발행인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친인척의 영향력을 동원해 마을 앞 국도를 곡선으로 설계변경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136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1) 『고현항 매립지 ‘5만톤 유수지’ 건설 왜 빼먹었을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개발면) (2) 『유수지 건설될 때까지 고현항 매립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논평면)
신청인 주장	거제시가 고현항을 개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유수지 건설을 누락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5만톤 유수지 계획,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37·138	(정정·손배청구) ○○의료재단 ○○병원 對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보건소 협약 병원 사람 잡는다 - 정상인 치매 진단 함안서 발생 물의 “정신적 피해” 불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정상인을 치매환자로 판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보건소 협약 병원 사람 잡는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39, 144, 145	(각 정정청구) 진주시 對 경남도민뉴스 ⁽¹³⁹⁾ , 진주KBS-1TV ^(144,14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뉴스 : 『쌀값이 폭락했는데 이창희 시장은 농부를 뒤에 두고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기자수첩면) 진주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진주시 ‘야당 위원 거부 - 예산 전액 삭감』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2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추천 시의원 편집위원 거부 ‘논란 확산』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진주시장이 쌀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 옆에서 웃고 있다는 왜곡된 사진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주시 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남도민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자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취하 (진주KBS-1TV/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경남조정 140~14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남해시대 ^(140·141) , 남해타임즈 ^(142·143)
조정 대상	<p>(1)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학교당국이 나서라』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10월 25일자 6면, 남해타임즈 10월 27일자 종합면)</p> <p>(2) 『A중학교, 등교거부 왜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11월 1일자 종합면, 남해타임즈 11월 1일자 종합면)</p>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평소 정규수업과목 대신 파행수업을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제주중재부

2016제주조정 1	(손배청구) 강○○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영어회화 강사 정리하고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영어전문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신청인이 울먹이며 발표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제주조정 2	(반론청구) ○○○○○ (주)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특급 호텔 불법 증축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이 설치한 시설물이 불법 증축 건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2016제주조정 3~10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JIBS ^(3·4) , 제주KBS-1TV ^(5·6) , KCTV ^(7·8) , 시사제주 ^(9·10)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BS : 720뉴스 프로그램 『○○○○연구원 전시실 공사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제주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비리 백화점’ 제주 ○○○○연구원 비자금도 조성?』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KCTV : KCTV뉴스 프로그램 『○○○○연구원 전시실 공사 특정업체에 특혜』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시사제주 : 『직원들 해외 연수 가로 챈 치사한(?) ‘기관장’... 절반 이상 ‘독식’』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직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추후보도 청구의 당사자 부적격)

2016제주조정 1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신보
조 정 대 상	『애월서 승용차, 트럭 충돌 사고 … 2명 경상』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통사고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제주조정 12~15	(각 정정·손배청구) (농) ○○ 외 1인 對 제주일보 ^(12·13) , 인터넷 제주일보 ^(14·15)
조 정 대 상	『중산간 임야 무차별 산림 훼손』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6년 2월 25일자 4면, 인터넷 제주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가 없이 중산간 임야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중산간 임야 무차별 산림훼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6년 3월 25일자 2면, 인터넷 제주일보 3월 25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16	(손배청구) 김○○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어린이집 장애 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의 장애 아동 학대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동의 후 이행)

2016제주조정 17·18, 21·2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신보 ^(17·18) , 제주신보 ^(21·22)
조 정 대 상	『이호테우 해변, 캠핑카·푸드 트럭 ‘몸살’』 제하의 기사 (제주신보 2016년 5월 25일자 3면, 인터넷 제주신보 5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캠핑카들이 불법 영업을 해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기사에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캠핑 현장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캠핑카 산업 권장 따로, 규제 따로』 제하의 기사 (제주신보 2016년 6월 30일자 3면, 인터넷 제주신보 6월 30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19, 20	(각 정정청구) ○○○○ 병원 對 한라일보 ⁽¹⁹⁾ , 인터넷 한라일보 ⁽²⁰⁾
조 정 대 상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VI) ⑫소아외과가 없었다고?』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4월 15일자 10면, 인터넷 한라일보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내 소아외과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초 개설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소아외과의 역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7월 22일자 10면, 인터넷 한라일보 7월 22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송○○ 외 1인 對 제주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주차장 폐쇄 - 테라스 통제 ...‘도 넘은’ 건물주 갑질』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물주인 신청인들이 세입자인 카페 주인을 내쫓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제주조정 25~28, 31~34	(각 정정·손배청구) (학) ○○학원 對 제주KBS-1TV ^(25·26,31·32) , KBS미디어 ^(27·28,33·34)
조 정 대 상	(1)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끝나지 않은 제주○○대 논란, 누구의 책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6년 6월 1일자, KBS미디어 6월 1일자 다시보기면) (2)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복수 학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6년 6월 29일자, KBS미디어 6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가 대학교 교비로 매입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정불성립결정^(25~28) • 각 취하^(31~34) (사유 : 자진취하)
2016제주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주) ○○리조트제주지사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비 안내면 단전?』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장기 관리비 미납 세입자에 대해 일시 전기와 온수를 끊은 것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권 분쟁 오피스텔 관리행위 가처분 기각』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1일자)
2016제주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제주환경일보
조 정 대 상	『6개월 짜리 동장 행정의 일관성 결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1일자 환경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제주 모 기초단체장인 신청인이 재임 시절 직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향피제 전 ○○읍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1일자 환경뉴스면)

2016제주조정 37, 38	(각 정정청구) (주) ○○○○주택 對 한라일보 ⁽³⁷⁾ , 인터넷 한라일보 ⁽³⁸⁾
조 정 대 상	『중산간 국유지 무단점용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9월 9일자 1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설 폐기물과 토사 등을 적치하는 등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국유지 무단 점용 원상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9월 9일자 5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19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39~4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학)○○학원 외 1인 對 제주KBS-1TV ^(39~41) , KBS미디어 ^(42~44)
조 정 대 상	시사파일제주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복수 학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KBS-1TV 2016년 6월 29일자, KBS미디어 6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의 모 호텔 학교 복수 학위제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신력도 없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